

2009년
KIF 금융백서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창 간 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기가 국내시장으로 파급되면서 원화 및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신용경색 현상이 고조되었고,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한편 변동성도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회사들도 경기침체로 신규계약은 줄어든 반면 기존 계약의 해지가 급증하였고,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불거진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 아직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태는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국내의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고, 국내 금융회사들도 건전성과 수익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권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전통적인 금융질서 및 금융기관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의 구축에서부터 개별 금융회사의 조직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온 해묵은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며, 금융선진화를 위해 새롭게 변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못되었던 부분을 되짚어보고 보완해 나가며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KIF 금융백서」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KIF 금융백서」에는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모습과 주요 금융제도 및 정책의 변화내용을 객관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금융백서가 금융회사의 경영계획 수립 및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집필에 참여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목 차

제 I 부 개 관	1
제 II 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11
제 1 장 금융시장 동향	13
1. 단기금융시장	13
2. 주식시장	19
3. 채권시장	26
4. 외환시장	32
5. 파생상품시장	40
제 2 장 금융산업 동향	48
1. 금융권간 자금흐름	48
2. 은행산업	58
3. 비은행산업	65
4. 금융투자업	74
5. 보험산업	80
제 III 부 금융제도 및 정책의 변화	89
제 1 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과 및 교훈	91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및 경과	91
2.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책 및 시사점	98
3. 금융위기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103
제 2 장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106
1. 금융시장 안정펀드 조성	106
2. 외화유동성 지원	110
3. 공적 금융기관 자본확충	115
4. 중소기업 금융지원	118

5. 기업구조조정	124
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128
7. 민간배드뱅크(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135
8. FATF 정회원 가입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	139
제 3 장 금융시장의 효율화	143
1.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과 시행 1년의 평가	143
2. 금융투자업 위험평가제도 개선	147
3. 펀드산업 관련 각종 제도개편	150
4. 한국 증시의 FTSE지수 편입	153
5. 주식 공매도 및 사이드카 제도 개선	156
6. 코스닥시장 신주인수권증권 개설과 기업인수목적회사 도입	158
7. 거래소 해외협력 및 외국기업 국내 상장 확대	162
8.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167
9.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면세	169
10. 파생상품시장 감독방안 마련	173
11. FX마진거래 관련 규제 개선	177
12. 장내 파생상품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180
13.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184
14.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188
제 4 장 금융산업의 선진화	192
1.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192
2.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194
3.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 제도 개선	198
4.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관련 제도 개선	202
5. 은행 예대율 증가 및 관련 규제 도입 추진	206
6. 금융지주회사 경영건전성 감독강화 방안	210
7. 보험사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시행	212
8. 보험사기 근절 대책	215
9.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219
10.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소액신용대출) 확대시행	223

11. 대부업 관련 표준약관 개선	226
12.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230
1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34
제 IV 부 맺음말	239
 부 록	
부록 1. 2009년 주요 금융일지	
부록 2. 주요 금융통계	
부록 3. 2009년 한국금융연구원 주요 발간물 목록	

표 목 차

〈표 II-1〉 단기금융시장 규모 추이	14
〈표 II-2〉 업종별 기관간 RP거래 규모	16
〈표 II-3〉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추이	22
〈표 II-4〉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24
〈표 II-5〉 채권수익률 추이	27
〈표 II-6〉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및 콜금리간 스프레드 추이	27
〈표 II-7〉 주요 채권발행 추이	30
〈표 II-8〉 기관별 채권 순매수 추이	31
〈표 II-9〉 채권종류별 거래실적 추이	31
〈표 II-10〉 장내 및 장외채권 거래실적 추이	32
〈표 II-11〉 원화 변동성 추이(일평균 원/달러 기준)	34
〈표 II-12〉 주요국 환율 변동성 추이(일일 변동률의 기간중 평균)	35
〈표 II-13〉 은행간 외환거래 추이	38
〈표 II-14〉 국내기업의 선물환 거래 추이	39
〈표 II-15〉 비거주자의 역외 NDF 순매매 추이	39
〈표 II-16〉 주요 상품별 일평균거래량 및 거래대금	40
〈표 II-17〉 KOSPI200 선물 거래 및 투자자 비중	41
〈표 II-18〉 KOSPI200 옵션 거래 및 투자자 비중	42
〈표 II-19〉 3년 만기 국채선물 거래 추이 및 투자자 비중	43
〈표 II-20〉 미달러 선물 거래 추이 및 투자자 비중	44
〈표 II-21〉 장외파생상품 거래 및 잔액 현황	46
〈표 II-22〉 금융권별 자금조달 잔액 추이	49
〈표 II-23〉 금융상품간 수익률 비교	51
〈표 II-24〉 총 자금조달 대비 금융권별 비중 추이	52
〈표 II-25〉 금융권별 자금운용 잔액 추이	54
〈표 II-26〉 은행의 주체별 기업대출 비중 추이	54
〈표 II-27〉 금융 상품간 대출금리 및 수익률 추이	56
〈표 II-28〉 총 자금운용 대비 금융권별 비중 추이	57
〈표 II-29〉 국내은행의 대출 추이	59

〈표 II-30〉 국내은행의 수신 추이	60
〈표 II-31〉 국내은행의 수익구성	63
〈표 II-32〉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력 지표 추이	65
〈표 II-33〉 전업카드사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68
〈표 II-34〉 여신전문금융회사별 총자산 추이	69
〈표 II-3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별 규모 추이	69
〈표 II-36〉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70
〈표 II-37〉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72
〈표 II-38〉 상호금융기관의 총자산, 여신, 수신 및 예대율 추이	73
〈표 II-39〉 상호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73
〈표 II-40〉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추이	75
〈표 II-41〉 금융투자사의 손익계산서(요약)	76
〈표 II-42〉 금융투자사의 수익구조	78
〈표 II-43〉 증권사의 수수료수익 구성 내역	79
〈표 II-44〉 금융투자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추이	80
〈표 II-45〉 생명보험사 주요 지표 추이	81
〈표 II-46〉 생보사별 경영실적 현황	83
〈표 II-47〉 생명보험사 경영효율성 추이	83
〈표 II-48〉 손해보험사 주요 지표 추이	85
〈표 II-49〉 손보사별 주요 경영실적	87
〈표 III-1〉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조치	99
〈표 III-2〉 위기 이후 재량적 재정정책 규모(GDP대비 비중)	101
〈표 III-3〉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107
〈표 III-4〉 채안펀드의 대상채권별 투자가능 신용등급	108
〈표 III-5〉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기관별 운용 내역	110
〈표 III-6〉 정부의 수출입은행을 통한 외화유동성 지원 내역	114
〈표 III-7〉 한국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 내역	114
〈표 III-8〉 정부 추경편성(2009.3)	117
〈표 III-9〉 기업 자금조달	119
〈표 III-10〉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추이	120
〈표 III-11〉 MOU기준 중소기업 대출 실적	121

〈표 Ⅲ-12〉 국내은행 기업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121
〈표 Ⅲ-13〉 신용보증 확대 방안(2009.2.12)	122
〈표 Ⅲ-14〉 신용보증기금 및 기보 보증지원 실적	123
〈표 Ⅲ-15〉 기업규모별·업종별 기업구조조정체계	125
〈표 Ⅲ-16〉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127
〈표 Ⅲ-17〉 건설·조선·해운업 구조조정	127
〈표 Ⅲ-18〉 미분양 해소 등 건설경기 보완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131
〈표 Ⅲ-19〉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LTV 강화 내용(2009.7.7)	132
〈표 Ⅲ-20〉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DTI 강화 내용(2009.9.7)	133
〈표 Ⅲ-21〉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지배구조	137
〈표 Ⅲ-22〉 FATF 주요국 현황	139
〈표 Ⅲ-23〉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144
〈표 Ⅲ-24〉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	145
〈표 Ⅲ-25〉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기본구조 및 활용	148
〈표 Ⅲ-26〉 위험평가대상 변경내용	149
〈표 Ⅲ-27〉 펀드 발행공시 관련 제도 변경 내용	150
〈표 Ⅲ-28〉 아시아 주요국 외국인 주식 순매수	154
〈표 Ⅲ-29〉 주요 거래소 외국기업 상장 현황(2009년말)	165
〈표 Ⅲ-30〉 KRX 외국기업 상장 현황	166
〈표 Ⅲ-31〉 증권결제방식 개선방안	168
〈표 Ⅲ-32〉 외국인 채권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 내용	170
〈표 Ⅲ-33〉 기존 외국인 국내채권투자 과세제도	171
〈표 Ⅲ-34〉 WGBI 구성국가 및 편입 요건	171
〈표 Ⅲ-35〉 FX마진 거래 현황	177
〈표 Ⅲ-36〉 FX마진 거래로 인한 손실 현황	178
〈표 Ⅲ-37〉 외환파생상품거래 적용 범위 및 내용	186
〈표 Ⅲ-38〉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주요 내용	190
〈표 Ⅲ-39〉 MMF 자산별 비중 추이	191
〈표 Ⅲ-40〉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금리결정방식별 현황(잔액 기준)	203
〈표 Ⅲ-41〉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율(기말 기준)	207
〈표 Ⅲ-42〉 EU식 지급여력비율과 RBC비율 비교	213

〈표 Ⅲ-43〉 개별 리스크의 개념 및 결정요인	214
〈표 Ⅲ-44〉 보험범죄 예방 추진 및 향후계획	218
〈표 Ⅲ-45〉 국내 등록대부업체 수 추이	227

그림 목 차

〈그림 Ⅱ-1〉 단기금리 추이	13
〈그림 Ⅱ-2〉 콜금리(1일물)와 기준금리	14
〈그림 Ⅱ-3〉 RP 매도금리와 RP형 CMA 잔액	15
〈그림 Ⅱ-4〉 CD 거래규모	17
〈그림 Ⅱ-5〉 기업 자금조달 관련 주요 지표 추이	18
〈그림 Ⅱ-6〉 CP 거래규모	19
〈그림 Ⅱ-7〉 종합주가지수와 거래대금	20
〈그림 Ⅱ-8〉 2009년 중 주요국의 주가상승률	21
〈그림 Ⅱ-9〉 증시 주변 자금 추이	21
〈그림 Ⅱ-10〉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23
〈그림 Ⅱ-11〉 주식시장의 변동성 추이	25
〈그림 Ⅱ-12〉 주식시장의 복원력지표 HHR 추이	25
〈그림 Ⅱ-13〉 채권수익률 추이	26
〈그림 Ⅱ-14〉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및 콜금리간 스프레드 추이	28
〈그림 Ⅱ-15〉 채권수익률의 만기구조	29
〈그림 Ⅱ-16〉 원/달러 환율 추이	32
〈그림 Ⅱ-17〉 글로벌 달러화 지수 추이	33
〈그림 Ⅱ-18〉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액 추이	36
〈그림 Ⅱ-19〉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순매수 및 환율 추이	37
〈그림 Ⅱ-20〉 CDS 프리미엄 및 가산금리 추이	38
〈그림 Ⅱ-21〉 KOSPI200 옵션의 변동성	42
〈그림 Ⅱ-22〉 스왑 베이스스와 스왑 스프레드	45
〈그림 Ⅱ-23〉 금융상품간 수익률 비교	50
〈그림 Ⅱ-24〉 금융권간 자금조달 비중 변화	52

〈그림 II-25〉 은행의 대출 비중 추이	55
〈그림 II-26〉 금융 상품간 대출금리 및 수익률 비교	56
〈그림 II-27〉 금융권간 자금운용 비중 변화	57
〈그림 II-28〉 국내은행의 총자산 추이	58
〈그림 II-29〉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추이	61
〈그림 II-30〉 국내은행의 누적 총당금전입액 추이	61
〈그림 II-31〉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 추이	62
〈그림 II-32〉 원화대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64
〈그림 II-33〉 전업카드사의 총자산 및 구성자산별 추이	66
〈그림 II-34〉 전업카드사의 분기별 당기순이익 추이	67
〈그림 II-35〉 상호저축은행 총자산 및 여수신 추이	71
〈그림 II-36〉 일반은행 대비 증권사의 자산규모 비율 추이	76
〈그림 II-37〉 주가지수와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77
〈그림 II-38〉 생보사별 시장점유율	82
〈그림 II-39〉 생명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84
〈그림 II-40〉 손보사별 시장점유율 현황	86
〈그림 II-41〉 손해보험사 경영효율성 추이	88
〈그림 II-42〉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88
〈그림 III-1〉 글로벌 불균형 추이	92
〈그림 III-2〉 외국인의 미국채 보유비중	92
〈그림 III-3〉 모기지 증권화 중 서브프라임 비중	94
〈그림 III-4〉 미국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 레버리지 비율	95
〈그림 III-5〉 미국의 CDO·서브프라임 RMBS 신용등급 순하향조정	96
〈그림 III-6〉 정책대응 진행과정	98
〈그림 III-7〉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103
〈그림 III-8〉 주요 시장금리 추이	105
〈그림 III-9〉 국고채 및 회사채(AA-, BBB-) 수익률 간 스프레드 추이	105
〈그림 III-10〉 주요 시장금리 추이	106
〈그림 III-11〉 은행자본확충펀드 조달 및 운영 계획	109
〈그림 III-12〉 한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	111
〈그림 III-13〉 중소기업 BSI 추이(실적)	118

〈그림 Ⅲ-14〉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 추이	118
〈그림 Ⅲ-15〉 Fast Track 프로그램 흐름도	120
〈그림 Ⅲ-16〉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과정	126
〈그림 Ⅲ-17〉 주택가격 추이	129
〈그림 Ⅲ-18〉 미분양아파트 추이	130
〈그림 Ⅲ-19〉 아파트거래량 추이	130
〈그림 Ⅲ-20〉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 및 증가율 추이	132
〈그림 Ⅲ-21〉 KOSPI 주가수익비율	154
〈그림 Ⅲ-22〉 SPAC의 개념	160
〈그림 Ⅲ-23〉 외국인 보유 국채잔액 추이	172
〈그림 Ⅲ-24〉 MMF의 주요 투자대상	189
〈그림 Ⅲ-25〉 신규 및 잔액기준 가중평균 금리(한국은행 산정) 비교	206

제 I 부 개 관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9월 이후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급락하여 2009년 1/4분기 -2.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국제공조를 통한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4/4분기에는 0.7%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2009년 3월 초 바닥을 친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로 VIX(Volatility Index)지수가 연초 40에서 연말에는 22로 하락하는 등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3월초 동유럽국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글로벌 디레버리징과 자산가치 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수익성 악화 등의 대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선진국들은 연간 -3.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피해가 적은 개도국은 연간 2.1%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이중구조를 보였다.

글로벌 경제의 회복추세와 함께 주요국의 금융시장도 3월 이후 리스크 회피성향이 완화되고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및 국가간 자금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주가와 금리의 상승, 미 달러화 약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즉 연초와 연말 지표를 각각 살펴보면, 다우존스지수의 경우 8,000에서 10,428로, 5년 만기 미재무증권 수익률은 1.88%에서 2.88%로, 달러화는 0.78유로에서 0.67유로로 약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내경제도 민간소비가 1/4분기 -4.4%의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4/4분기 5.8%의 플러스 증가로 전환되고, 설비투자율도 1/4분기 -23.1%에서 4/4분기 13.3%로 바뀌었으며, 수출도 연초 -7%의 감소세에서 연말 90% 증가세로 급등하는 등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금융시장 동향〉

2009년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연초에는 다소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이후 풍부한 유동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다양한 조치 및 정책 등에 힘입어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중 단기금융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동결 및 유동성공급 확대 등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단기금융시장 규모(거래액 및 발행잔액)는 2009년 12월말 현재 809.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5.2% 증가하였으나 정책당국의 유동성 공급정책에 따라 분기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정책당국의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었던 1/4분기에는 콜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단기금융시장 규모도 급감하였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유동성 흡수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한 2/4분기에는 단기금융시장 규모가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이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 금융불안 지속과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 2009년 3월초 1,018포인트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국내 외환시장 안정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상승세로 반전되며 1,600포인트 중반으로 2009년을 마감하였다. 주식시장의 수급 여건은 주가지수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매물 증가와 해외주식형 펀드 과세 혜택 폐지로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의 수탁고가 감소한 반면,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위험선호도 증대 등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지속되었다. 2009년 중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월평균 자금조달 규모는 8,17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에 비해 93.1% 증가하였다.

채권수익률은 2009년 중 금융완화기조 유지, 두바이월드 사태 및 유럽발 금융위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경기회복세 지속 및 출구전략 논의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채권의 발행규모는 추경예산 편성 및 유동성 확대에 크게 증가하였다. 유통시장을 살펴보면, 외국인·기관·개인 모두 순매수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면세 조치 등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중 원/달러 환율은 3월초까지 글로벌 경기침체와 동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되며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외국인 주식순매수,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증가,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또한 환율 변동성은 원/달러 환율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며 안정된 움직임을 시현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외환수급 여건은 2008년의 달러화 수요우위 기조에서 2009년에는 큰 폭의 공급우위 기조로 전환되었으며, 외화차입 여건도 원/달러 환율 안정과 달러화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은 2009년 중 금융시장 불안 지속에 따른 파생상품 수요의 증가로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 불안 지속에 따른 헤지 및 투기수요의 증가로 선물시장의 거래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에 따른 파생상품 수급불일치로 인하여 1/4분기까지는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거래규모가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또한 금융위기기간 중 나타났던 거래의 단기화현상도 하반기 이후 빠른 속도로 해소되었다.

〈금융산업 동향〉

2009년 중 국내 금융권의 전체 자금조달 규모는 2,256.9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및 대기성 자금의 유치 등에 힘입어 자금유입이 지속되었고,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수금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경우 MMF 및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체금융권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하락하였다. 한편 2009년 12월말 현재 금융권의 전체 자금운용 규모는 총 2,175.5조원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대기업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금융권 자금운용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9.0%로 전년말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주식시장 회복 등에 힘입어 증권사의 자금운용 비중은 전년말 4.0%에서 4.4%로 상승하였다.

2009년 중 국내은행은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2008년 하반기에 이어 자산성장 둔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하강의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또한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예금 수신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익성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이익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순이자마진이 축소되면서 전년에 비해 악화되었다. 또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채권 부실화로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이 급등하면서 자산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한편, 2009년 중 국내은행은 높은 BIS비율을 유지하며 손실흡수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2009년말 현재 전업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2008년말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실물경기의 회복세로 인하여 수익성 역시 전년말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은 특판예금의 판매를 바탕으로 총자산이 상당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조달비용의 하락으로 당기순이익도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9년말 현재 상호금융기관 역시 비과세예금의 한도 상향조정에 힘입어 총자산 및 수신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가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로 고정이하여신비용이 상승하며 자산건전성은 악화되었다.

2009년 중 금융투자업은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증권사를 중심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권사의 수익성은 풍부한 유동성,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시장 참여비중 확대 등에 힘입어 운용수익 및 이자수익이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향상되었다.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펀드의 자금유출로 수익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증권사의 자본적정성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이는 증권사의 핵심 수익업무인 중개업무를 비롯하여 이자수익업무 및 신종증권 판매 등의 주요 영업부문에서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중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왔던 변액보험의 판매부진이 이어지며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성장률 감소폭이 둔화되며 FY2009년 3/4분기에는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생보사의 수익성도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 생사혼합 및 생존보험 부문에서의 영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세 지속, GA(독립보험대리점) 및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계약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매분기 두자릿수 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수익성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제도 및 정책의 변화〉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주어지면서 외환시장,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더불어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기업구조조정 등이 추진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외화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정부는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외화유동성 지원을 통해 국내금융기관이 해외금융기관의 외채상환요구에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미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은 국내외의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에 대한 불안심리를 완화시켜 외화 자금사정 개선과 우리 경제의 신인도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파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수요 확대 및 은행자본의 확충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들은 직·간접금융시장에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및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시중은행의 신중한 대출 공여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되자 유동성 지원을 위한 Fast-Track 프로그램,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위한 MOU 체결, 총액대출한도 및 신용보증 확대 등 각종 대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매출부진 및 신용경색에 따른 중소건설사 및 신생조선사 등 일부 업종 기업들의 부실 심화와 연쇄도산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조정 추진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만 신속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9년 초반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하락 압력이 우세하자 2008년말 시행된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지속된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상승 압력이 우세해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가격 상승세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시장의 효율화

자본시장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함께 발생하였기 때문에 금융시장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현재 금융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국제적인 규제 감독체계 재정립을 감안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 후 1년 동안 국내 자본시장에는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반면, 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다양한 신 금융상품 출현 등의 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당면하여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신고서제도,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제도, 판매회사 이동제도 등이 도입 되었으며, 자본시장법의 규율체제에 걸맞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평가시스템(RAMS)이 운영되었다. 또한 증권 시장 효율화를 위한 환경여건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국증시가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질적 변화 및 양적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의 급격한 하락과 투기적 매도세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코스닥시장 사이드카(side-car) 제도도 마련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과 채권을 분리(strip)하여 상장·유통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본조달은 물론 경영권 위협에서 보다 안전한 지분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KRX)는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각국 거래소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다.

외환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채권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면제조치가 이루어졌다.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파생상품 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세부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정비,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 및 외환파생상품 리스크관리 기준 신설, 중장기재원조달 비율 강화, 외화자산한도 규제 도입 및 합리적 환헤지 관행 유도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국인의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 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통화선물제도 및 주식워런트증권 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선진화와 질적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FX마진거래의 증거금률을 기존의 2%에서 5%로 인상하고 FX마진거래 중개회사(선물회사 등)의 업무 현황 및 고객 모집 행위를 수시 점검하는 등 FX마진거래의 시장질서확립을 위한 감독강화 방안도 발표하였다.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지배구조 개선, 금리체계 효율화, 서민금융 강화 및 소비자보호 조치 등이 추진되었다. 우선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는데, 금융지주회사에 연결자기자본비율 도입 및 비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건전성 감독 방안도 제시되었다. 보험사의 경우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도입안을 마련하여 2011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에 따라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자율적인 모범규준도 마련되었다. 특히 2009년초 정부는 17개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녹색산업 관련 투자확대를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및 녹색금융 발전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CD금리 연동대출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조달금리평균에 기초한 COFIX가 제안되었다. 더욱이 은행들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 방안도 추진하였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카드사 및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미소(美少)금융 사업으로 대폭 확대 개편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의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소비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 불완전판매의 방지, 꺾기 및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 부당한 금리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제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다.

제II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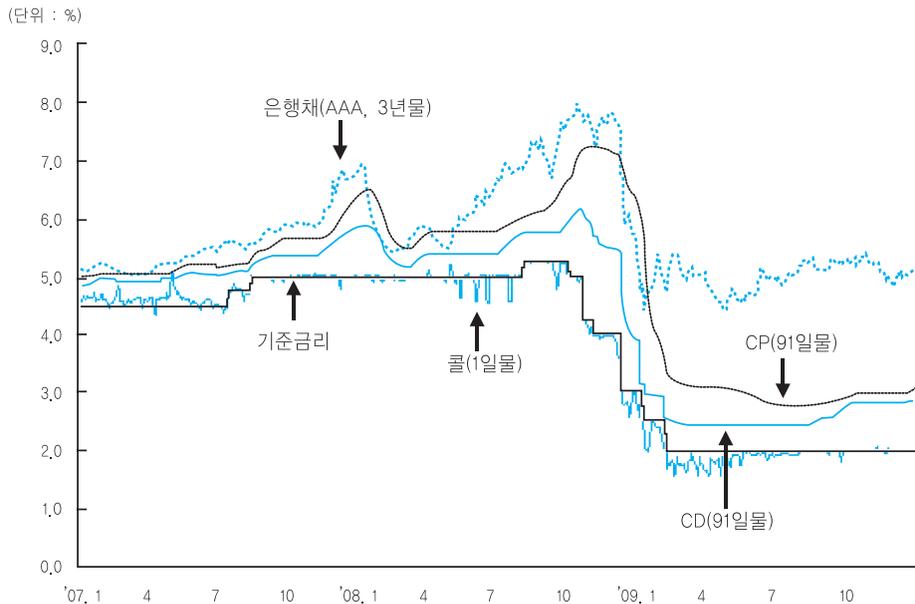
제1장 금융시장 동향

1. 단기금융시장

2009년 중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의 동결 및 유동성공급 확대 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8월 중순부터 출구전략 논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9월 이후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당국에 의한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됨에 따라 단기금리는 안정세를 되찾았다.

〈그림 II-1〉

단기금리 추이



자료 : FnGuide, Bond Pricing Online, 한국은행

단기금융시장 규모(거래액 및 발행잔액)는 2009년말 현재 809.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5.2% 증가하였지만 정책당국의 유동성 공급정책에 따라 분기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정책당국의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었던 1/4분기에는 콜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단기금융시장 규모는 446.7조원으로 전년 동기의 756.6조원에 비하여

41.0% 감소하였다. 하지만, 정책당국의 유동성 흡수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한 2/4분기 이후에는 콜거래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단기금융시장 규모도 전년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이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1〉 단기금융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2007년	2008년				2009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콜 ¹⁾ 거래액	529.8	547.8	532.6	562.1	488.4	227.7	540.1	589.2	607.4
RP 매도 ²⁾³⁾	66.4 (65.3)	61.5 (63.4)	71.1 (73.7)	69.9 (75.4)	62.5 (69.1)	67.6 (73.1)	69.3 (75.1)	70.7 (77.8)	64.3 (71.9)
CD발행 잔액	112.8	123.3	130.6	129.1	116.6	111.2	117.1	122.5	113.3
CP발행 잔액 ⁴⁾	18.5	19.7	23.3	22.7	31.8	37.4	30.9	27.1	21.9
표지어음	4.4	4.3	4.4	4.0	3.5	2.8	2.4	2.1	2.6
합 계	731.9	756.6	762.0	787.8	702.8	446.7	759.8	811.6	809.5

주 : 1) 월중 거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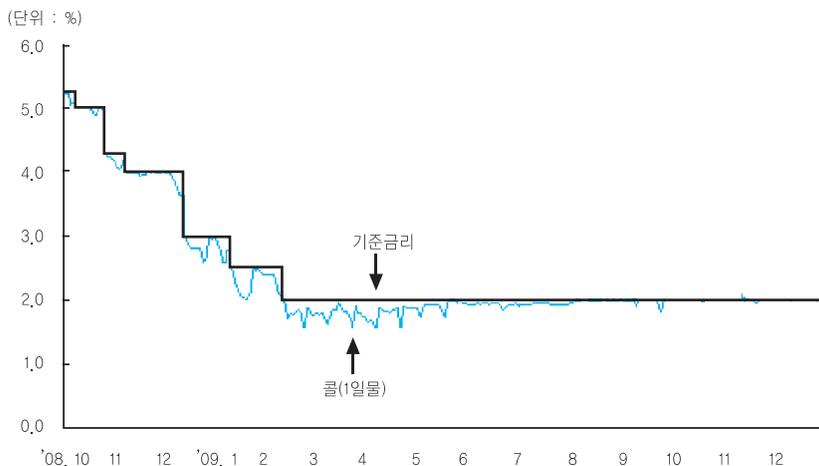
2) 대고객 RP 매도잔액 기준

3) () 안은 기관간 RP와 대고객 RP의 분기말 잔액 합계

4) 종금사, 증권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분기말 잔액

자료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그림 II-2〉 콜금리(1일물)와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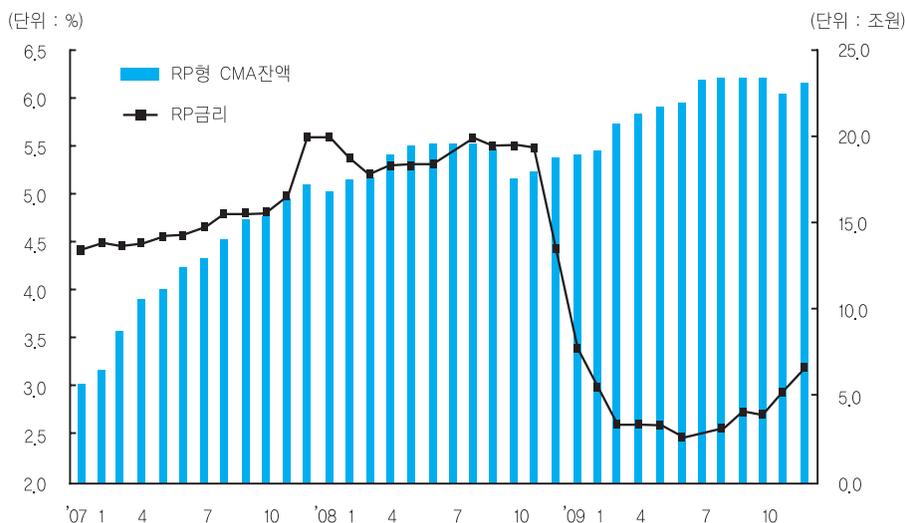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FnGuide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월과 2월 두 차례 인하하여 기준금리가 2%로 하락함에 따라 콜금리도 1% 후반대로 급락하였다. 또한 1/4분기 중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콜머니 수요 감소와 실세 콜금리의 기준금리 하회 추세에 대한 정책당국의 용인으로 정책금리와 콜금리(1일물) 간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통안증권의 비정례 입찰 등 정책당국의 유동성 흡수 규모 확대로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콜금리도 상승하여 2% 수준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유지하였다.

2009년 12월 콜거래 규모는 607.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4.4% 증가하였다. 2009년 1/4분기에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유지되었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 방식이 개편되면서 기관간 RP시장이 급격히 활성화됨에 따라 콜거래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2/4분기 이후에는 한국은행이 전분기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하였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콜거래 규모는 예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림 II-3〉 RP 매도금리¹⁾와 RP형 CMA 잔액²⁾



주 : 1)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2) 월말 잔액, 개인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금융기관의 대고객 RP매도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상반기에는 2%대 중반까지 하락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단기금리 상승에 따라 RP금리도 올라가며 2009년 말에는 3%대 초반으로 상승하였다. 증권사의 RP형 CMA 잔액은 1/4분기에 개인 및 금융기관의 단기여유자금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MMF로 유입되면서 감소하였다. 그러나 2/4분기 이후에는 MMF의 금리경쟁력이 약화되면서 RP형 CMA 잔액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9년말 23.0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말 대비 22.6% 증가하였다.

RP시장은 기관간 RP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여 2009년 말 RP 잔액은 71.9조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해 4.1% 증가하였다. 특히, 기관간 RP시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개편 등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09년에 급속도로 성장하여 2009년말 기관간 RP 거래 잔액은 8.6조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25.2% 증가하였다. 대고객 RP거래 매도액은 2009년말 현재 64.3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2009년 기관간 RP 시장의 급성장은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 외국인의 RP매수 증가, 자금중개기관의 본격적인 RP 중개활동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RP시장을 통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해당 금융회사는 기관간 RP시장을 통해 자금을 재공급하면서 기관간 RP거래가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 금융회사들이 주로 RP를 매수하여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개기관을 통한 RP거래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2〉 업종별 기관간 RP거래¹⁾ 규모

(단위 : 억원, %)

기 관	2007년		2008년		2009년	
	일평균 잔액	비중	일평균 잔액	비중	일평균 잔액	비중
자 산 운 용 사	1,156	10.8	10,434	25.8	21,954	31.4
국 내 증 권 사	1,520	14.2	10,445	25.9	18,250	26.1
국 내 은 행	5,213	48.6	8,823	21.8	14,823	21.2
여신금융회사 ²⁾	2,036	19.0	8,847	21.9	11,436	16.4
기타금융회사 ³⁾	759	7.1	1,537	3.8	1,428	2.0
기타금융회사 ⁴⁾	42	0.4	300	0.8	2,022	2.9

주 : 1) RP매도 기준

2) 증권사, 증권금융회사

3) 저축은행, 신용금고, 금융공기업

4) 보험사, 신용협동조합, 외국은행, 외국증권사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업종별 기관간 RP거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RP거래는 2009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일평균 잔액은 2조 1,954억원으로 2008년 1조 434억원에 비해 110.4% 증가하였다.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기관간 RP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5.8%에서 2009년 31.4%로 상승하여 기관간 RP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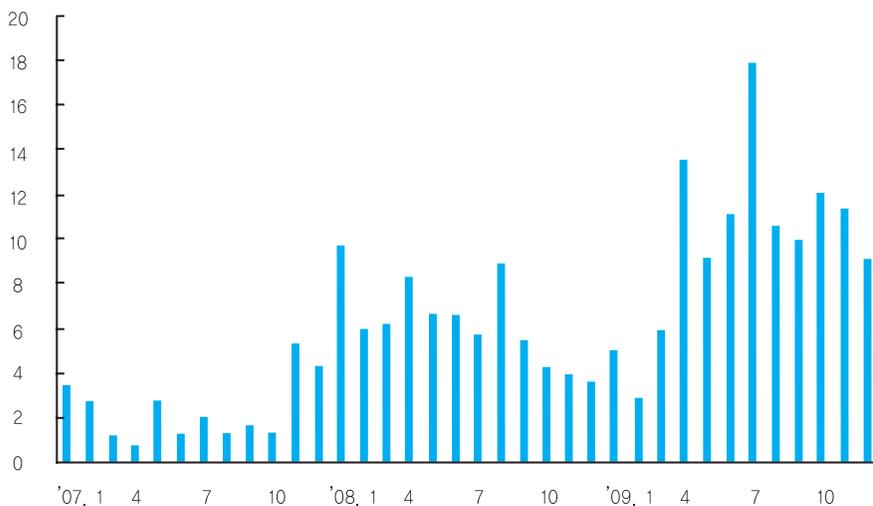
CD금리(91일물)는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2.4%대에 머물렀으나, 8월 들어 은행의 CD발행 증가와 더불어 MMF의 수신 감소와 출구전략 논의 확산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2.8%대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3월 이후 지속된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CD금리(91일물)는 4/4분기에 안정세를 나타냈다.

2009년말 CD발행 잔액은 2008년말과 비슷한 수준인 113.3조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CD 발행시장이 2009년에 점진적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09년 1/4분기에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당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인하여 은행들이 CD발행을 축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정책당국의 유동성 흡수 확대에 은행들의 CD발행이 증가하였다.

<그림 II-4>

CD 거래규모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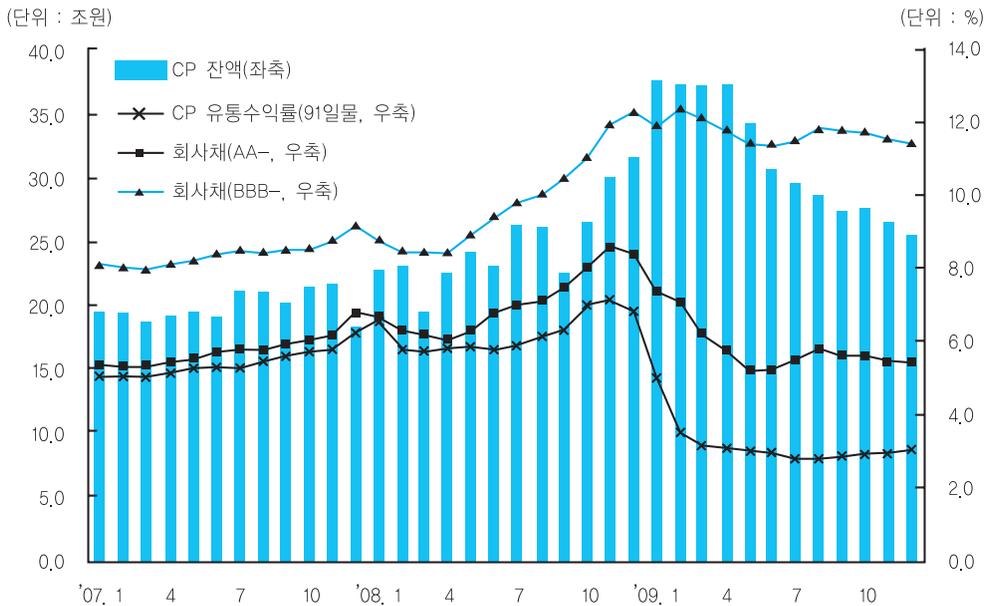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CD 유통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한 CD거래 규모는 2009년 9.8조원으로 2008년에 비해 57.3% 증가하였다. CD발행이 증가하기 시작한 2/4분기부터 CD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7월의 거래규모는 17.8조원으로 연중 최고 기록을 시현하였다.

CP 유통수익률(91일물)은 2009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하향추세에 따라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어 2%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MMF 수탁고 및 CP 매수세 감소 등으로 인하여 상승세로 전환되어 2009년말에는 3% 초반을 기록하였다. 회사채(AA-)금리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하향 추세였으나, 하반기에는 상승세로 전환되어 12월말에는 5.53%를 기록하였다.

〈그림 II-5〉 기업 자금조달 관련 주요 지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CP발행 잔액은 2009년 3월말 37.4조원으로 전년말의 31.8조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월 말에는 21.9조원을 기록하였다. 1/4분기에는 CP금리와 CD금리 간의 스프레드 확대, 한은의 RP지원 자금에 의한 증권사의 CP매입 증가, CP발행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CP발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4분기 이후 단기금리 상승으로 CP금리도 상승하였으나 CD금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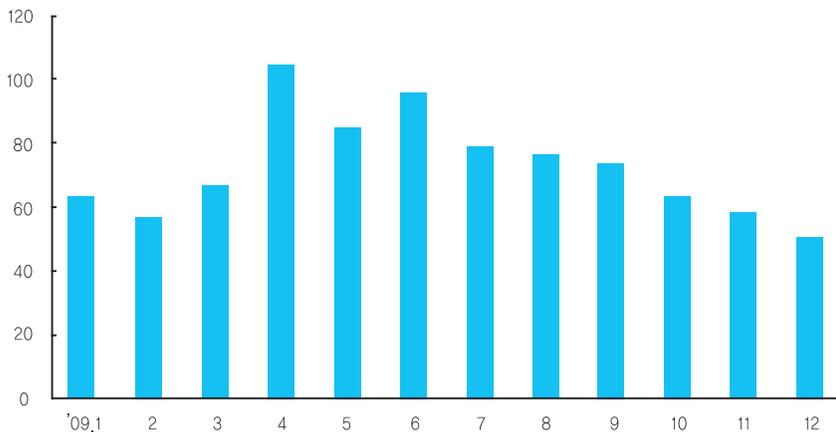
CP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CP발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하반기의 회사채 발행 증가도 기업의 CP발행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CP 유통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한 CP 거래규모는 2009년 월평균 약 72조원이며, CP발행 잔액이 감소하기 시작한 2/4분기의 거래규모는 여타 분기에 비해 활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CP금리가 하락하면서 2008년과 2009년 1/4분기에 비교적 높은 금리로 발행된 CP를 매수한 기관들이 차익실현 등을 위해 매도물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6〉

CP 거래규모

(단위 : 조원)



자료 :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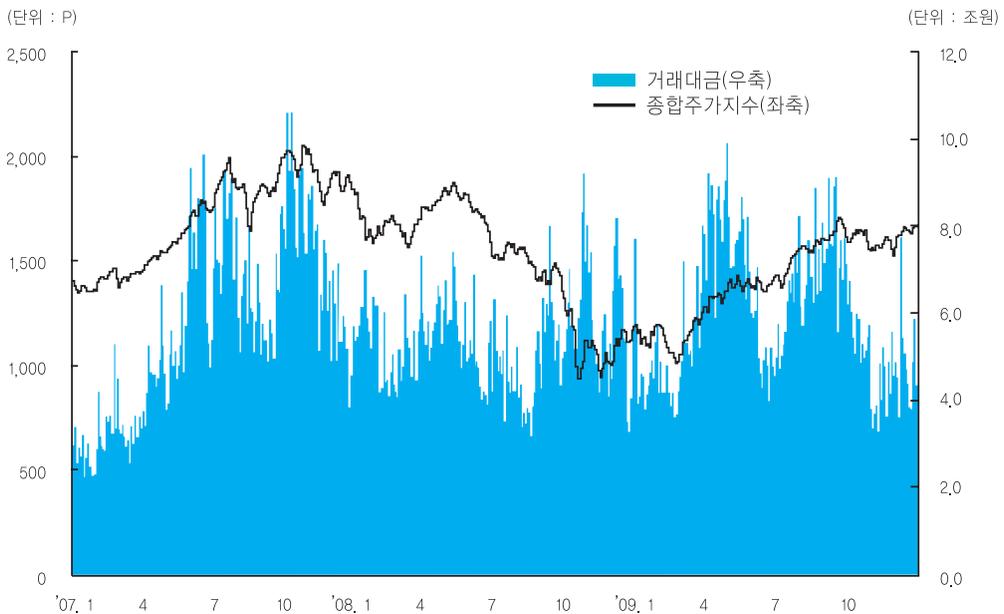
2. 주식시장

2009년중 주식시장은 연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으나 3월초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다. 1/4분기 중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국내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가지수는 3월 2일 연중 최저점인 1,018.81포인트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글로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추세에 따른 유동성 축소와 자산가치 하락,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의 대외적 요인들의 영향이 컸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주가는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이와 같은 주가 상승에는 글로벌 신용경색 완화, 전세계

적인 양적 완화정책에 따른 유동성 증대,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서 빚어진 위험자산 선호 증대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이 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가운데 저금리기조에 따른 시중유동성 확대와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주가는 9월중 1,700포인트를 상회하였다. 이후 연말에는 주가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수세 확대, 주요국의 출구전략 논의 및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증시는 조정국면을 거치면서 1,600포인트 중반으로 2009년을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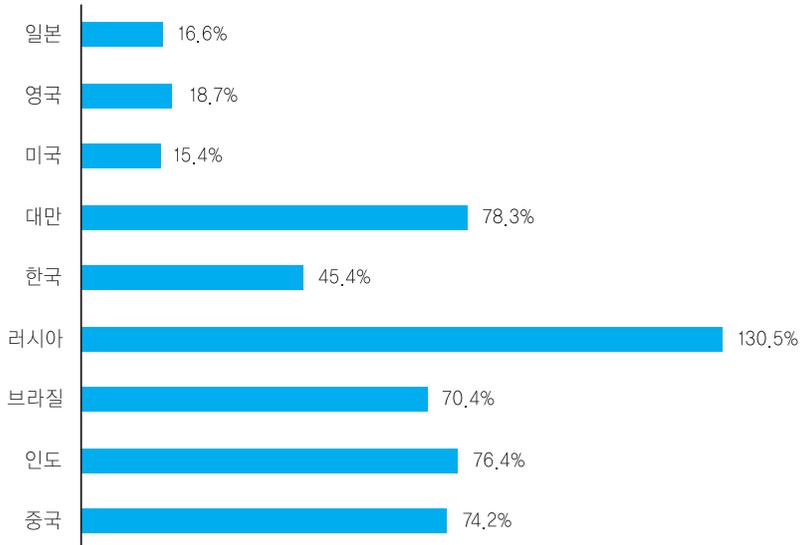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글로벌 저금리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주요국 주식시장은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 중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가가 모두 연초에 비해 상승하였는데, 특히 우리나라(45.4%), 러시아(130.5%), 브라질(70.4%), 인도(76.4%), 중국(74.2%) 등의 신흥국 주가상승률은 선진 주요국 주가(15~20%)에 비해 상승폭이 월등히 컸다. 이는 2008년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하였던 신흥국의 통화·주식 가격이 빠른 경기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재조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II-7〉 종합주가지수와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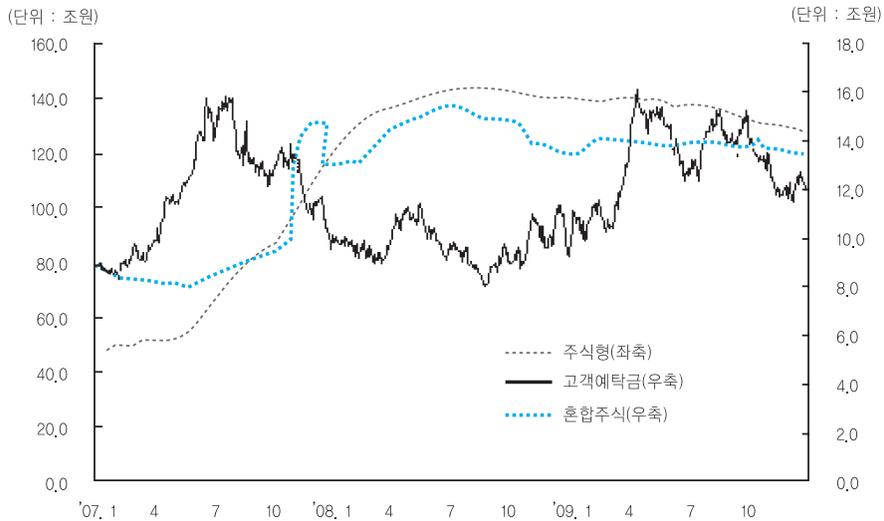
자료 : 한국거래소

〈그림 II-8〉 2009년 중 주요국의 주가상승률



자료 : Bloomberg

〈그림 II-9〉 증시 주변 자금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2009년 주식시장의 수급여건을 보면 주식형 및 혼합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유입은 부진했으나 고객예탁금은 증가하였다. 주식시장의 고객예탁금은 2009년말 현재 11조 7,865억원으로 지난해 말 9조 2,406억원에 비해 27.6% 증가하였다. 주식형 수익증권의 수탁액은 2008년말 140조 2,143억원에서 2009년말 현재 126조 2,317억원으로 10.0% 감소하였다. 주식혼합형 수익증권의 수탁액은 연초와 연말에 각각 13조 5,918억원 및 13조 4,358억원을 기록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식형 및 혼합형 수익증권의 수탁고가 감소한 것은 주가지수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증가한데다 2009년말 이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환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기관과 개인은 매도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나타냈다. 2009년 중 증권사와 보험사는 순매수세를 기록한 반면 자산운용, 은행 및 연기금 등은 순매도하여 기관투자자 전체로는 28.3조원 순매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주식형펀드의 자금이탈로 자금유입이 줄어들면서 자산운용사가 꾸준히 순매도(연중 21.7조원)를 한 데 주로 기인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2/4분기중 밸류에이션 메리트에 따른 저가매수 확대와 주식시장 상승세에 따른 직접투자 증가로 인해 순매수세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주가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인해 연중 2.0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하였다. 외국인투자자는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리스크 증대 및 선진국 부실 금융기관 구조

〈표 II-3〉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추이

(단위 :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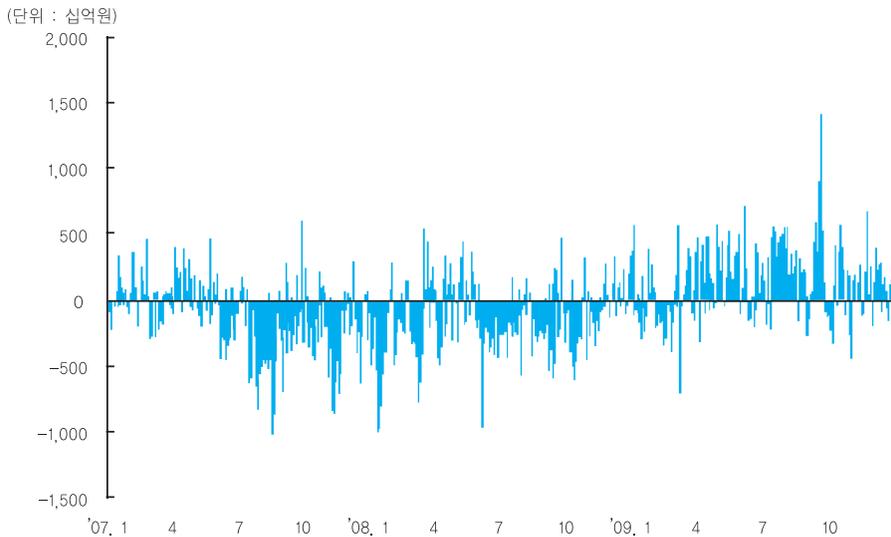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연중
기 관	21,272.4	31,756.5	664.5	-14,022.9	-11,764.6	-3,220.7	-28,343.7
증권회사	2,994.7	10,143.4	1,585.9	3,153.3	1,398.8	968.5	7,106.4
보험회사	1,323.5	4,472.6	217.9	-598.7	-27.0	900.0	492.2
자산운용	4,608.9	-2,260.7	-3,462.3	-8,611.0	-7,169.7	-2,491.9	-21,734.8
은행	-1,718.8	740.3	-474.4	-1,646.2	-268.9	-788.3	-3,177.9
연기금 등	14,064.1	18,660.9	2,797.5	-6,320.4	-5,697.7	-1,809.0	-11,029.6
개 인	6,432.9	2,829.2	-607.6	3,444.4	-2,556.3	-2,310.7	-2,030.1
외 국 인	-27,184.0	-34,585.8	-57.0	10,578.5	14,320.9	5,531.4	30,373.8

자료 : FnGuide

조정에 따른 유동성 회수 등으로 주식을 순매도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국내경제의 빠른 회복, 기업실적 개선, 원화 가치 상승 및 우리 증시의 FTSE 선진지수 편입 등의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대규모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2009년 중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30.3조원에 이르렀다.

〈그림 II-10〉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자료 : FnGuide

2009년 중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월평균 자금조달 규모는 8,172억원으로 2008년 4,233억원에 비해 93.1% 증가하였다. 주식시장을 통한 월평균 자금조달액 중 기업공개로 통한 자금조달액은 1,298억원으로 2008년의 597억원에 비해 117.2% 급증하였으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금액도 전년대비 89.1%로 크게 증가하여 6,874억원을 기록하였다. 1/4분기에는 주식시장 하락세 지속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미루는데다 큰 폭의 시중금리 하락으로 회사채 발행, 은행 대출 등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이용하면서 주식시장을 통한 월평균 자금조달액이 127억원에 불과하였으며 그 비중도 1.9%로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이후 2/4분기와 3/4분기에는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환율 안정세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시중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조달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4/4분기에는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해당 자금조달액이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표 II-4〉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단위 : 십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연중
조달총액(A) ¹⁾	10,527.4	9,485.0	11,298.1	10,893.5	9,350.0	9,444.9	10,246.6
주식시장(B) ²⁾	1,438.1	423.3	218.3	951.2	1,166.3	933.0	817.2
기업공개	191.9	59.7	12.7	132.3	135.5	238.6	129.8
유상증자	1,246.3	363.6	205.6	818.9	1,030.8	694.4	687.4
B/A	13.7	4.5	1.9	8.7	12.5	9.9	8.0

주 : 1) 회사채 및 주식 등 직접금융 자금조달 총액

2) 유가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합계

3) 월평균 기록

자료 : 금융감독원

2009년 중 주식시장의 변동성¹⁾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연중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4/4분기중에는 다소 확대되었다. 한편 주식시장의 복원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HHR(Hui-Heubel Ratio)²⁾도 연초 5.2에서 꾸준히 낮아져 3/4분기중에는 1.8을 기록하였으나 4/4분기중에는 2.5로 다소 높아졌다. 이는 3/4분기까지 주식시장이 외부충격으로부터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속도가 빨라지다가 4/4분기 들어 둔화되었음을 의미한다. 9월 이후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조정장세가 지속되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HHR 지표가 4/4분기 들어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주식시장의 변동성(market risk, σ)은 널리 이용되는 계량기법(GARCH)으로 추정

$$t\text{-시점의 연율 표시 변동성} = 100 \times \sigma_t \sqrt{\text{연간거래일(관측일)수}}$$

$$\gamma_t = \beta_0 + \beta_1 x_t + u_t = \mu_t + u_t$$

$$u_t = \sigma_t e_t \quad e_t \sim iid N(0, 1)$$

$$\sigma_t^2 = \alpha_0 + \alpha_1 u_{t-1}^2 + \alpha_2 \sigma_{t-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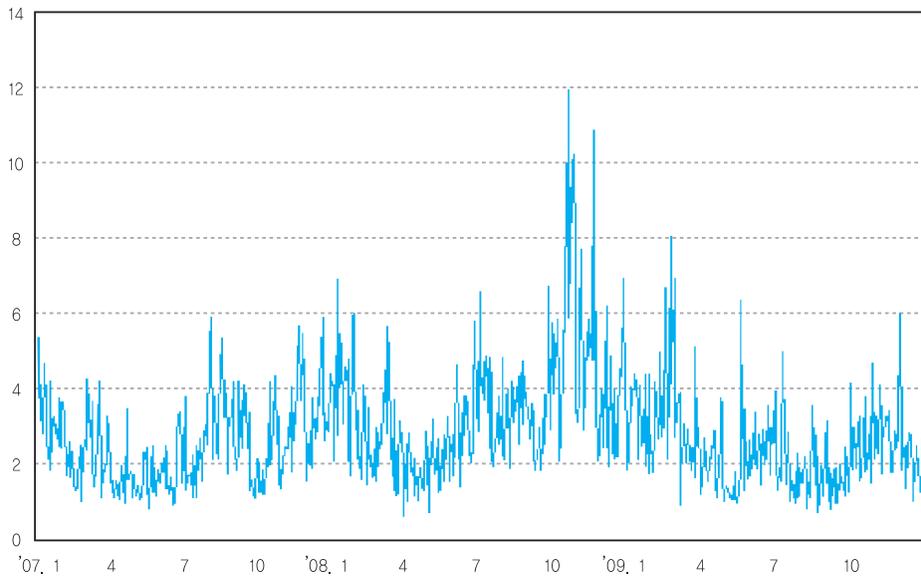
2) HHR=(최고가-최저가)/최저가/(거래대금/시가총액), HHR 지표의 하락(상승)은 주식시장이 외부충격으로부터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속도가 높음(낮음)을 의미

〈그림 II-11〉 주식시장의 변동성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그림 II-12〉 주식시장의 복원력지표 HHR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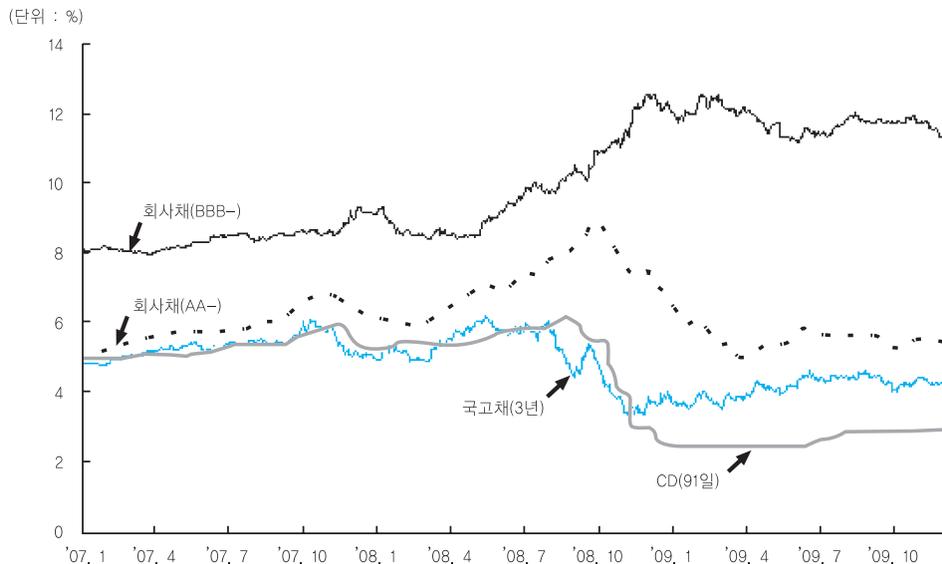
3. 채권시장

1) 채권수익률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공조로 크게 하락하였던 국고채수익률은 2009년 초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곧이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며 상승 반전하였다. 하반기에도 금융완화기조 유지와 두바이월드 사태 및 유럽발 금융위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가 국고채수익률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경기회복세 지속 및 출구전략 논의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회사채수익률은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메리트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전반기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반 이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상승하였고, 이후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대두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II-13〉

채권수익률 추이



자료 : FnGuide

분기별로 채권수익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1/4분기 중 국고채수익률은 등락을 거듭한 반면, 회사채수익률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정책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2/4분기에 국고채수익률은 발행물량 감소 및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 급증 등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인 후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 전환으로 반등하였다. 한편 회사채수익률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풍부한 시중유동성 및 저금리 정책 지속 등으로 상대적으로 금리 메리트가 높은 회사채에 대한 매수세가 활발히 유입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3/4분기 이후 시중금리는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출구전략 논의 확산과 부실기업에 대한 단계적 구조조정 추진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4/4분기에 들어서며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하락 반전하였다.

〈표 II-5〉

채권수익률 추이¹⁾

(단위 : %)

	2007년	2008년	2009년				연중
			1Q	2Q	3Q	4Q	
국고채(3년물)	5.23	5.27	3.64	3.90	4.30	4.34	4.05
통안증권(1년물)	5.21	5.33	2.63	2.69	3.19	3.39	2.98
회사채(3년물) ²⁾	5.70 (8.40)	7.04 (9.89)	6.82 (12.16)	5.36 (11.55)	5.59 (11.72)	5.46 (11.62)	5.79 (11.76)

주 : 1) 기간별 일평균

2) AA-등급 회사채, () 안은 BBB-등급 회사채

자료 : FnGuide

〈표 II-6〉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및 콜금리간 스프레드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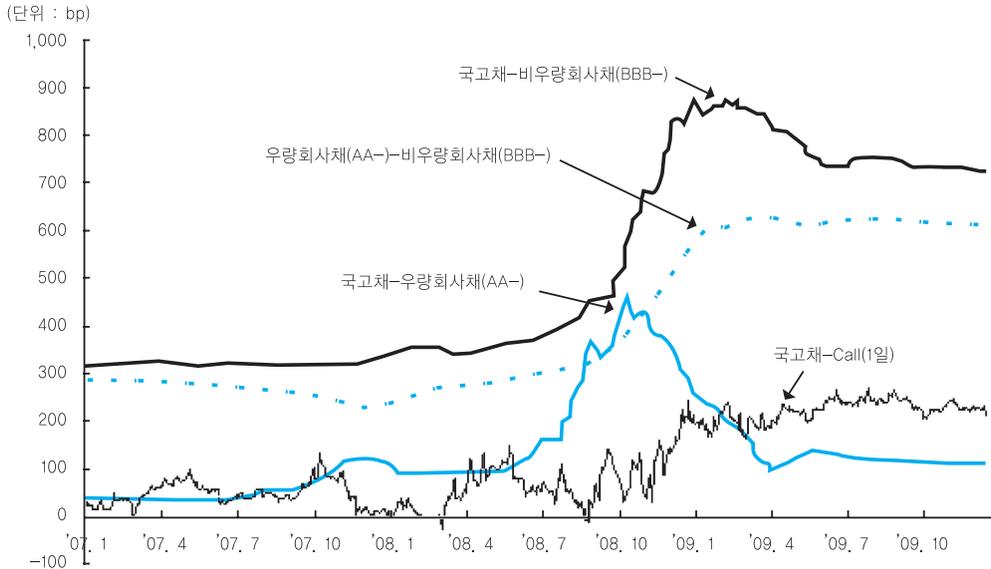
(단위 : bp)

	2007년	2008년	2009년			
			1Q	2Q	3Q	4Q
국고채(3년물)-우량회사채(AA-)	103	431	219	123	114	112
국고채(3년물)-비우량회사채(BBB-)	338	861	825	731	735	717
국고채(3년물)-Call(1일물)	235	430	606	608	621	605
우량회사채(AA-)-비우량회사채(BBB-)	72	39	221	220	239	240

주 : 1) 각 기말 기준

자료 : FnGuide

〈그림 II-14〉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및 콜금리간 스프레드 추이



자료 : FnGuide

2009년 중 채권수익률의 신용스프레드를 살펴보면, 국고채(3년물)와 우량회사채(AA-) 간 신용스프레드는 상반기중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풍부한 시중 유동성 및 저금리 정책 지속 등으로 상대적으로 금리메리트가 높은 회사채에 대한 매수가 활발히 유입되면서 축소되었다. 그러나 국고채와 콜금리간 스프레드는 2009년 들어 크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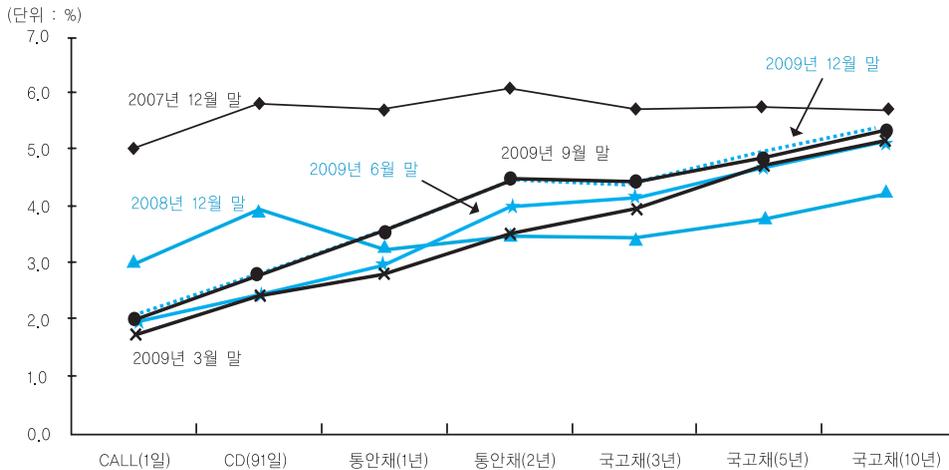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진행된 기준금리 인하가 2009년 1월과 2월에도 지속된 데다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으로 단기유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콜금리는 급락한 반면 수급부담으로 인해 국고채 금리는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중 국고채(3년물)와 비우량회사채(BBB-) 간 신용스프레드 역시 상반기에 소폭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리스크 증가 우려로 확대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2009년 중 채권수익률의 만기구조를 살펴보면, 3/4분기까지는 장단기금리차에 의한 경사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4/4분기에 접어들면서 다소 완만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2009년 들어 단기금리는 저금리 기조 및 풍부한 단기유동성 상태가 지속되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3년물 이상 중장기 채권수익률은 수급불

안 및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완화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 이후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단기금리가 상승하였으나 장기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그림 II-15〉

채권수익률의 만기구조



자료 : FnGuide

2) 발행시장

2009년 중 국고채, 통안증권, 회사채 등 주요 채권의 발행규모는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중 국고채 발행규모는 약 8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63.2% 증가한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주로 기인하였다. 또한 통안증권은 전년에 비해 148.0%나 증가한 375조원이 발행되었다. 이는 정부의 재정자금 조기집행을 위한 한국은행 차입금 증가 및 국외부문에 서의 자금 유입 등으로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회사채의 경우, 우량회사채를 중심으로 한 회사채의 가격메리트 상승과 기업들의 자금수요에 기인하여 발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규모는 전년에 비해 44.8% 증가한 76조원으로 나타났다.

〈표 II-7〉

주요 채권발행 추이

(단위 : 십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연중
				1Q	2Q	3Q	4Q	
국 고 채	발 행	48,259	52,054	18,653	23,190	24,775	18,358	84,976
	순 증 ¹⁾	20,575	28,399	15,405	7,303	21,596	△2,741	41,563
통 안 중 권	발 행	156,690	151,390	63,650	117,950	115,630	78,230	375,460
	순 증	△8,050	△23,033	17,720	21,020	△10,350	△6,090	22,300
회 사 채 ²⁾	발 행 (ABS)	45,148 (9,750)	52,758 (8,810)	27,414 (4,698)	13,994 (6,272)	16,192 (2,706)	18,810 (5,464)	76,409 (19,140)
	순 증	1,231	15,205	17,661	11,009	3,892	6,383	38,945

주 : 1) 순증=발행-상환(조기차환+조기상환)

2) 금융채(은행채 제외) 및 ABS 발행 포함, () 안은 ABS 발행실적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3) 유통시장

2009년 중 채권순매수는 외국인, 기관 및 개인 모두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4/4분기에 순매도를 기록하였던 외국인은 2009년 1/4분기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다. 2009년 중 외국인의 국내채권 순매수 규모는 52조원으로 전년도(23조원)에 비해 125.6%나 증가하였다. 이는 외국인의 국채·통안증권 투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조치가 시행되고 우리나라 국채의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³⁾ 편입 기대로 증장기 국채 투자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개인은 상반기중 순매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하반기 들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가 160조원으로 최대 순매수를 기록한 가운데, 은행은 108조원, 기금·공제는 51조원의 순매수 규모를 기록하였다.

3)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미국의 Citigroup에서 발표하는 주요 23개국의 국고채권으로 구성된 투자지표로 WGBI에 포함된 23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다.

〈표 II-8〉

기관별 채권 순매수 추이¹⁾

(단위 : 십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연중
			1Q	2Q	3Q	4Q	
은행	73,498	92,194	18,765	29,709	25,976	33,448	107,898
자산운용	50,666	68,237	37,510	50,650	47,271	24,995	160,424
보험	28,899	22,025	5,959	9,843	8,377	8,026	32,206
증권·금고	4,998	4,598	3,817	3,988	1,946	2,535	12,286
기금·공제	26,503	53,674	11,323	16,337	14,429	8,617	50,706
외국인	38,329	23,061	3,784	13,920	15,541	18,775	52,020
기타법인	30,035	34,905	12,498	8,419	7,485	7,169	35,570
개인	6,455	5,942	149	164	899	1,196	2,407
전체	259,383	304,636	93,804	133,029	121,924	104,760	453,516

주 : 1) 장외시장 거래량 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09년 중 채권거래 실적은 4,652조원으로 전년도(3,193조원)에 비해 45.7%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회복세 및 출구전략 시행 논란으로 금리의 향방이 자주 변화하고 채권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채권종류별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114.5%나 증가한 회사채의 거래량(129조원) 증가가 두드러진다. 채권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채의 경우 전반적인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기 딜링거래 및 기관간 RP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64.5% 증가한 2,658조원을 기록하였다. 통안증권은 전년대비 19.7% 증가한 1,072조원을 기록하였다.

〈표 II-9〉

채권종류별 거래실적 추이¹⁾

(단위 : 조원)

	2007년	2008년	2009년				연중
			1Q	2Q	3Q	4Q	
국고채	1,519	1,616	596	661	674	726	2,658
통안증권	767	896	188	265	318	301	1,072
회사채	54	60	44	33	27	25	129

주 : 1) 거래량 기준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채권거래는 주로 장외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2009년 중 전체 채권거래 대비 장외거래의 비중은 89.2%로 전년 대비 약 1.0%p(88.2%→89.2%) 상승하였다. 장내거래는 504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34.0% 증가하였으나, 전체 채권거래 대비 비중은 2008년에 비해 하락한 10.8%를 기록하였다. 이는 장외거래(4,147조원)가 전년대비 47.2% 증가한 데 기인한다.

〈표 II-10〉 장내 및 장외채권 거래실적 추이¹⁾

(단위 : 조원)

	2007년	2008년	2009년				연중
			1Q	2Q	3Q	4Q	
장 내	356	376	128	129	133	114	504
장 외	2,366	2,817	932	1,021	1,064	1,130	4,147
총 합 계	2,722	3,193	1,060	1,150	1,198	1,244	4,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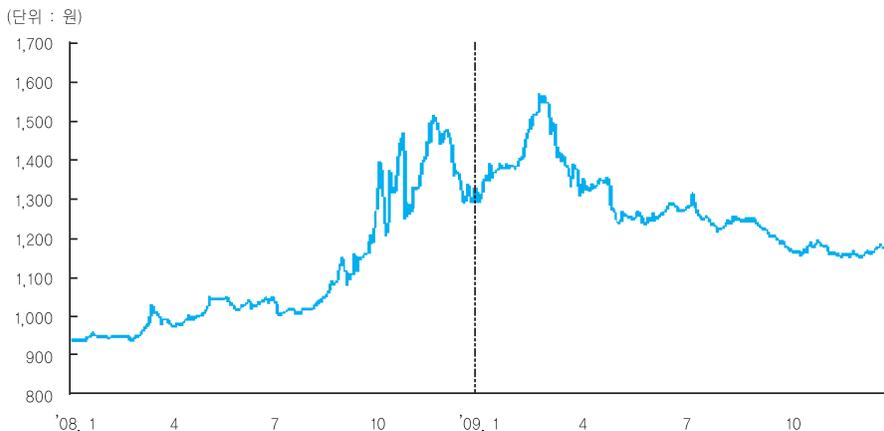
주 : 1) 거래량 기준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4. 외환시장

1) 원/달러 환율 동향

〈그림 II-16〉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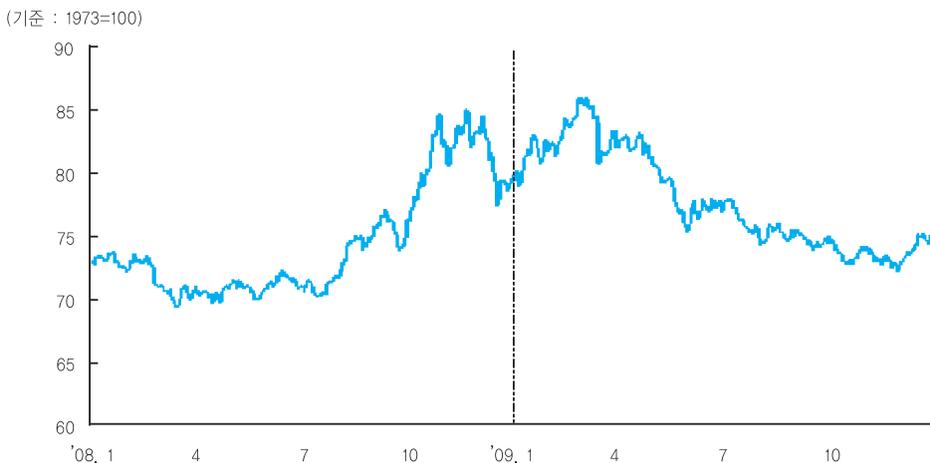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09년 중 원/달러 환율은 3월 초까지 글로벌 경기침체와 동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되며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외국인 주식순매수,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환보유액 증가 및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2009년 초 원/달러 환율은 세계경기침체 심화 및 동유럽 금융위기 가능성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발생, 외화유동성 여건 악화에 따른 달러화에 대한 초과 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월 중순 이후 조선·중공업체의 수주 취소, 외국인 주식 순매도 및 경상수지 적자 등의 요인이 더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3월 초 일부 외신의 우리나라 외채 및 외환보유액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재부상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998년 3월 12일(1,546.0원) 이후 최고치인 1,570.3원(3월 2일)까지 급등하였다. 하지만 이후 주요국이 IMF의 자원 확충 및 구제금융 제공에 합의하고 미국 주요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흑자를 시현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국내 외환시장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가용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노력과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외화채권 발행 성공으로

<그림 II-17> 글로벌 달러화 지수¹⁾ 추이



주 : 1) 달러화 지수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7개국(유로, 캐나다,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의 교역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이들 국가의 통화에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달러화 지수 하락(상승)은 달러화 약세(강세)를 의미

자료 : FRB

안정되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외환수급 여건도 3월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 및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전환 등으로 빠르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3월 초 급등세를 시현한 이후 5월 중순까지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5월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 순매수 지속 및 외환 보유액 증가 등의 환율 하락요인과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더딘 경기회복 및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환율 상승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9월 중순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였다. 9월 중순 이후에는 미국의 저금리 기조 지속 예상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지속 등의 하락요인이 지속된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약화되면서 환율은 재차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9년 말 유럽 국가들의 신용위험 증대 및 미국의 출구전략 조기 시행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로 반전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주춤하게 되었다.

2009년 중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일중 및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14.6원 및 9.4원으로 전년 18.3원과 12.0원에 비해 축소되었다.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동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여건 악화로 일중 변동폭 및 전일 대비 변동폭 모두 2008년도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2/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점차 축소되어 12월에는 일중 변동폭의 경우 6.1원, 전일 대비 변동폭은 4.4원을 기록하며 리먼사태 이전(2008년 8월 일중 변동폭 6.9원, 전일대비 변동폭 4.8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11>

원화 변동성 추이(일평균 원/달러 기준)

(단위 : 원,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일중 변동폭 (변동률 ¹⁾)	18.3 (1.50)	14.6 (1.10)	26.2 (1.83)	17.1 (1.32)	8.4 (0.68)	7.2 (0.61)
전일 대비 변동폭 (변동률 ²⁾)	12.0 (0.99)	9.4 (0.71)	16.6 (1.17)	10.1 (0.78)	6.3 (0.51)	4.9 (0.41)

주 : 1) $100 \times (\text{일중 최고가} - \text{일중 최저가}) / \text{당일 평균 환율}$

2) $100 \times (\text{금일 종가} - \text{전일 종가}) / \text{절대값} / \text{전일 종가}$

자료 : 한국은행

여타 주요국 통화와 원화 변동성을 비교해보면 2009년 중 원화 변동성은 0.71로 일본 엔화(0.68), 유로화(0.61) 및 영국 파운드화(0.66) 등 주요 선진국 통화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위기 위험이 재차 부각되었던 동유럽 국가통화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싱가포르(0.31) 및 태국(0.16) 등 아시아 국가들의 변동성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4분기 이후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의 누적,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및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으로 환율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며 안정됨에 따라 원화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4/4분기 중에는 원화 변동성이 주요국 중 싱가포르 및 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인 0.41까지 축소되었다.

〈표 II-12〉 주요국 환율 변동성 추이(일일 변동률의 기간중 평균)

(단위 :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한 국 원 화	0.99	0.71	1.17	0.78	0.51	0.41
일 본 엔 화	0.68	0.68	0.86	0.68	0.59	0.58
유 로 화	0.64	0.61	0.84	0.70	0.45	0.43
영국 파운드화	0.61	0.66	0.90	0.74	0.52	0.48
호 주 달 러 화	1.10	0.93	1.28	1.05	0.69	0.72
싱가포르 달러화	0.33	0.31	0.43	0.34	0.22	0.23
태 국 바 트 화	0.24	0.16	0.22	0.24	0.08	0.11
멕시코 페소화	0.64	0.76	1.02	0.87	0.54	0.63
브라질 헤알화	1.16	0.91	1.18	1.04	0.74	0.69
폴란드 즐로티화	0.94	1.15	1.65	1.17	0.97	0.84
헝가리 포린트화	0.98	1.09	1.41	1.28	0.84	0.84

주 : 1) 전일 대비 변동률[100×(금일 종가 - 전일 종가)의 절대값/전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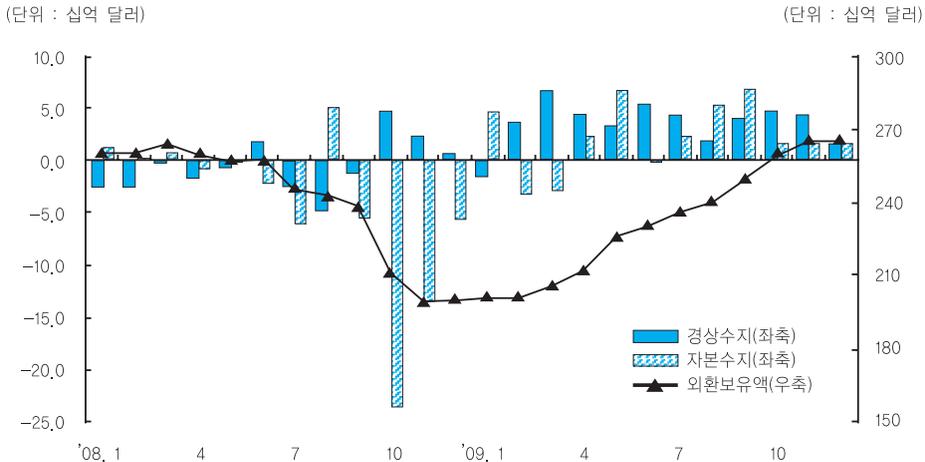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 외환수급 및 외환차입 여건

2009년 중 외환수급 여건은 2008년 달러화 수요우위 기조에서 큰 폭의 공급우위 기조로 전환되면서 개선되었다. 2008년 중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각각 58억 달러 및 50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자본수지는 외국인 주식자금의 대규모

모 유출과 예금취급기관의 대규모 차입금 상환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입으로 자본수지가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국제수지가 79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 외환수급 기초도 공급우위로 전환되었다.

〈그림 II-18〉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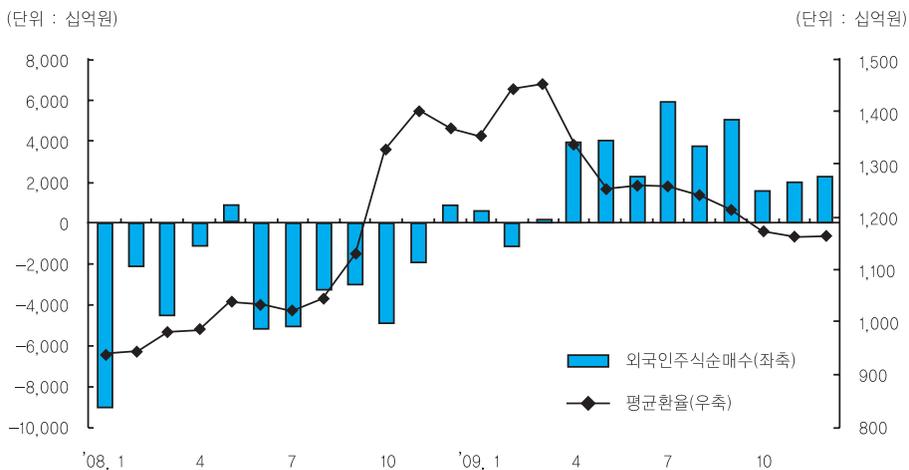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중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동반 적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000억 달러 내외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2009년 3월 중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용성 논란 등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증가 및 외화유동성 공급자금 회수 등에 힘입어 2009년말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 대비 647억 달러 증가한 2,65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중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는 총 30.4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1/4분기 중에는 동유럽발 금융 불안 및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3,941억원을 순매도 하였으며, 동기간 중 원/달러 환율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었던 2월 중 외국인투자자는 1조 1,355억원을 순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환율은 6.31% 급등하였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 국제금융시

장의 안정 및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국내주식을 순매수하면서 환율도 하향 안정되었다. 하반기 이후에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업의 실적개선, 그리고 FTSE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증시에서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러한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되었다.

<그림 II-19>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순매수¹⁾ 및 환율²⁾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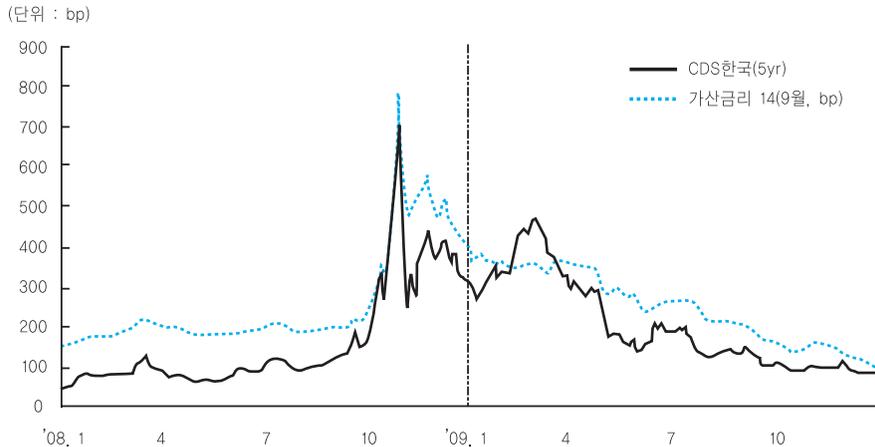
주 : 1) 코스닥시장 포함, 2) 원/달러 환율 증가의 월평균

자료 : 한국은행

2009년 중 외화차입 여건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외화표시 채권의 부도위험을 반영하는 CDS프리미엄은 글로벌 증시 약세와 동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국제적으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면서 3월 3일 465bp까지 급등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회복 속에 국내은행들의 중장기 외화유동성 개선, 원/달러 환율 안정 및 기업실적 개선 등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시 기준이 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도 CDS프리미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1월 2일 399bp에서 12월말 100bp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II-20〉

CDS 프리미엄 및 가산금리 추이



자료 : 국제금융센터

3) 외환거래 동향

2009년 중 은행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11.9억 달러로 2008년 231.1억 달러에 비해 8.3% 감소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외환거래 규모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일평균 거래규모가 184.7억 달러로 위축되었다가, 이후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세로 변동성이 큰 폭

〈표 II-13〉

은행간 외환거래¹⁾ 추이

(단위 : 억 달러, %)

	2008년	2009년	2009년			
			1/4	2/4	3/4	4/4
현 물 환	78.1	58.3 [-25.4]	47.6	63.4	58.5	63.4
선 물 환	9.1	4.6 [-49.2]	5.4	5.9	5.0	2.2
외 환 스 압	92.3	105.3 [14.1]	91.8	105.5	109.8	113.3
기타파생상품 ¹⁾	51.6	43.7 [-15.3]	39.9	40.8	45.8	48.1
계	231.1	211.9 [-8.3]	184.7	215.6	219.1	227.0

주 : 1)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거래

2) 통화스압 및 옵션 등,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3) 일평균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으로 축소됨에 따라 거래 규모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품종류별로 살펴보면, 외환스왑 거래는 105.3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4.1% 증가한 반면, 현물환, 선물환 및 기타 파생상품 거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09년 중 국내기업의 선물환 순매도 규모는 211억 달러로 2008년 620억 달러의 1/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조선의 해외수주 규모가 250만 CGT(11월까지 누적)로 2008년(1,770만 CGT)의 14%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조선 및 중공업체의 해외수주가 전년에 비해 크게 부진함에 따라 이들 기업들의 환헤지 수요가 크게 감소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4〉 국내기업의 선물환 거래 추이

(단위 : 억 달러)

	2008년	2009년				
			1/4	2/4	3/4	4/4
매 도(A)	1,366	709	153	160	171	224
매 입(B)	746	498	111	120	131	136
순 매 도(A-B)	620	211	42	40	40	89
조선 해외수주(백만CGT) ¹⁾	17.9	2.5	-	-	-	-

주 : 1) 2009년은 1~11월중(자료 : Clarkson Research Services)

2) 일평균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09년 중 비거주자의 역외 NDF 거래는 전년의 2.4억 달러 순매입에서 280.8억 달러 순매도로 전환되었다. 역외 NDF 거래의 대규모 순매도 전환은 3월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4분기 중 비거주자들의 역외 NDF거래는 195.6억 달러 순매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확대 등에 기인한다.

〈표 II-15〉 비거주자의 역외 NDF 순매매¹⁾ 추이

(단위 : 억 달러)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역외 NDF 순매입 ²⁾	2.4	-280.8	-48.4	-28.7	-195.6	-8.1

주 : 1)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NDF(ND Swap 포함) 거래 기준

2) +는 순매입, -는 순매도

5. 파생상품시장

1) 장내파생상품시장

2009년 장내파생상품시장은 글로벌 금융불안 지속에 따른 파생상품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일평균 거래량(1,231만계약)의 경우 5.5%, 일평균 거래대금(43조 원)은 23.1% 각각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선물시장의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불안 지속에 따른 헤지 및 투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KOSPI200 선물, 국채 선물 및 미달러 선물 등의 거래량이 상장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주로 기인한다. 반면, KOSPI 200 옵션 거래량은 3.5%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한편, 일평균 거래대금은 선물시장의 경우 41.7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4.4% 증가한 반면, 옵션시장은 1.0조원으로 전년대비 -12.4% 감소하였다.

〈표 II-16〉

주요 상품별 일평균거래량 및 거래대금

(단위 : 계약, 억원, %)

	일평균거래량			일평균거래대금		
	2008년	2009년	증감률	2008년	2009년	증감률
KOSPI200선물 ¹⁾	267,878	328,526	22.6	251,498	302,482	20.3
3년국채선물	64,156	79,252	23.5	68,654	87,337	27.2
미달러선물 ²⁾	134,237 (26,847)	212,912 (162,695)	58.6	15,056	27,039	79.6
주식선물 ³⁾	70,013	146,132	108.7	415	635	53.0
선물 전체	513,853	769,189	49.7	336,058	417,964	24.4
KOSPI200옵션	11,155,139	11,545,418	3.5	11,582	10,141	-12.4
합 계	11,668,992	12,314,607	5.5	347,640	428,106	23.1

주 : 1) CME연계 글로벌시장 거래분(일평균 705계약) 포함

2) 미국달러선물은 거래량 비교를 위해 거래단위 축소(5만 달러→1만 달러) 전 거래량을 5배로 환산하였고 () 안은 환산前 거래량을 의미

3) '08.5.6 신규상장(15개), '09.12.14 10개의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선물 추가 상장

자료 : 한국거래소(KRX)

2009년 KOSPI200 선물 거래량은 전년대비 25.2% 증가한 8,310만 계약을 기록하였다. 특히 상반기 중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유럽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미국 은행권 부실 우려 등으로 헤지 및 차익목적 거래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하반기 중 CME연계 KOSPI200 선물 글로벌시장의 개장으로 24시간 거래체제가 구축되며 선물 거래량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국내기업의 실적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형성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이 크게 완화되며 거래량은 감소하였다.

투자자 형태별로 살펴보면 개인 및 외국인의 거래비중은 하락한 반면 ELS 및 ELW 발행 증가에 따른 헤지수요의 증가로 기관의 비중은 2.9%p 상승하는 등 시장 주도세력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금융선물시장 참여로 증권·선물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II-17〉 KOSPI200 선물 거래 및 투자자 비중

(단위 : 백만 계약,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거 래 량	66.4	83.1	21.2	22.7	19.7	19.5
개 인 비 중	36.8	34.1	38.9	36.0	30.8	30.8
기 관 비 중	38.0	40.9	36.1	38.9	44.1	44.5
외국인비중	25.2	25.0	25.0	25.2	25.0	24.6

자료 : 한국거래소(KRX)

2009년 중 KOSPI200 옵션 거래량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29.2억 계약을 기록하였다. 1/4분기 이후 지속된 변동성 축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증시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KOSPI200 옵션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4/4분기 중 국내증시의 조정과 두바이월드 사태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KOSPI200 옵션 거래량은 전분기대비 8.9% 증가한 8억 600만 계약을 기록하였다.

투자자 형태별로 살펴보면 개인 및 기관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알고리즘 트레이딩 증가로 전년대비 4.7%p 증가한 32.0%를 기록하였다.

〈표 II-18〉

KOSPI200 옵션 거래 및 투자자 비중

(단위 : 억 계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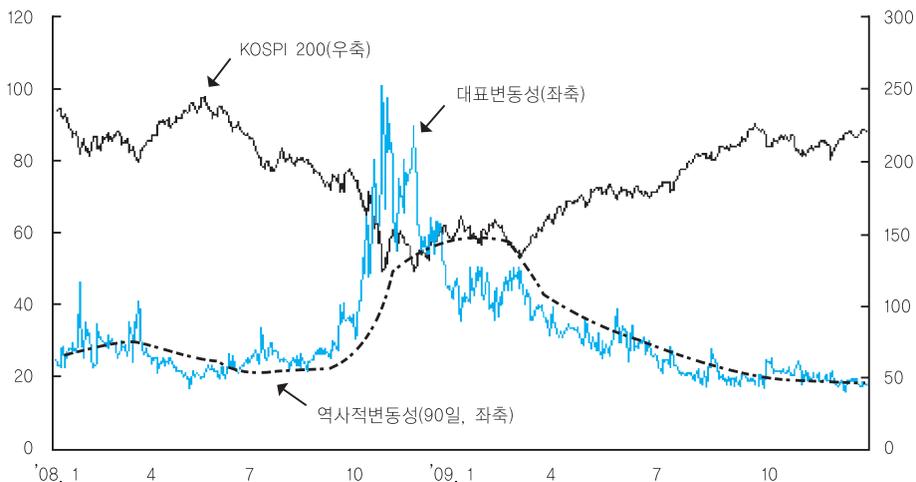
	2008년	2009년	2009년			
			1/4	2/4	3/4	4/4
거 래 량	27.7	29.2	6.23	7.52	7.40	8.06
개 인 비 중	36.7	35.2	36.0	34.0	35.4	35.3
기 관 비 중	35.6	32.8	31.9	33.4	33.6	32.2
외국인비중	27.3	32.0	32.1	32.6	31.0	32.5

자료 : 한국거래소(KRX)

시장 변동성을 살펴보면, 2009년 1/4분기 중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 및 동유럽 국가부도 우려 등에 따른 국내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4분기 이후 경기지표 호조에 힘입어 국내외 증시가 회복되고 미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로 인한 금융권 부실 우려가 감소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하반기에도 기업들의 실적개선과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내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변동성은 지속적인 축소세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10월 들어 글로벌 주가 조정과 함께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그림 II-21〉

KOSPI200 옵션의 변동성



자료 : 한국거래소(KRX)

이후 두바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한 상승 흐름을 나타냄에 따라 전반적인 변동성은 재차 축소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금리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리선물시장에서의 주요 상품인 3년 만기 국채선물시장은 2009년 중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효율적인 금리위험관리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2009년 중 3년 만기 국채선물은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27.9% 및 31.7% 증가한 2,005만 계약과 2,209.6조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금리변동성의 확대에 따른 헤지수요 증가와 증권사의 국채선물 활용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투자자 형태별로 살펴보면 개인투자자는 그 동안 국채선물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의 거래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중 비중이 3.4%p 상승하며 개인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관투자자는 그 거래 비중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채선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은행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반면, 증권·선물의 비중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금융선물 거래 참여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II-19〉

3년 만기 국채선물 거래 추이 및 투자자 비중

(단위 : 십만 계약, 조원,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거래량	156.8	200.5	46.5	50.3	52.9	50.7
거래금액	1,677.7	2,209.6	520.1	556.2	579.6	553.7
개인비중	3.8	7.4	7.4	6.9	7.6	7.9
기관비중	87.0	84.4	86.2	86.3	83.9	81.2
외국인비중	9.2	8.2	6.4	6.9	8.5	10.9

자료 : 한국거래소(KRX)

2009년 중 미달러 선물 거래량은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세에 따른 변동성 축소에도 불구하고 거래단위 인하(1/5로 인하) 및 결제월 확대와 미 달러 선물의 조기결제제도(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 및 맞춤형상품제도(FLEX, Flexible Exchange)의 시행으로 환헤지 수요의 장내화가 진행되어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83.2% 증가한 684.1조원을 기록하였다.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로

인하여 확대되었던 환율 변동성은 이후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축소되었다. 하지만 변동성 축소에 따른 헤지거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업체 등 일반기업과 개인의 시장참여 증가로 투자 저변이 확대되고 미달러 선물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향상된 데 힘입어 거래량 및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투자자 형태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였던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장내통화선물의 리모델링으로 기업들의 환헤지가 용이해져 환율의 변동성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6.4%p 상승한 13.7%를 차지하였다. 특히 2009년 4월 27일 미 달러화 선물의 거래단위가 인화된 이후 일반법인, 외국인 및 개인 등 비기관투자자의 소량거래 호가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2008년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던 기관의 비중은 4/4분기 중 은행 및 자산운용권의 거래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80%에도 못미치는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기관의 시장 주도력의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II-20〉

미달러 선물 거래 추이 및 투자자 비중

(단위 : 십만 계약, 조원,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거래량	66.6	411.6	23.2	108.2	133.8	146.4
거래금액	373.4	684.1	164.5	182.7	165.9	171.0
개인비중	7.3	13.7	14.2	16.1	12.8	11.9
기관비중	92.4	80.5	82.0	80.1	80.5	79.5
외국인비중	5.0	5.7	3.8	3.7	6.7	8.6

자료 : 한국거래소(KRX)

2) 장외파생상품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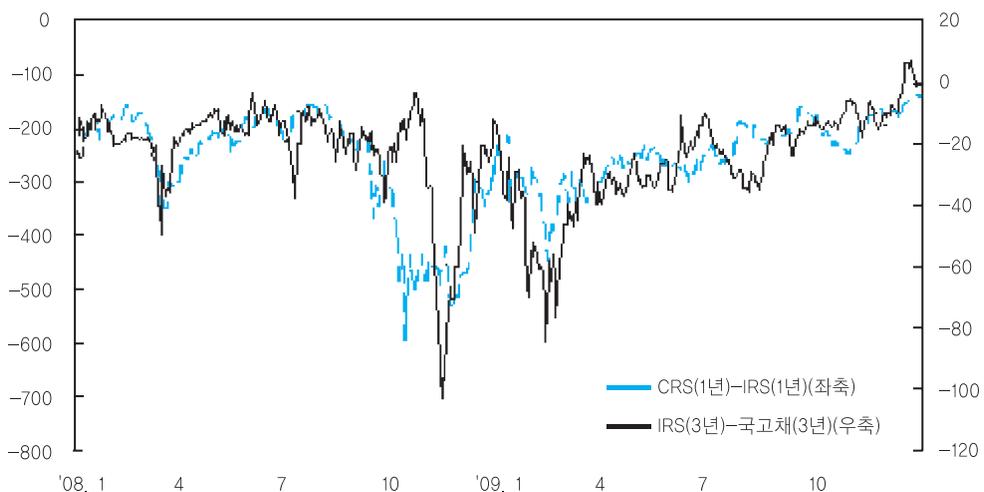
2009년 중 통화 및 금리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가격지수인 스왑 베이스스(=CRS-IRS)와 스왑 스프레드(IRS-국고채금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초 원/달러 환율 및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 등으로 축소되었던 스왑 베이스스 및 스왑 스프레드는 2월 들어 동유럽발 금융위기의 확산 우려, 미 은행권 불안 재개, 원/달러 환율의 급등, 외환수급 여건 악화 및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되면서 큰 폭으로 확대되며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완화 및 외화유동성 여건 개선 등이

반영되며 3월말 $\Delta 336\text{bp}$ 수준까지 확대되었던 스왑 베이스스는 CRS 금리 반등 및 IRS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스왑 스프레드 또한 글로벌 금리 상승, 외국인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 및 국채발행 물량 증가 등으로 국채금리와 IRS금리가 동반 상승하였으나, IRS금리 상승 폭이 국고채금리의 상승 폭을 상회하며 빠르게 축소되었다.

3/4분기 중 스왑베이스스는 국제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 및 채권자금 유입 지속, 외화채권 발행 증가에 따른 외화유동성 여건 회복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스왑스프레드는 국고채금리가 보험세를 보인 반면, IRS금리는 스왑스프레드 축소 폭이 과다하다는 인식 및 고정금리 수취 수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며 역전 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후 CD금리 상승으로 IRS금리가 올라가며 낙폭이 재차 축소되었다. 4/4분기 들어 국내 스왑지표는 기준금리 인상 논란 및 유동성비율 규제 가능성 등 정책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하여 스왑베이스스가 확대되었으나, 이후 외환시장의 여건이 호전되면서 CRS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며 연말 $\Delta 141.5\text{bp}$ 까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속적인 축소를 보이던 스왑 스프레드는 연말 CD금리 급등에 따른 IRS금리 상승으로 한때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으나, 이후 국고채금리 상승으로 다소 하락하여 제로(0)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II-22〉

스왑 베이스스와 스왑 스프레드



자료 : FnGuide

2009년 국내 전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리먼파산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에 따른 파생상품의 수급불일치로 인하여 1분기까지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2분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리먼파산 사태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되었다. 하지만 거래규모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거래잔액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만기구조가 짧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만기구조의 단기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이 더 큰 장기거래보다는 단기거래를 선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3분기 들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전년 동기에 비해 3.7% 증가(3,692조원)하였으며, 거래잔액도 전기에 비해 증가하는 등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단기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해소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표 II-21〉

장외파생상품 거래 및 잔액 현황¹⁾

(단위 : 조원)

	2008년	2009년							
	4/4	1/4	2/4	3/4	은행	증권	보험	신탁	기타
주식 관련	32 (58)	25 (60)	28 (59)	51 (80)	6 (19)	43 (58)	2 (3)	0.1 (0.5)	-
이자율 관련	536 (3,381)	638 (3,566)	657 (3,382)	808 (3,664)	778 (3,575)	29 (83)	0.2 (2)	0.4 (1)	0 (2)
통화 관련	2,323 (2,568)	2,125 (2,463)	2,730 (2,316)	2,831 (2,104)	2,705 (2,026)	25 (19)	5 (29)	76 (27)	21 (4)
상품 관련	3 (7)	2 (5)	2 (5)	1 (5)	1 (4)	0.1 (0.3)	-	-	0 (0.5)
신용 관련	2 (6)	2 (7)	2 (9)	1 (12)	0.5 (8)	0.6 (3)	0 (0.3)	-	0 (0.6)
합계	2,896 (6,020)	2,793 (6,102)	3,418 (5,771)	3,692 (6,010)	3,490 (5,662)	98 (265)	7 (36)	77 (40)	21 (7)

주 : 1) () 안은 장외파생상품 잔액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식 관련 상품은 상반기에 현물시장 침체와 더불어 거래 및 잔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거래규모와 거래잔액이 증가하였다. 이자율 관련 상품 거래는 상반기 중 다소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채권 거래량 증가로 인한 헤지 수요의 증가로 달러간 IRS 거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일반투자자의 금리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부진하면서 전체 이자율 파생상품 거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3분기 들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해소되며 스왑거래를 중심으로 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통화관련 상품의 거래는 상반기 중 재정거래를 했던 외국인 및 국내 외국계 기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단기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로 투자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3분기 들어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더불어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되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거래가 늘어났고, 또한 국제수지 흑자와 외국인 주식순매수로 인해 외환 거래가 증가되면서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거래는 리먼파산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제2장 금융산업 동향

1. 금융권간 자금흐름

1) 자금조달 측면

2009년 12월말 현재 예금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권 전체 자금조달 규모는 2,256.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4.4%(95.3조원) 증가하였다. 금융기관별로는 증권사가 전년말 대비 21.9%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예금은행, 비은행, 보험사의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전년말 대비 3.4%, 13.0%, 9.3% 증가하였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전년말 대비 7.8%(28.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중 은행의 수신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은행권의 금리경쟁력은 약화되었으나,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시중 대기성자금의 유입되면서 실세요구불예금(14.6%)과 저축성예금(11.2%)을 중심으로 은행권 수신은 전년말 대비 38.1조원 증가하였다. 반면 은행의 매출어음과 RP매도를 통한 자금조달은 큰 폭으로 감소해 각각 전년말 대비 34.1%, 3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은 서민금융기관의 상대적 고금리 및 비과세 한도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증권사의 경우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예수금이 전년말 대비 23.2%(3.9조원) 늘어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 II-22〉

금융권별 자금조달 잔액 추이

(단위 : 조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월	6월	9월	12월
예금은행	실세요구불예금	66.2	66.9	66.8	70.4	79.3	77.1	76.6
	저축성예금	514.5	516.2	599.5	608.7	621.3	647.5	666.3
	외화예금	18.4	20.3	33.7	36.5	36.8	35.2	30.7
	C D 순발행	73.5	102.5	110.2	106.6	113.7	118.4	107.6
	매출어음	3.1	4.0	3.1	2.4	2.0	1.6	2.0
	R P 매도	37.0	33.5	27.9	25.3	23.6	23.3	19.2
	금융채	133.2	168.9	200.2	197.8	199.7	200.6	180.9
	(소계)	845.9	912.5	1,041.4	1,047.6	1,076.3	1,103.7	1,083.3
은행신탁	63.3	73.6	71.8	67.0	65.6	66.4	68.0	
(계)	909.2	986.1	1,113.2	1,114.7	1,141.9	1,170.1	1,151.3	
비은행 금융기관	증권	17.0	23.2	23.8	24.5	22.1	20.2	21.7
	상호저축	44.5	50.4	60.9	62.8	65.9	69.8	73.3
	상호금융	154.1	156.5	170.3	177.3	183.5	186.8	193.0
	신협	22.6	23.3	26.5	30.2	31.9	32.9	34.8
	우체국예금	38.0	37.9	45.3	43.8	44.2	43.3	41.9
	새마을금고	51.1	50.8	56.2	61.4	63.8	65.5	68.2
	(계)	327.2	342.2	382.9	399.9	411.4	418.5	432.9
증권사	R P 매도	19.4	32.3	38.4	42.4	46.8	49.0	46.6
	고객예수금	14.0	16.2	16.6	20.2	22.5	24.1	20.4
	(계)	33.4	48.5	55.0	62.6	69.3	73.1	67.0
자산 운용사	주식형	46.5	116.4	140.2	139.6	137.2	131.1	126.2
	채권형	50.4	40.9	30.5	34.3	40.0	44.9	46.1
	혼합형	48.0	44.7	39.6	37.0	34.4	32.7	31.4
	M M F	57.2	46.7	88.9	118.4	104.0	79.0	71.7
	(계)	234.6	296.5	360.0	388.6	374.1	345.9	331.9
보험	생보	196.2	213.6	227.8	231.9	237.1	242.3	247.2
	우체국보험	19.4	21.1	22.7	23.8	24.9	25.8	26.6
	(계)	215.6	234.6	250.5	255.7	261.9	268.0	273.8
합계		1,720.0	1,907.9	2,161.6	2,221.5	2,258.7	2,275.7	2,256.9

주 : 1) 손보, 여전, 선물, 증권금융, 자금중개, 금융지주회사, 투자자문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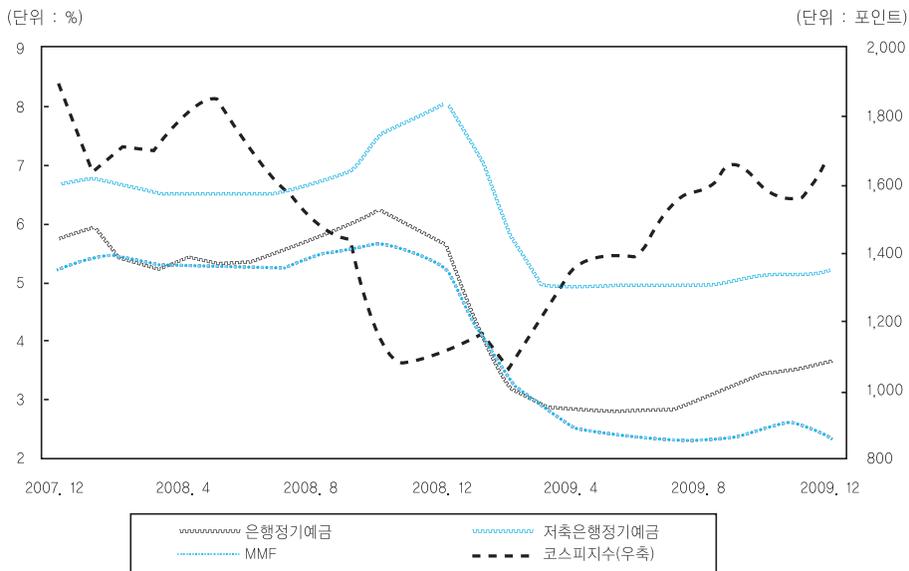
2) 예금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포함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의 경우, 연초 금리하락에 따라 채권형 펀드의 투자 메리트가 증가하고 이후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장기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수탁고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주가가 상승하면서 개인의 직접투자 경향이 확대되고 손실의 상당부분을 회복한 개인이 펀드를 환매함에 따라 주식형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이 감소(14.0조원)하였다. 또한 연초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MMF로 단기자금이 대거 유입되었으나, 하반기부터 안전자산 선호 경향 완화 및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해 MMF 수탁고가 큰 폭으로 감소(17.2조원)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자금조달은 전년말 대비 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말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각각 3.71% 및 5.19%로 전년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정기예금 수신금리는 6월말 기준 2.88%로 전년말 대비 2.79%p 하락하였다. 그러나 증권사 CMA 및 저축은행으로의 예금이탈 방지를 위한 예금금리 상향조정 및 만기도래 고금리예금의 재유치를 위한 특판예금 판매 등에 힘입어 12월말 3.71%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12월말 은행권과 상호저축은행 간 금리 차이는 6월말(2.06%p)보다

〈그림 II-23〉 금융상품간 수익률 비교



주 : 1) 은행, 저축은행의 경우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수신금리
 2) 종금사형 CMA는 180일 CMA, MMF는 7일 MMF 기준이며, 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

줄어들어 1.48%p로 축소되었다. 이는 자금조달 규모에도 영향을 미쳐 예금은행 저축예금 증가율은 2/4분기 중 2.1%, 4/4분기 중 2.9% 늘어나며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4분기 중 5.0% 증가한데 비해 4/4분기 중 5.1% 늘어나며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4분기부터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약세장에서 반등장세로 바뀌며 9월말 및 12월말에 이르러서는 코스피지수가 전월대비 각각 5.11%, 8.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증권사 고객예수금은 전년말 대비 23.2% 증가한 20.4조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자산운용사의 MMF는 2008년 3/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며 2009년 12월말 현재 2.31%를 나타냈다. 이러한 수익률 하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CD, MMDA 및 단기 채권형펀드 등으로 MMF의 자금이 이동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MMF 잔액은 전년말 대비 19.4% 감소한 71.7조원으로 나타났다.

〈표 II-23〉

금융상품간 수익률 비교

(단위 : %)

		2007년	2008년		2009년			
		12월	6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은행	정기예금	5.74	5.40	5.67	2.90	2.88	3.27	3.71
저축은행	정기예금	6.60	6.49	8.05	4.96	4.94	5.03	5.19
증권사	코스피지수	-0.47	-9.56	4.50	13.48	-0.42	5.11	8.17
자산운용사	M M F	5.2	5.24	5.20	2.89	2.30	2.30	2.31

주 : 1) 은행, 저축은행의 경우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수신금리

2) MMF는 7일 MMF 기준이며, 월말 기준

3) 증권사 코스피 지수는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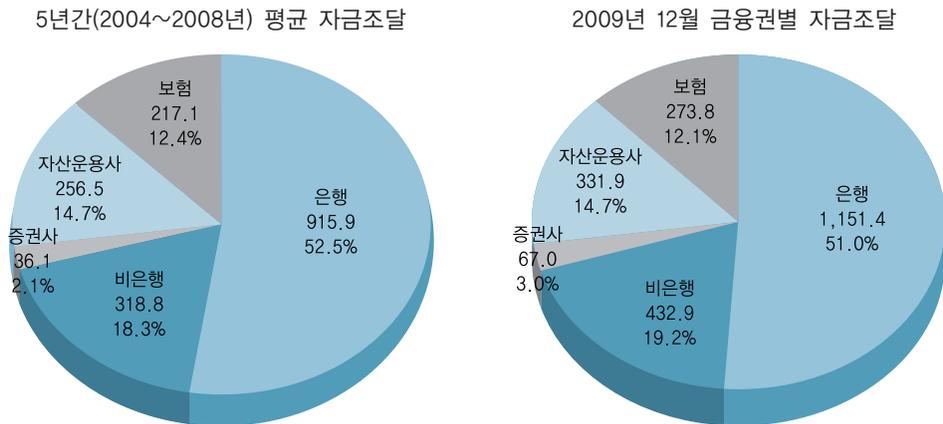
2009년 중에는 그동안 상승세를 지속해왔던 자산운용사의 자금조달 비중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은행권, 비은행권 및 증권사 등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말 현재 금융권 자금조달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51.0%로 2008년말(51.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은행권의 경우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주식형펀드 환매자금 예치 등 대기성 자금의 유치 및 은행의 자체적 수신영업 강화 등에 힘입어 자금유입이 지속된 것

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의 경우엔 2008년말 17.7%에서 12월말 19.2%로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다. 이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자금조달 규모가 다소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증권사는 2009년 1/4분기부터 주식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고객예수금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증가폭이 확대되며 전체 금융권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상승하였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MMF로의 자금 유입세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주식형펀드 환매가 이어지며 전체금융권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말 보다 2.0%p 하락한 14.7%를 나타냈다.

〈그림 II-24〉

금융권간 자금조달 비중 변화

(단위 : 조원, %)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표 II-24〉

총 자금조달 대비 금융권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12월
은행	53.3	52.9	51.7	51.5	50.6	51.0
비은행	18.7	19.0	17.9	17.7	18.2	19.2
증권사	1.7	1.9	2.5	2.5	3.1	3.0
자산운용사	13.4	13.6	15.5	16.7	16.6	14.7
보험사	12.9	12.5	12.3	11.6	11.6	12.1

자료 : 한국은행,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금융감독원

2) 자금운용 측면

전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규모는 2009년 12월말 현재 전년대비 5.3%(108.5조원) 증가한 2,175.5조원을 기록하였다.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총자금운용 규모는 1,284.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5%(31.1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예금계정의 원화대출금이 전년말 대비 4.5%(41.7조원)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정 원화대출금과 유가증권이 각각 33.8%(0.8조원), 2.3%(1.1조원) 감소한 데 기인한다. 한편, 증권사의 유가증권 자금운용 규모는 RP 편입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말 대비 16.1%(13.4조원) 증가한 96.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자산운용사의 경우 전년말과 같은 346.8조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보험사의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말 대비 13.8%(38.6조원) 증가한 318.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저축은행의 대출은 전년말 대비 17.7%(9.7조원) 증가한 64.3조원을 기록하였다.

금융기관 자금운용 가운데 대출금의 합계는 2009년 12월말 현재 1,158.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7%(62.0조원) 증가하였다. 예금은행의 원화대출금은 41.7조원(4.5%) 증가한 962.1조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상반기 중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LTV 규제강화 조치 이전의 차입신청분이 늘어나게 되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DTI 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주택구입 연기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말 대비 10.6%(25.4조원) 늘어난 265.1조원을 기록하였다. 중소기업대출은 정부의 중소기업 보증확대 및 만기 연장 등 유동성 지원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4.8%(19.7조원) 증가한 430.7조원을 기록하였다. 반면 대기업대출은 기업의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등으로 전년말 대비 6.4%(5.2조원) 감소한 75.5조원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해 2009년 12월말 현재 14.9%까지 낮아졌으며,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5.1%까지 높아졌다. 한편 신탁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금사, 상호저축 및 신탁의 대출금액이 전년말 대비 각각 34.3%, 17.7% 및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5〉

금융권별 자금운용 잔액 추이

(단위 : 조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월	6월	9월	12월
예 금 은 행	예금은행	원화대출금	699.7	805.2	920.3	939.5	954.6	967.0	962.1
		유 가 증 권	254.6	262.3	282.6	298.0	306.3	308.9	273.9
	신탁계정	신 탁 대 출	1.9	2.3	2.5	2.0	1.7	1.7	1.6
		유 가 증 권	51.6	58.3	47.6	45.2	44.4	47.0	46.5
	(소 계)		1,007.9	1,128.1	1,253.0	1,284.7	1,307.0	1,324.6	1,284.2
비 은 행	종 금	대 출	0.4	0.8	1.1	1.0	1.1	1.6	1.4
		유 가 증 권	0.3	0.4	0.6	0.8	0.6	0.7	0.8
	상호저축	대 출	42.7	47.1	54.7	54.3	57.0	59.7	64.3
		유 가 증 권	3.6	4.8	4.2	6.1	6.9	7.8	8.8
	신 협	대 출	15.3	17.6	20.3	20.3	20.9	21.8	22.3
		투 자 자 산	3.1	2.6	2.7	3.5	4.3	4.7	5.2
	신용카드	카드 자 산	17.6	20.4	21.2	21.9	21.1	22.3	27.4
(소 계)		83.0	93.6	104.8	108.0	111.8	118.6	130.2	
증 권 사	유 가 증 권	39.6	72.7	82.8	86.4	95.3	100.9	96.2	
자산운용사	간 접 투 자	235.6	323.4	346.8	368.3	397.6	361.6	346.8	
보 험 사	대 출		59.9	67.6	75.9	75.1	75.0	77.3	78.9
	유 가 증 권		165.7	180.6	189.1	196.7	207.2	216.3	222.7
	부 동 산		13.2	13.9	14.5	16.4	16.5	16.4	16.5
	(소 계)		238.8	262.1	279.5	288.2	298.8	310.0	318.1
자금운용 중 대출금 합계			837.5	961.0	1,096.0	1,114.3	1,131.4	1,151.4	1,158.0
총 계			1,604.9	1,880.0	2,067.0	2,135.7	2,210.5	2,215.8	2,175.5

주 : 1) 예금은행의 원화대출금은 비금융 민간신용(가계, 기업)임.

2) 예금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포함

3) 증권사의 대출은 2개 전업사(한불, 금호)임.

4) 자산운용사의 2009년 12월 간접투자 잔액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조사통계월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표 II-26〉

은행의 주체별 기업대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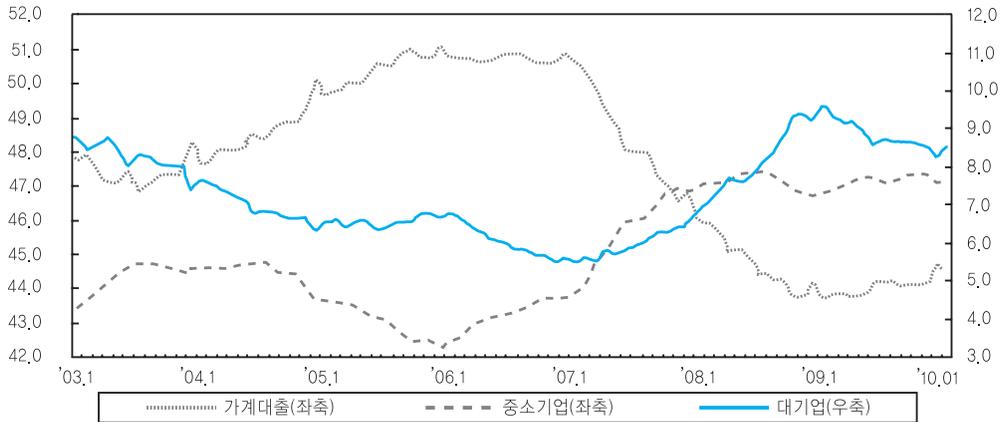
(단위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월	6월	9월	12월
중소기업	86.3	88.6	87.8	83.6	83.6	84.6	84.5	85.1
대 기 업	13.7	11.4	12.2	16.4	16.4	15.4	15.5	14.9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그림 II-25〉

은행의 대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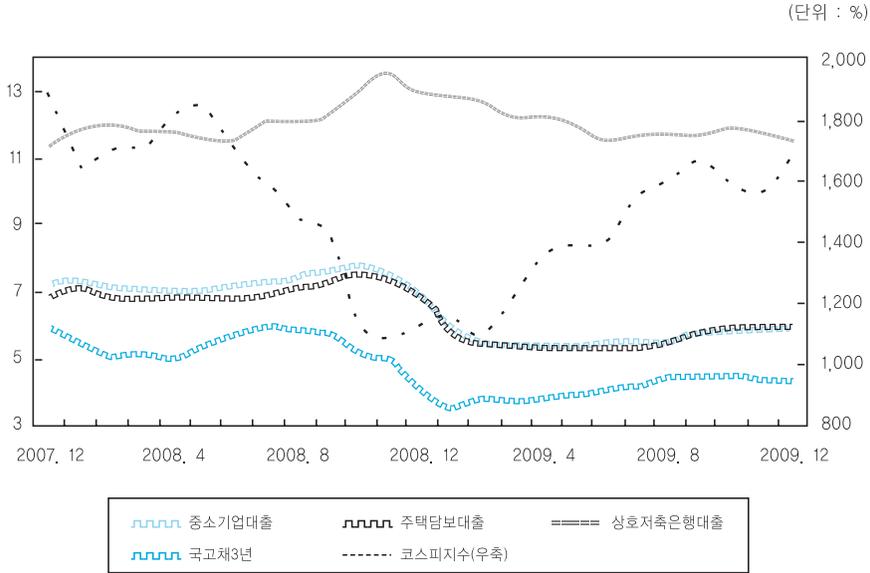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09년 중 은행권의 주택담보 및 대기업 대출금리,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신협 대출금리 등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의 하락 폭은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및 중소기업대출금리는 전년말 대비 각각 1.0%p, 0.9%p 내외로 소폭 하락한 데 비해,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의 대출금리는 각각 1.4%p, 1.3%p 하락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중 대출금리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권의 원화대출금은 4.5%(41.7조원) 증가했으나, 대출금리 하락 폭이 큰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의 대출금은 각각 17.7%(9.7조원), 9.8%(2.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리경쟁력이 강화된 비은행권의 대출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은행 대출 중에서는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금리가 역전된 것은 금융위기를 맞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9년 중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각 기관별 유가증권 운용규모가 확대되었는데,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의 유가증권 운용규모는 각각 48.4%(0.3조원), 107.8%(4.6조원), 16.1%(13.4조원) 및 17.8%(33.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6〉 금융 상품간 대출금리 및 수익률 비교



주 :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대출금리

자료 : 한국은행

〈표 II-27〉 금융 상품간 대출금리 및 수익률 추이

(단위 : %)

		2007년		2008년		2009년			
		12월	6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은행	대기업	6.77	6.53	6.75	5.58	5.43	5.55	5.45	
	중소기업	7.27	7.21	6.91	5.45	5.56	5.85	5.89	
	주택담보	6.85	6.77	6.81	5.43	5.25	5.77	5.90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11.33	11.56	12.84	12.19	11.49	11.69	11.48	
신협	일반대출	8.02	8.21	8.93	8.28	7.82	7.71	7.64	
주식	코스피	-0.47	-9.56	4.50	13.48	-0.42	5.11	8.17	
채권	국고채3년	5.89	5.70	3.97	3.69	4.09	4.40	4.24	

주 : 1)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대출금리

2) 증권사 코스피 지수는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2009년 12월말 현재 금융권 자금운용에서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말 (60.6%)보다 소폭 하락한 59.0%를 기록하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과 정부지원에 힘입은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경우 주식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자금유입이 증가해 전체 금융권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말 대비 0.4%p 상승한 4.4%를 기록하였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연초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MMF로 단기부동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6월말 기준 18.0%까지 자금운용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운용 규모가 감소하고, 안전자산 선호 경향 완화 및 수익률 하락 등으로 MMF 수탁고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금융권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하락하여 12월말 기준 15.9%를 기록하였다.

〈표 II-28〉 총 자금운용 대비 금융권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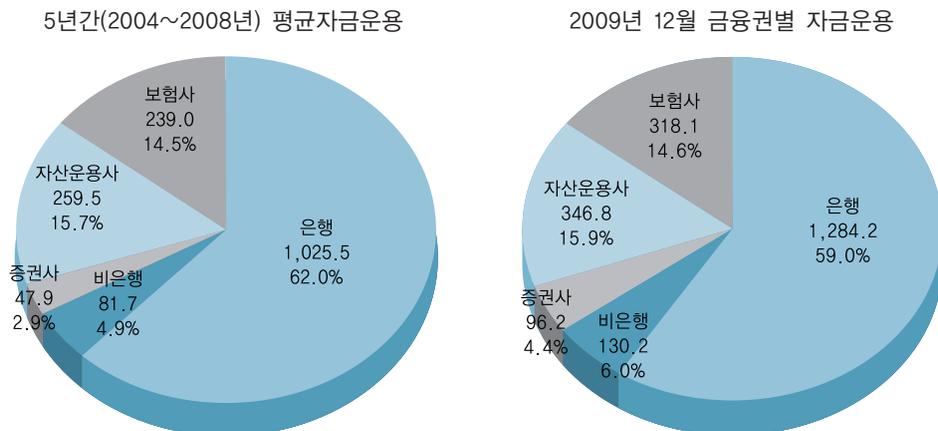
(단위 :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9월	12월
은행	64.1	63.9	62.8	59.7	60.6	59.1	59.8	59.0
비은행	4.6	4.8	5.2	5.0	5.1	5.1	5.4	6.0
증권사	1.5	1.8	2.5	3.9	4.0	4.3	4.6	4.4
자산운용사	14.6	14.3	14.7	17.4	16.8	18.0	16.5	15.9
보험사	15.3	15.3	14.9	14.1	13.5	13.5	14.0	14.6

자료 : 한국은행,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그림 II-27〉 금융권간 자금운용 비중 변화

(단위 : 조원, %)



자료 : 한국은행,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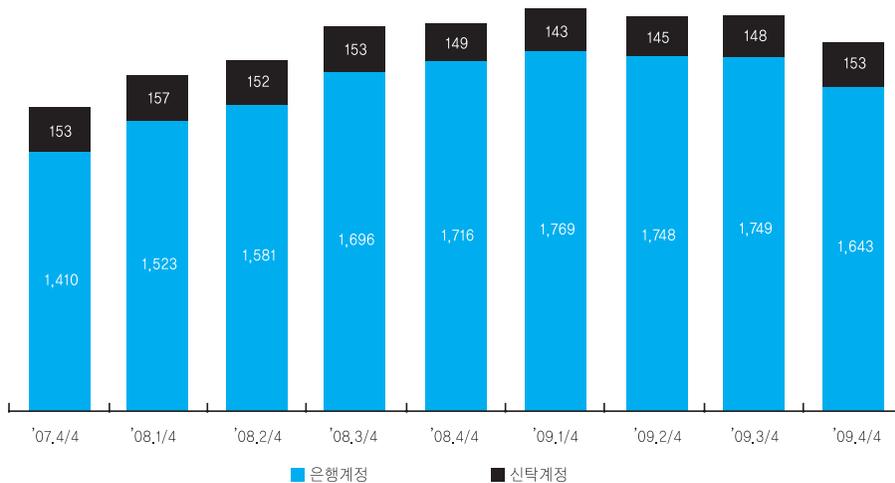
2. 은행산업

1) 성장성

2009년 들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국내은행들이 신용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2008년 하반기에 이어 국내은행의 자산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4분기 들어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던 국내은행의 총자산이 3/4분기 들어서도 0.18%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4/4분기에는 총자산이 다시 감소하면서 국내은행의 보수적 운용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림 II-28〉 국내은행의 총자산 추이¹⁾

(단위 : 조원)



주 : 1) 말잔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2009년 중에는 은행대출도 경기 하강의 영향으로 그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던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대기업대출 또한 대기업들의 부채비율 관리가 강화되고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면서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가계대출은 2009

년 중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상반기 중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낮은 금리 수준과 주택시장 회복 및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수요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4/4분기 들어서는 기업대출이 감소한 데 비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29〉

국내은행의 대출 추이

(단위 : 조원)

	가계대출 (A)			기업대출 (B)			총대출 (A+B)
	주택담보대출	마 이 너 스 통장대출 등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2003	252.9	153.3	96.0	271.0	38.6	232.5	523.9
2004	275.4	169.7	103.7	275.0	34.9	240.1	550.4
2005	304.8	190.3	112.9	291.8	39.9	251.9	596.6
2006	345.7	217.0	127.0	334.2	38.0	296.2	679.9
2007	363.5	221.6	139.9	413.4	50.4	363.0	776.9
2008	388.5	239.7	146.8	491.7	80.7	411.0	880.2
2009.Q1	391.6	247.3	142.7	502.6	82.3	420.3	894.2
2009.Q2	399.5	254.4	143.8	505.2	77.7	427.5	904.7
2009.Q3	404.2	260.1	142.8	513.5	79.7	433.8	917.7
2009.Q4	408.6	265.1	142.3	506.2	75.5	430.7	914.8

주 : 예금은행 기준(산업은행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2009년 중 국내은행의 수신은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및 은행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인해 저축성 예금을 중심으로 예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CD 등 시장성 수신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2009년 하반기 은행의 고금리 특판예금이 증가한 것도 은행의 꾸준한 예금 수신 증가를 뒷받침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중에는 안전자산 선호 경향의 지속으로 시중의 여유자금이 MMF와 펀드자금 등에서 은행권으로 꾸준히 유입되었다.

〈표 II-30〉

국내은행의 수신 추이

(단위 : 조원)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외 화 예 금		21.0	20.5	28.2	33.7	36.5	36.8	35.2	30.7	
원 화 예 금	저 축 성 예 금	6개월미만 정기예금	30.1	32.4	38.6	38.1	33.8	36.1	45.5	51.9
		6개월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	35.8	42.1	39.5	40.9	44.7	44.4	43.7	48.8
		1년 이상 정기예금	261.4	261.9	272.4	289.9	286.1	283.4	296.2	301.1
		소 계	327.3	336.4	350.5	368.9	364.5	363.9	385.4	401.7
	기 타	204.2	216.8	221.3	230.6	244.2	257.4	262.0	264.6	
	총저축성예금	531.5	553.2	571.8	599.5	608.7	621.3	647.5	666.3	
	요 구 불 예 금	72.2	74.8	74.2	75.7	79.0	87.2	87.9	85.0	
총 원 화 예 금		603.7	628.0	646.0	675.2	687.6	708.5	735.4	751.3	
시 장 성 수 신	금 용 채	174.6	182.5	194.8	200.2	197.8	199.7	200.6	180.9	
	R P 매 도	27.9	32.2	32.4	27.9	25.3	23.6	23.3	19.2	
	C D 순 발 행	113.8	119.7	118.1	110.2	106.6	113.7	118.4	107.6	
	총시장성수신	316.3	334.4	345.3	338.3	329.7	337.0	342.3	307.7	
총 수 신 ¹⁾		941.0	982.9	1,019.5	1,047.2	1,053.9	1,082.2	1,112.9	1,058.9	

주 : 1) 매출어음 제외

2) 말잔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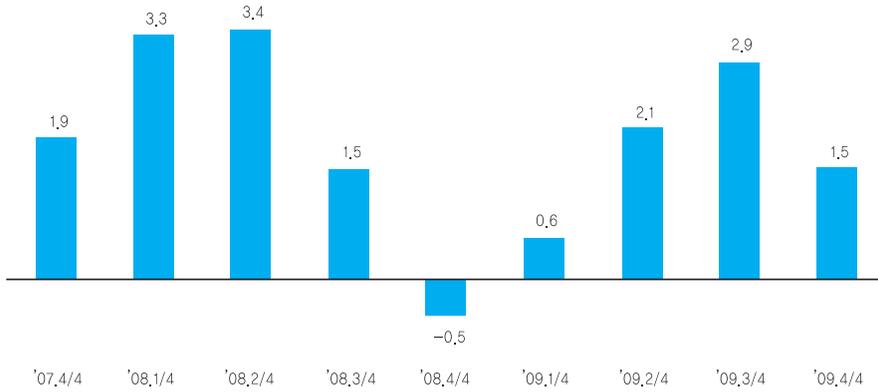
2) 수익성

2008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경기침체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 축소 및 이자이익 감소 등으로 인해 2009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0.7조원 감소한 7.1조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29〉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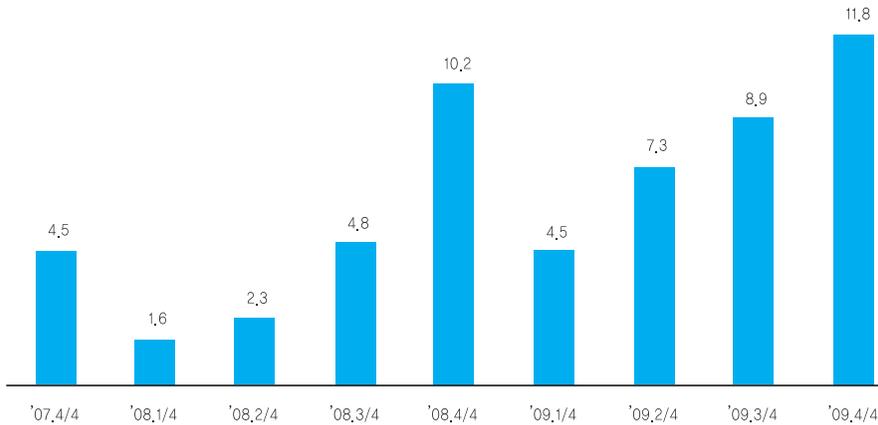
주 : 2009년 4분기는 잠정치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 호 및 정례브리핑자료

〈그림 II-30〉

국내은행의 누적 총당금전입액 추이

(단위 : 조원)



주 : 1) 2009년 4분기는 잠정치

2) 누적 전입액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 호 및 정례브리핑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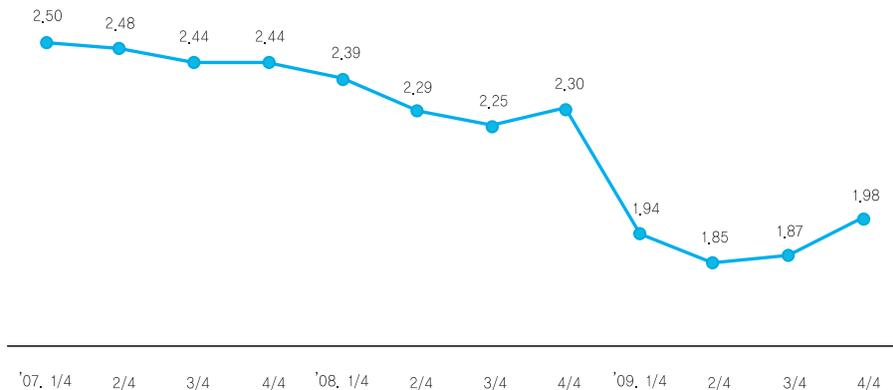
특히 2009년 중에는 대출자산의 건전성 악화로 대손비용⁴⁾이 전년에 비해 2.3조 원 증가한 12.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기를 반영하여 대손비용이 잠시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4/4분기말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12월 말의 금호 계열사 및 일부 조선사 워크아웃 추진 등에 따라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면서 대손비용이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 상승과 더불어 3/4분기까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도 4/4분기에 다시 감소하였다.

2009년말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08년에 비해 0.33%p 축소된 1.98%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8년말 4.64%에 달했던 CD금리가 2009년 6월말 2.41%까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CD금리연동형 등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고 고정금리부 수신비중이 높은 국내은행의 경우 이자수익이 이자비용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4분기에 1.85%까지 하락 하였던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순이자마진이 2분기 연속 상승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순이자마진이 여전히 2% 미만에 머물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31〉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 추이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 호 및 정례브리핑자료

4) 총당금적립액과 대출채권매각손실의 합

2009년 중에는 외환 및 파생상품 관련이익과 수수료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이익이 2008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09년 중 증시호전 및 주요 출자전환기업 등의 주식 매각에 힘입어 유가증권관련이익이 3.3조원을 기록하며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증권관련이익은 2009년 하반기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0.9조원과 1.6조원을 기록한 뒤 3/4분기와 4/4분기에 이르러서는 각각 0.4조원과 0.3조원을 시현하는 데 그쳤다.

〈표 II-31〉

국내은행의 수익구성

(단위 : 조원, %)

	2008년 (A)		2009년 (B)		증 감 (B-A)	증감률
		구성비 ¹⁾		구성비 ¹⁾		
이 자 이 익	34.5	87.1	32.2	85.9	△2.3	△6.6
비 이 자 이 익	5.1	12.9	5.3	14.1	0.2	3.7
수수료관련이익	4.2	10.6	3.9	10.4	△0.3	△6.4
신탁관련이익	0.4	1.0	0.4	1.1	0.0	△6.0
유가증권관련 ²⁾ 이익	0.7	1.8	3.3	8.8	2.6	380.3
판매비와 관리비	18.2		17.7		△0.5	△2.9
당기순이익	7.6		7.1		△0.7	△8.6

주 : 1) 이자이익 및 비이자이익 합계에 대한 구성비

2) 유가증권처분, 평가 및 감액 손익 + 배당금 수익(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자료

한편 국내은행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중금리 상승과 대손비용의 축소로 순이자마진이 계속 회복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2009년 4/4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부실인식 및 부실채권 정리, 그리고 기업과 가계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우려에 따른 추가적인 잠재적 부실 등이 향후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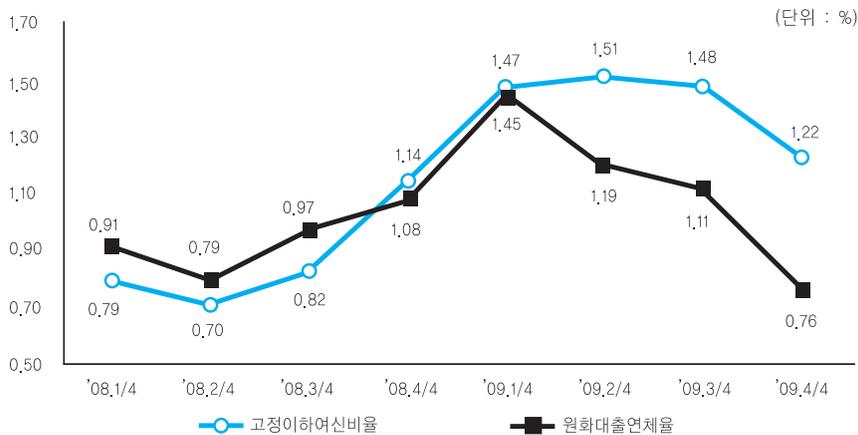
3)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국내은행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여건의 악화로 2009년 들어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면서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이 급등하여 자산건전성이 대체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기회

복으로 기업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부실채권이 큰 폭으로 정리되면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4분기 이후 하락하였다. 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후 급등했던 연체율도 2009년 1/4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총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은행의 2009년말 부실채권비율은 1.22%로 나타나고 있는데, 12월말 발생한 금호계열사 및 일부 조선사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관련 채권 발생을 제외할 경우 부실채권비율은 0.99%인 것으로 추정되어 감독당국이 제시한 1% 목표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국내은행들이 상각·매각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한 결과로서, 2009년중 국내은행은 전년의 14.0조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29.7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은행의 2009년 12월말 부실채권 잔액은 15.7조원으로 나타나 2009년 6월말에 비해 3.9조원 감소하였다.

〈그림 II-32〉 원화대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주 : 1) 국내은행 기준

2) '09.4/4분기는 전망치(12월말 발생한 신규부실채권 요인(금호산업, 금호타이어, SLS조선, 21세기 조선 등)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2008년 하반기에 크게 악화되었던 국내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은 2009년에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09년 4/4분기 현재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4.36%로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여 미국 등 주요국 은행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

지하였다. 이는 2009년중 지속된 은행권의 자본확충 및 당기순이익 시현 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한 반면, 환율 하향 안정화에 따른 파생상품 및 외화 자산의 감소와 시장 변동성 축소 및 위험측정 방식의 변화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줄어든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의 대손충당금적립률과 BIS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0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점차 축소되고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경우 향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부실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기회복과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은 2009년 중 큰 폭으로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크게 늘려 부실 가능성을 추가로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32〉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력 지표 추이

(단위 :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Tier 1 자본비율	국 내	8.22	8.54	8.33	8.84	9.51	10.30	10.80	10.93
	일 반	7.89	8.24	8.24	9.01	9.72	10.50	10.94	10.98
	특 수	8.85	9.13	8.49	8.54	9.15	9.99	10.56	10.83
B I S 기 준 자 기 자 본 비 율	국 내	11.2	11.36	10.86	12.31	12.94	13.74	14.21	14.36
	일 반	10.97	11.16	10.66	12.72	13.4	14.25	14.64	14.57
	특 수	11.66	11.76	11.24	11.59	12.16	12.91	13.51	13.99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	국 내	189.3	202.7	155.4	146.3	125.3	124.4	125.2	139.9
	일 반	187.0	197.8	140.7	145.5	120.7	121.0	121.9	144.5
	특 수	193.8	213.4	184.8	147.8	135.5	131.6	131.9	132.3

자료 : 금융감독원

3. 비은행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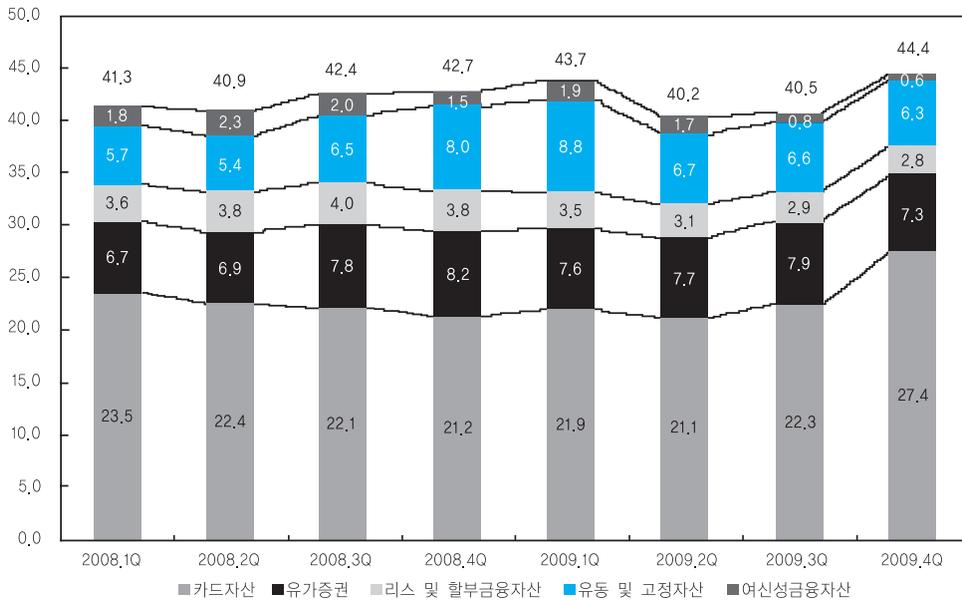
1) 전업카드사

2009년 12월말 현재 전업카드사의 총자산은 전년말 대비 4.0% 증가한 44.4조원을 기록했다(〈그림 II-33〉 참조). 자산종류별로 살펴보면 대여금의 감소에 따라

여신성금융자산은 2008년말 대비 60% 줄어든 0.6조원을 나타내었고, 리스 및 할부금융자산도 내구재할부금융 및 운용리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전년 4/4분기 대비 26.3% 감소한 2.8조원을 기록하였다. 전업카드사 총자산의 61.7%를 차지하는 카드자산은 일시불 및 할부카드 대금금의 증가로 인하여 29.2% 증가한 27.4조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유동성자산인 현금과 현금성자산의 감소로 인하여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은 전년말 대비 21.3% 감소한 6.3조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II-33〉 전업카드사의 총자산 및 구성자산별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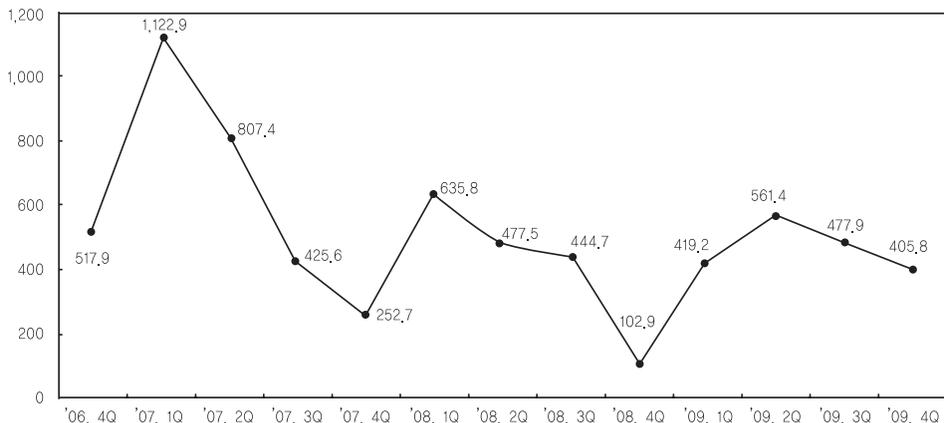
2009년 중 국내 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472.0조원으로 전년(464.2조원) 대비 1.7%(7.8조원) 증가하였다. 신용판매(372.6조원)의 경우 세제 지원에 따른 자동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4.6%(16.3조원) 늘어난 반면, 현금대출(99.4조원)은 리스크관리 강화로 7.9%(8.5조원) 감소하였다. 한편 2008년 3/4분기 이후 하락 추세이던 신용카드의 이용실적은 2009년 2/4분기 이후 소폭(0.6%)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업카드사는 2008년 상반기의 비카드 상장에 따른 비정상적 이익 소멸에

도 불구하고 2009년 누적기준으로 1조 8,643억원의 당기순이익 흑자를 실현하였다. 영업이익 누적액은 전년 대비 5.8%(1,263억원) 증가한 2조 3,095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하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수수료가 감소하였으나, 가맹점 수수료수익 증가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비용의 감소가 이익 개선의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이자비용과 리스비용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전업카드사의 2009년 4/4분기 당기순이익은 4,05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294.4% 증가하였다.

〈그림 II-34〉 전업카드사의 분기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10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전업카드사들의 건전성은 2008년 말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다(〈표 II-33〉 참조). 전업카드사의 연체율(1개월 이상)은 2008년 9월말 이후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6월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09년 말 현재 2.2%로 전년말 대비 1.2%p 하락하였다.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2007년말(3.8%)부터 2008년 9월말(3.3%)까지 카드사의 대환대출 축소와 부실채권의 대손상각 등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 채무상환능력의 약화로 연체채권이 증가하면서 2008년말(3.4%)부터 2009년 3월말(3.6%)까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이에 전업카드사들은 2009년 1/4분기에 2,099억원, 2009년 2/4분기에 2,558억원 등 총 4,657억원에 이르는 대손상각을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강화 등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을 기

올여 2009년말 현재 연체율은 다시 2.2%까지 하락하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2009년말 2.0%로 전년동기 대비 0.9%p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2009년말 전업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평균 29.1%로 2008년 12월말(23.9%) 대비 5.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3〉 전업카드사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조정자기자본비율	23.0	25.4	25.3	23.9	24.6	28.2	29.7	29.1
연 체 율	3.5	3.4	3.3	3.4	3.6	3.1	2.5	2.2
고정이하여신비율	3.3	3.1	3.0	2.9	3.0	2.6	2.1	2.0

주 : 1) 당분기 기준

2) 연체율은 1개월 이상, 대환대출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2) 여신전문금융회사

2009년말 현재 전업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전년말(59.4조원) 대비 0.3% 증가한 59.6조원으로 집계되었다(〈표 II-34〉 참조). 업종별로 총자산을 살펴보면, 리스사는 전년 말 대비 1.3% 증가한 22.5조원을 기록하였으나, 할부금융사와 신기술금융사는 소폭 감소하여 각각 32.9조원, 4.2조원을 기록하였다. 자산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여신금융회사의 내구재할부금융자산은 전년말 대비 19.0% 감소한 6.4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운용리스자산과 신기술금융자산도 전년말 대비 각각 5.1%, 2.0% 감소하여 7.2조원 및 7,176억원을 기록하였다. 반면 주택할부금융자산은 전년말 대비 15.4% 증가한 9,336억원을 나타내었다(〈표 II-35〉 참조). 2009년 중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리스크 부담이 증가하였고, 관련 업종이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서 대출이나 리스를 실행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신규 취급액이 리먼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9년 2/4분기 들어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 시 세금감면 조치 시행과 회사채 발행을 포함한 외부차입 재개 등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은 점차 개선되었다.

〈표 II-34〉 여신전문금융회사별 총자산 추이

(단위 : 조원)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리 스 사	20.2	21.7	23.0	22.2	22.4	21.6	21.7	22.5
할부금융사	29.7	32.1	33.8	33.0	32.0	31.5	32.1	32.9
신기술금융사	5.1	4.7	4.5	4.2	4.3	4.1	4.0	4.2
총 자 산	54.9	58.5	61.4	59.4	58.8	57.3	57.9	59.6

주 : 당분기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표 II-3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별 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내구재할부금융자산	7,089.5	7,971.2	7,805.2	7,852.0	6,476.1	6,066.7	5,734.8	6,358.7
주택할부금융자산	675.5	773.8	833.7	808.9	822.6	834.6	911.6	933.6
운 용 리 스 자 산	7,168.8	7,598.2	7,771.9	7,535.2	7,333.2	7,372.5	7,202.9	7,150.4
신 기 술 금 융 자 산	813.3	669.9	767.5	732.1	665.7	646.0	693.6	717.6

주 : 당분기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09년말 현재 전업권에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6〉 참조). 리스사와 할부금융사의 2009년 중 당기순이익 누적액은 각각 1,413억원, 5,469억원으로 전년동기(각각 1,083억원, 5,036억원) 대비 30.5%, 8.6% 증가하였다. 반면 신기술금융사는 1,2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동기(271억원)대비 361.6% 증가하였다. 선박, 제조업의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등 기업금융을 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사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금호산업 워크아웃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으면서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개인금융 및 자동차금융 의존도가 높은 여신전문금융사는 노후 차량 교체 시 세제지원혜택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순이익을 거두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살펴보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리스사가 전년말 대비 0.2%p 하락한 3.4%를 기록하였으며, 할부금융사와 신기술금융사가 각

각 0.3%p, 0.5%p 상승한 2.3%, 4.5%를 기록하여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산건전성의 악화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기업대출의 연체율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2009년말 현재 리스사를 제외한 할부금융사 및 신기술금융사의 대손충당금적립률 역시 120.7%와 58.6%로 2008년 말(각각 130.3%, 59.7%) 대비 각각 9.6%p, 1.1%p 하락하여 손실흡수 능력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리스사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08년말 86.4%에서 상승한 106.3%로 나타났으며, 손실흡수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 등으로 리스사, 할부금융사 및 신기술금융사가 17.3%, 15.8% 및 34.9%를 기록하며 2008년 말대비 각각 2.9%p, 2.9%p, 6.8%p 상승하였다.

〈표 II-36〉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단위 : 십억원,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당기순이익	리스	-89.8	143.1	50.1	4.9	-148.7	120.0	119.3	50.7
	할부금융	153.9	145.2	172.1	32.4	172.0	143.9	148.3	82.7
	신기술금융	80.7	-43.4	2.0	-12.2	21.8	9.1	82.4	11.8
대손충당금비율	리스	82.5	100.3	102.4	86.4	87.5	86.1	98.1	106.3
	할부금융	145.9	149.1	140.4	130.3	100.8	100.6	107.7	120.7
	신기술금융	116.3	86.1	64.7	59.7	59.3	53.4	56.0	58.6
고정이하 여신비율	리스	3.2	2.6	2.5	3.6	3.9	4.4	3.8	3.4
	할부금융	1.4	1.4	1.6	2.0	2.8	3.0	2.8	2.3
	신기술금융	1.2	1.5	2.6	4.0	4.9	5.4	5.0	4.5
조정자기 자본비율	리스	15.2	14.5	14.2	14.4	15.0	16.2	17.3	17.3
	할부금융	12.3	12.5	12.9	12.9	13.8	15.1	15.8	15.8
	신기술금융	31.4	23.7	27.1	28.1	29.5	33.8	36.5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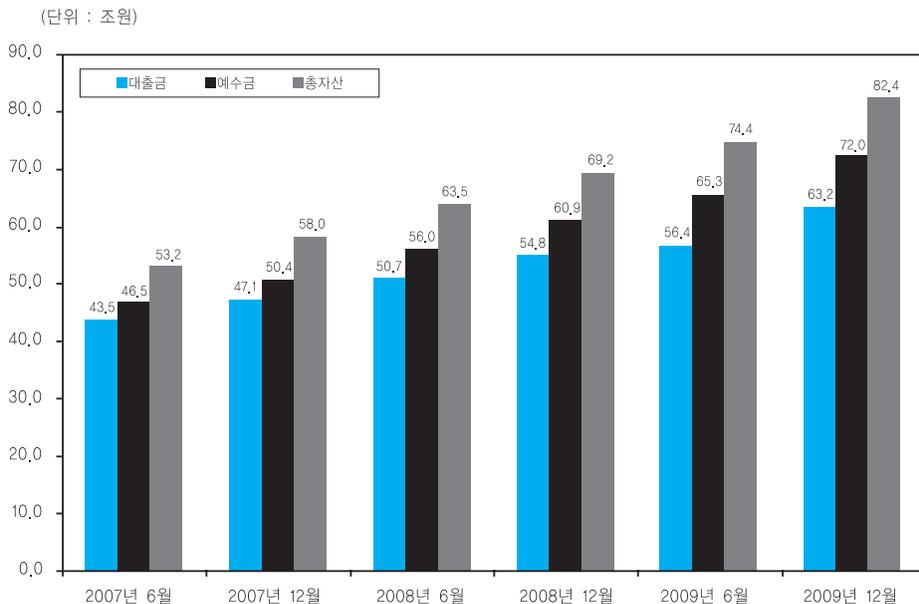
주 : 당분기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3) 상호저축은행

2009년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전년동기 대비 19.1% 증가한 82.4조원을 기록하였다(〈그림 II-35〉 참조).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은 약 63.2조원으로 2008년말 대비 8.4조원(15.3%) 증가하였으나, PF대출채권의 캄코 매각 및 경기하락에 따른 신규대출 취급 감소 등으로 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2007년말~2008년말, 16.3%)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신은 72.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11.1조원(18.2%)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들이 전년도말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신금리를 인상한 데에 기인한다.

〈그림 II-35〉 상호저축은행 총자산 및 여수신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2009년 중 당기순이익은 2008년(586억원)에 비해 146.2%나 증가한 1,443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다(〈표 II-37〉 참조). 당기순이익은 2009년 6월 1,05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사채이자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조달비용의 하락으로 영업비용이 감소한데다 대출금이자 등 이자수익이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자산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경기하락 등의 영향으로 2009년말 현재 전년말(15.5%) 대비 2.3%p 하락한 13.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결산기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연체채권 정상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8%로 전년말(9.1%) 대비 0.3%p 하락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체채권 중 장기연체채권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FY'08 기간 중 유상증자(4,350억원) 및 후순위채 발행(4,073억원) 등 상호저축은행의 자본확충 노력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08년말(9.3%) 대비 0.4%p 상승한 9.7%를 기록하며 손실흡수능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7〉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단위 : 억원, %)

	2007.6	2007.12	2008.6	2008.12	2009.6	2009.12
당기순이익	3,677	3,063	-398	984	-1,051	2,494
연체율	16.4	14.7	14.0	15.5	15.1	13.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9.1	9.7	9.1	9.3	9.6	9.7
고정이하여신비율	10.2	8.8	9.4	9.1	9.7	8.8

주 : 당기순이익은 해당 반기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4) 상호금융기관

2009년말 현재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협 및 신협의 지역조합)의 총자산은 전년말 대비 약 11.8% 증가한 281.2조원을 기록했다(〈표 II-38〉 참조). 상호금융기관의 수신은 2009년 말 현재 전년말 대비 약 15.8% 증가한 227.8조원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2008년 연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예금의 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비과세 예금의 수신이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반면 여신은 전년말 대비 5.3% 증가한 173.8조원에 그치면서 서민지원 대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수금 증가율에 비해 대출 증가율의 상대적 부진으로 예대율은 2009년 말 현재 전년말 대비 7.6%p 하락한 76.3%를 기록하였다.

〈표 II-38〉 상호금융기관의 총자산, 여신, 수신 및 예대율 추이

(단위 : 조원,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총자산	신용사업자산	222.9	227.7	232.0	235.5	244.4	252.5	258.4	266.2
	계	236.4	239.7	246.7	251.6	260.4	267.0	272.4	281.2
여신	상호금융대출금	137.1	143.0	148.4	151.8	150.5	152.7	156.5	160.5
	계	149.6	156.2	161.9	165.1	163.6	165.9	169.8	173.8
	수신	182.6	187.1	191.0	196.8	207.5	215.4	219.7	227.8
	예대율	81.9	83.5	84.8	83.9	78.8	77.0	77.3	76.3

주 : 1) 총자산=신용사업자산+경제사업자산

2) 여신=상호금융대출금+정책자금대출금(신협은 없음)

3) 예대율=상호금융대출금/수신×100

자료 : 금융감독원

〈표 II-39〉 상호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단위 : 억원,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당기순이익 ¹⁾	신협	89	607	1,000	1,147	△337	442	1,616	1,848
	농협	3,780	7,019	9,071	10,606	2,755	7,575	11,445	12,266
	수협	△20	182	241	674	△248	50	258	922
	산림협	△141	△37	21	327	△65	338	401	566
연체율	신협	10.0	9.0	8.6	8.1	9.6	8.7	8.8	6.9
	농협	3.7	3.4	3.5	2.9	4.4	4.1	3.8	3.1
	수협	7.7	7.0	6.9	6.8	8.0	7.5	7.3	6.4
	산림협	8.3	8.7	8.8	7.0	9.0	8.8	8.0	6.8
고정이하 여신비율	신협	3.9	3.9	3.7	3.5	4.0	4.4	4.3	3.7
	농협	1.5	1.4	1.5	1.6	1.8	1.9	2.0	1.9
	수협	2.5	2.4	2.3	2.0	2.7	2.8	3.7	3.3
총당금 적립비율	신협	108.0	108.2	107.6	106.9	107.0	107.4	107.9	104.6
	농협	178.9	177.0	170.8	170.8	161.3	158.5	153.6	167.7
	수협	112.4	112.3	112.4	114.8	110.7	111.0	123.1	130.5
	산림협	110.4	115.4	114.0	113.9	108.3	109.4	111.0	101.8
순자본비율	신협	2.9	3.0	3.0	3.1	2.8	3.0	3.3	3.1
	농협	7.0	7.1	7.2	7.2	7.1	7.3	7.5	7.6
	수협	0.4	0.2	0.3	1.2	0.9	1.1	1.3	1.7
	산림협	10.9	10.9	11.0	11.8	10.4	10.8	11.1	11.3

주 : 1) 당기순이익은 누적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2009년 중 전체 상호금융기관 당기순이익의 누계액은 1조 5,60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2.3%(2,848억원) 증가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관별로는 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협의 2009년 중 당기순이익 누계액이 1,848억원, 1조 2,266억원, 922억원 및 566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각각 701억원, 1,660억원, 248억원, 23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초 상호금융기관은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채무상환능력의 약화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세 등에 힘입어 소폭 개선되었다. 업권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2009년말 현재 신협, 수협 및 산림협의 연체율은 6.9%, 6.4% 및 6.8%를 기록하여 전년말 대비 각각 1.2%p, 0.4%p, 0.2%p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협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말 대비 0.2%p, 0.3%p, 1.3%p, 0.1%p 상승한 3.7%, 1.9%, 3.3%, 3.0%로 조사되었다. 2009년말 현재 신협과 산림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기관의 순자본비율은 농협, 수협이 전년말 대비 각각 0.4%p, 0.5%p 상승한 7.6%, 1.7%를 기록하였고, 신협의 순자본비율은 변화가 없는 반면 산림협의 순자본비율은 전년말대비 0.5%p 하락한 11.3%를 나타내었다.

4. 금융투자업

1) 성장성

2008년 중 금융위기의 여파로 감소세를 보였던 증권사의 자산규모는 2009년 들어 증시 호조세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12월말 현재 증권사의 자산규모는 16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5% 증가하며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FY2009 1/4분기 중 투자자 고객예탁금·신용융자잔고·활동계좌 등의 증가, 단기 대기성자금 성격의 CMA잔고 증가 및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신종증권을 비롯한 유가증권 수익 증가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효과(공격적 금리인하 등)가 더해져 6월말 자산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4.9% 증가하였다.

〈표 II-40〉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8.6말	2008.9말	2008.12말	2009.3말	2009.6말	2009.9말	2009.12말	
일반은행(A)	1,083.6 (16.0)	1,167.4 (20.8)	1,178.1 (22.0)	1,211.5 (14.8)	1,181.7 (9.1)	1,177.1 (0.8)	1,126.2 (△4.4)	
생명보험사	309.3 (9.4)	313.9 (7.7)	320.4 (7.8)	328.3 (7.6)	338.8 (9.5)	352.8 (12.4)	361.4 (12.8)	
자산운용사	2.7 (22.7)	2.9 (25.8)	3.0 (19.1)	3.2 (21.6)	3.2 (17.3)	3.4 (17.1)	3.3 (11.5)	
선 물 사	2.0 (13.3)	2.3 (35.0)	2.8 (42.0)	2.7 (24.9)	2.5 (24.6)	2.8 (17.2)	2.5 (△11.4)	
증권사	국내 증권	143.1 (21.2)	141.1 (18.8)	131.8 (13.1)	140.1 (17.0)	165.4 (15.6)	178.8 (26.7)	154.2 (17.0)
	외국계증권	9.2 (△5.8)	9.8 (△7.1)	8.9 (△14.5)	8.7 (△21.6)	9.5 (3.3)	11.4 (15.8)	9.7 (9.2)
	합 계(B)	152.3 (19.1)	150.9 (16.7)	140.7 (10.8)	148.8 (13.7)	174.9 (14.9)	190.2 (26.0)	164.0 (16.5)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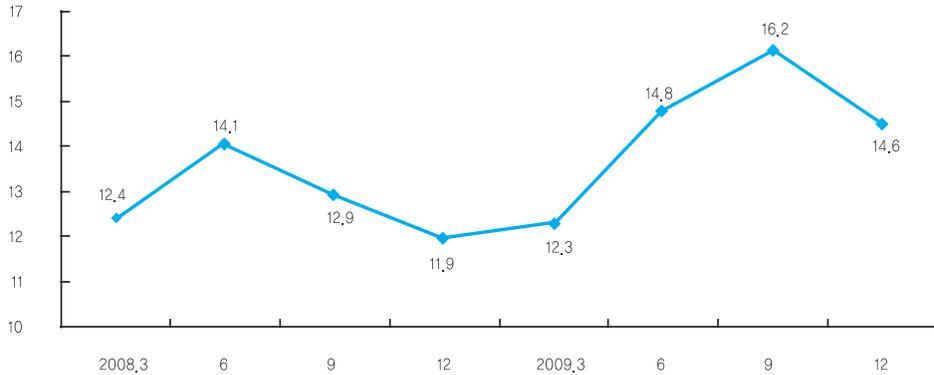
FY2009 2/4분기 중에도 풍부한 유동성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주식운용수익 및 고객예수금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익이 증가하면서 증권사의 자산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산운용사의 자산규모 역시 2009년에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판매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 등으로 펀드내 자산가치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선물회사의 자산규모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며 선물거래를 위한 고객예수금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은 축소되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일반은행 대비 증권사 자산규모의 비율(증권사 총자산/일반은행 총자산)은 2008년말(11.9%)에 비해 2.6%p 상승한 14.6%로 나타났다. 이는 증권사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은행의 자산규모는 소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09년 12월말 현재 증권산업의 총자산 기준 시장집중도(CR5)와 시장점유율 경쟁척도(Herfindahl Hirschman Index)는 각각 42.8 및 372로 일반은행의 80 및 1,412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II-36〉 일반은행 대비 증권사의 자산규모 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2) 수익성

2009년도 증권사의 수익성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FY2009 1~3분기 중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2.5조원, 2.1조원으로 전년동기(1.9조원, 1.4조원) 대비 각각 35%, 46% 증가하였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 및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시장 참여비중 확대 등에 따른 운용수익 및 이자수익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하지만 7월 이후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시행에도 불구하고 CMA잔액은 감소(7월말 대비 12월말 잔액 Δ 4.7%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지연되고 있어 증권사의 추가적인 수익규모 증가는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41〉 금융투자사의 손익계산서(요약)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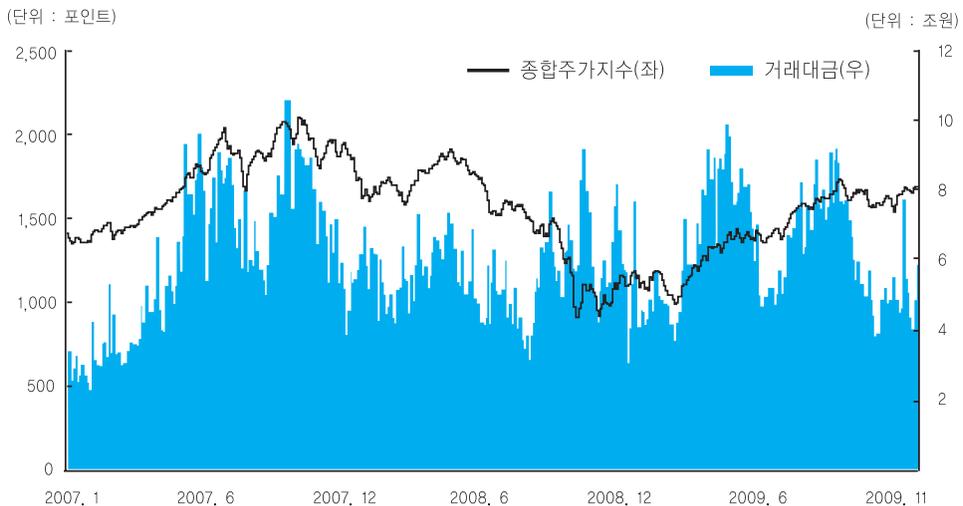
구 분		FY2007.1~3Q	FY2008.1~3Q	FY2009.1~3Q
증권사	영 업 이 익	42,588	18,638	25,203
	당기순이익	35,833	14,267	20,887
자 산 운용사	영 업 이 익	5,050	5,018	5,026
	당기순이익	3,983	3,468	3,831
선물사	영 업 이 익	1,363	2,019	787
	당기순이익	1,259	1,824	582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은 운용보수가 높은 주식형 펀드에서의 자금유출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선물회사의 경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며 선물거래를 위한 고객예수금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FY2009 1~3분기 중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1% 감소한 78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당기 순이익은 같은 기간 68% 감소한 582억원을 기록하였다.

2009년 중 국내 주식시장은 산업생산 호조 및 무역수지 흑자 지속, 주요 IB들의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 상향 조정, 글로벌 증시 호조 등으로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세가 지속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2009년말 주가지수는 1,682.8포인트로 전년말(1,124.5포인트)에 비하여 49.7% 상승하였으며,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5.8조원으로 전년(5.2조원)에 비해 11.4% 증가하였다. 수급측면에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국내 기업실적 호전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년도 순매도(-35.9조원)에서 순매수(32.3조원)로 전환하였다.

〈그림 II-37〉 주가지수와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자료 : FnGuide

증권사의 순영업수익⁵⁾ 대비 순수수수료수익⁶⁾ 비율은 FY2009 1~3분기 중 69.7%로 전년동기 대비 0.8%p 하락하였다. 이는 증권사의 순이자이익 증가분(전년동기 대비 27.1%)이 순수수수료수익 증가분(전년동기 대비 19.3%)을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FY2009 1~3분기 증권사의 순영업수익은 7.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하였다.

FY2009 1~3분기 중 선물사의 순영업수익 대비 순수수수료수익 비율은 75.9%로 전년동기 대비 16.8%p 상승하였으나, 이는 선물사의 파생상품 거래 이익 및 순이자이익 감소로 순영업수익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FY2009 1~3분기 자산운용사의 순영업수익은 1조 54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8% 감소하였다. 이는 펀드운용보수가 전년동기 대비 2.7%(9,795억원 → 9,534억원)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표 II-42〉

금융투자사의 수익구조

(단위 : 억원, %)

		FY07,1~3Q	FY08,1~3Q	FY09,1~3Q
증권사	순수수료수익	66,099 (73.7)	46,448 (70.8)	55,417 (69.7)
	순이자이익	11,981 (13.4)	17,192 (26.2)	21,858 (27.5)
	순영업수익	89,702 (100.0)	65,626 (100.0)	79,496 (100.0)
자산운용사	순수수료수익	-380 (-0.7)	-304 (-2.2)	9,838 (93.3)
	순이자이익	583 (3.4)	850 (4.4)	576 (5.5)
	순영업수익	17,224 (100.0)	19,459 (100.0)	10,540 (100.0)
선물사	순수수료수익	1,939 (61.1)	2,610 (59.1)	1,351 (75.9)
	순이자이익	828 (26.1)	1,035 (23.4)	347 (19.5)
	순영업수익	3,174 (100.0)	4,419 (100.0)	1,781 (100.0)

주 : () 안은 순영업수익 대비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FY2009 1~3분기 중 증권사의 수수료수익은 6.2조원으로 전년동기의 5.2조원에 비해 19.4% 증가하였다. 수수료수익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수탁수수료 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20.8% 증가하며 전체 증권사의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9.7%로 상승하였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승함

5) 순영업수익=영업수익-(영업비용-판매관리비)=영업수익-판매관리비를 제외한 영업비용

6) 순수수수료수익=수수료수익-수수료비용

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전체 증권사의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는 수익증권 판매 잔고의 감소로 전분기 대비 11.1% 줄어든 5,336억원을 기록하여 수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인수 및 주선 수수료와 자산관리부문 수수료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동 부문은 여전히 수수료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비중에 머물고 있다.

〈표 II-43〉 증권사의 수수료수익 구성 내역

(단위 : 억원, %)

	FY07.1~3Q		FY08.1~3Q		FY09.1~3Q	
수수료수익	73,922	(100.0)	51,798	(100.0)	61,821	(100.0)
수탁수수료	53,555	(72.4)	35,705	(68.9)	43,114	(69.7)
인수 및 주선수수료	2,429	(3.3)	2,271	(4.4)	3,921	(6.3)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8,659	(11.7)	6,004	(11.6)	5,336	(8.6)
자산관리수수료	546	(0.7)	390	(0.8)	553	(0.9)
기타수수료수익	8,733	(11.8)	7,429	(14.3)	8,896	(14.4)

주 : () 안은 수수료수익에 대한 구성비

자료 : 금융감독원

3) 건전성

2009년 12월말 증권사의 자본적정성은 전년동기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자본적정성 판단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100)이 2009년 12월말 현재 575.7%로 전년동기(584.2%)에 비해 8.5%p 하락하였다. 증권사 핵심 수익업무인 중개업무를 비롯하여 이자수익업무 및 신종증권 판매 등 주요 영업부문별로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액(26.4조원)은 전년말 대비 31.7%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용리스크가 확대됨으로 인해 총위험액(4.6조원)은 전년말 대비 33.6% 증가하며 영업용순자본 증가분을 상회함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잉여자본은 21.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1.3% 증가하였다.

2009년 12월말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504.4%로 전년동기 대비 60.4%p 하락하였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위험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13.3%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제한이 폐지된 가운데 유가증권 투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위험액이 증가하였다.

선물사의 경우 2009년 12월말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169.6%p나 크게 상승한 677.0%를 기록하였다. 이는 자기자본 증대로 영업용순자본이 18.4%나 증가한 반면 총위험액은 11.3%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한편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150%미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선물사는 없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4〉 금융투자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07.12월말	'08.12월말	'09.12월말
증권사	영업용순자본(A)	188,118	200,353	263,845
	총위험액(B)	31,394	34,293	45,832
	영업용순자본비율(A/B)	599.2	584.2	575.7
자 산 운용사	영업용순자본(A)	-	22,832	23,093
	총위험액(B)	-	4,042	4,578
	영업용순자본비율(A/B)	-	564.8	504.4
선물사	영업용순자본(A)	3,364	4,038	4,782
	총위험액(B)	782	796	706
	영업용순자본비율(A/B)	430.1	507.4	677.0

자료 : 금융감독원

5. 보험산업

1) 생명보험

가. 성장성

FY2009년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상상품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그동안 생보사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변액보험의 판매부진이 이어지며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이 금융위기의 여파로부터 점차 벗어남에 따라 변액보험의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노후대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힘입어 수입보험료의 성장을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FY2009년 3/4분기에는 다시 플러스 성장세(전년동기 대비

13.8% 증가)로 전환되었다. 생보사의 총자산도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 개선에 따른 유가증권가치 상승 및 특별계정자산 증가 등으로 FY2009년 3/4분기말 현재 전분기 대비 2.4% 증가한 361조 4,320억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생보사의 지급보험금은 일반계정의 효력상실해약 감소 등으로 상반기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12월말 현재 생보사별 시장점유율은 국내 대형 3사 54.9%, 중·소형사 23.5%, 외국계 생보사(합작사 포함) 21.6% 순으로 집계되었다.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0.7%p 상승한 반면, 대형 3사와 외국계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0.3%p, 0.4%p 하락하였다. 국내 생보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

〈표 II-45〉 생명보험사 주요 지표 추이¹⁾

(단위 : 십억원, %)

	FY2008 3/4	FY2008 4/4	FY2009 1/4	FY2009 2/4	FY2009 3/4
총 자산 ²⁾	320,408 (2.1)	328,332 (2.5)	338,839 (3.2)	352,793 (4.1)	361,432 (2.4)
신 계약액	98,790 (△0.7)	105,800 (△6.9)	94,497 (△1.4)	101,067 (9.8)	102,859 (4.1)
보유 계약액 ²⁾	1,688,114 (0.5)	1,689,467 (0.1)	1,695,423 (0.4)	1,711,668 (1.0)	1,727,135 (0.9)
수입 보험료	19,647 (△8.9)	17,632 (△4.5)	17,517 (△4.2)	17,937 (△0.3)	22,361 (13.8)
지급보험금	13,410 (2.1)	12,428 (3.4)	10,163 (△2.1)	10,749 (△5.1)	13,880 (3.5)
사업비 ³⁾	1,288 (△10.4)	1,199 (△4.9)	1,248 (△0.3)	1,221 (△9.3)	1,357 (5.3)
자산운용					
대출금	19.6	18.9	18.2	17.9	17.7
유가증권	48.0	48.6	49.7	49.9	50.1
현금·예금	3.8	3.6	2.9	2.6	2.8
부동산	3.3	3.5	3.4	3.2	3.2
기타 ⁵⁾	25.3	25.4	25.8	26.3	26.2

주 : 1) () 안은 전년 동분기, 총자산과 보유계약액의 () 안은 전분기

2) 잔액 기준

3) 월별수치는 분기별 누적 기준

4) 총자산에서의 구성비

5) 보험미수금, 임차보증금, 특별계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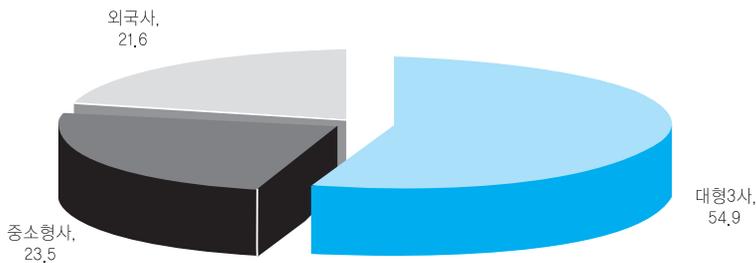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금융연구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대형사 위주의 과점체제가 이어졌으나, 최근 수년간 변액보험상품 도입, 방카슈랑스를 포함한 신판매채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중·소형 생보사와 외국계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보험사의 경영부실 여파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며 시장점유율 확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대형 3사의 경우 최근 들어 주력 판매 채널인 설계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II-38〉

생보사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



주 : 1) 2009년 12월말 기준

나. 수익성

국내 생보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부 생보사가 적잖은 투자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 등에 힘입어 2009년 12월말 현재 총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4.0% 증가한 16조 780억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은 2조 1,382억원으로 전년동기(7,610억원) 보다 1조 3,77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변액보험의 판매부진에도 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 부문 등에서의 영업실적 개선과 비용 절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0.9% 증가한 5조 6,650억원을 실현하였다. 투자영업이익도 국내외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감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제고되고 투자영업비용이 감소한 것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한 10조 4,140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II-46〉 생보사별 경영실적 현황¹⁾

(단위 : 십억원, %)

	보험영업수지	투자영업수지	총영업수지
대형3사	△79 (91.6)	7,373 (19.3)	7,294 (39.2)
중소형사	3,137 (40.3)	1,657 (19.8)	4,795 (32.5)
외국사	2,607 (2,932.0)	1,383 (33.5)	3,990 (322.5)
합계	5,665 (370.9)	10,414 (21.1)	16,078 (64.0)

주 : 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2009년 12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금융연구원

다.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

FY2009년 들어 생보사의 경영효율성을 살펴보면, 3/4분기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신계약률(0.1%p)과 총자산수익률(0.6%p)은 상승한 반면, 효력상실해약률(0.5%p), 보험금지급률(9.9%p), 사업비율(0.3%p)은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경영효율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자산수익률은 주식시장을

〈표 II-47〉 생명보험사 경영효율성 추이

(단위 : %)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2/4	3/4
신계약률 ¹⁾	5.9	11.5	17.5	23.9	5.6	11.7	17.6
효력상실·해약률 ²⁾	3.0	6.1	9.4	12.4	3.5	6.5	8.9
보험금지급률 ³⁾	59.8	64.6	69.4	69.4	58.5	59.0	59.5
사업비율 ⁴⁾	6.8	7.2	6.9	6.9	7.1	7.0	6.6
총자산수익률 ⁵⁾	5.5	5.1	4.8	4.7	5.3	5.4	5.4

주 : 1) 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연간 누적 기준

2) (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연간 누적 기준

3)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분기별 누적 기준

4) 사업비/수입보험료, 분기별 누적 기준

5) 총자산수익률 산출 시 총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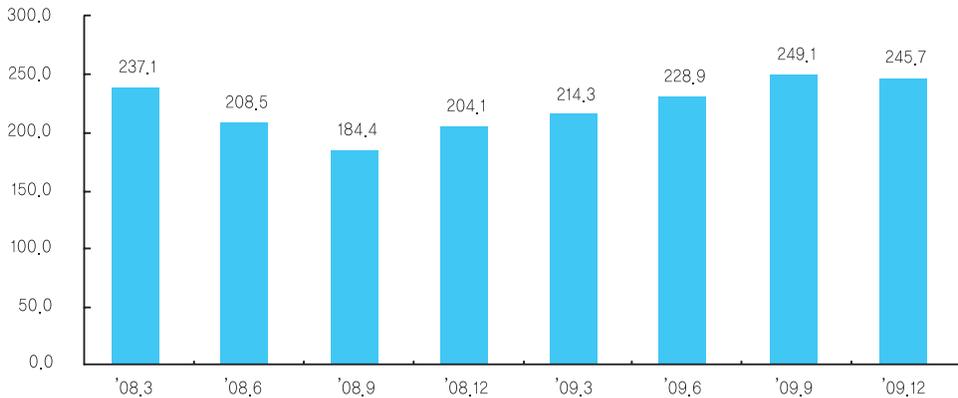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금융연구원

비롯한 국내의 자산운용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보험금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은 신계약 증가로 인한 수입보험료의 증가폭(13.8%)이 지급보험금의 증가폭(3.5%)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하락하였으며, 효력상실해약률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부터 점차 벗어남에 따라 생계형 보험해약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율도 전년동기에 비해 0.3%p 하락하며 6.6%를 기록하였다.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FY2009년 들어 2.1조원 규모의 당기순이익 시현과 장기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이익 확대 등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하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2월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며 2009년 12월말 현재 245.7%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2009년 4월부터 기존 EU식 지급여력제도와 병행 시행되고 2011년 4월 이후 의무화)의 시행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 재무건전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I-39〉 생명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2) 손해보험

가. 성장성

FY2009년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세 지속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 축소에 따른 절판마케팅 효과, GA(독립보험대리점) 및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계약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매분기 두자릿수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FY2008년 보험요율 인하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매출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48〉 손해보험사 주요 지표 추이¹⁾

(단위 : 십억원, %)

		FY2008 3/4	FY2008 4/4	FY2009 1/4	FY2009 2/4	FY2009 3/4
총 자산		71,522 (3.9)	74,027 (3.5)	76,619 (3.5)	79,501 (3.8)	82,975 (4.4)
원수보험료		9,468 (12.4)	9,263 (9.7)	9,875 (12.8)	10,405 (15.6)	10,827 (14.4)
지급보험금		4,694 (29.2)	4,464 (21.6)	4,472 (26.0)	4,753 (22.8)	5,020 (6.9)
순 사업비		2,299 (23.7)	2,583 (26.5)	2,333 (16.7)	2,513 (20.3)	2,320 (0.9)
자산운용 ²⁾	유가증권	49.2	50.2	50.9	50.5	50.2
	대출금	18.4	17.8	17.3	17.7	18.0
	현금·예금	6.7	5.7	5.2	4.9	5.4
	부동산	5.7	6.4	6.4	6.2	6.1
	기타 ³⁾	19.9	20.0	20.2	20.7	20.4

주 : 1) () 안은 전년 동분기, 총자산의 () 안은 전분기

2) 총자산에서의 구성비

3) 보험미수금, 임차보증금 등

자료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금융연구원

FY2009년 손보사의 총자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른 자산운용 여건 개선과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 확대 등에 힘입어 2009년 12월말 현재 전분기 대비 4.4% 증가한 82조 9,750억원을 기록하였다. 지급보험금은 자동차보험의 원가 상승요인 등에 의해 상반기까지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지만 F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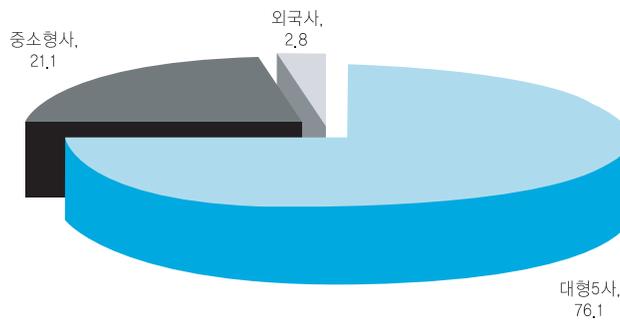
2009년 3/4분기 중에는 6.9%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순사업비의 경우 상반기에는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 급증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3/4분기 중에는 추가상각 환입 등의 요인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손보사별 시장점유율은 대형 5사 76.1%, 중소형사 21.1%, 외국계 손보사 2.8%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중소형사의 경우 0.8%p 상승한 반면, 대형사와 외국계 손보사는 각각 0.6%p,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들어 중소형 손보사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온라인 전업사의 매출 증가, 판매채널의 다변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절판마케팅 효과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외국계 손보사는 환율상승과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주력상품 중의 하나인 해외여행자보험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0〉

손보사별 시장점유율 현황¹⁾

(단위 : %)



주 : 1) 2009년 12월말 기준

나. 수익성

2009년도 손보사의 수익성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둔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손보사의 총영업이익(보증보험사와 재보험사 제외)은 2009년 12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7.6% 감소한 1조 2,905억원으로 집계되었고, 당기순이익도 9,01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감소(9,652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손보사 보험영업수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장기손해보험의 호조세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 급증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

로 인해 보험영업수지는 2009년 12월말 현재 7,964억원 손실을 기록하였다. 특히 하반기에는 실손형의료보험의 보상한도 축소도 보험영업수지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주식시장 및 시장금리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부실 자산 추가상각 규모가 감소한 것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9.9% 증가한 2조 869억원의 이익을 기록하였다.

〈표 II-49〉 손보사별 주요 경영실적¹⁾

(단위 : 백만원, %)

	보험영업수지	투자영업수지	총영업수지
대 형 5 사	△450,933 (△173.8)	1,764,633 (17.2)	1,313,698 (△2.0)
중 소 형 사	△277,728 (△105.6)	294,800 (40.5)	17,072 (△77.1)
외 국 사	△67,721 (△50.4)	27,455 (8.6)	△40,265 (△103.9)
합 계	△796,382 (△131.0)	2,086,888 (19.9)	1,290,505 (△7.6)

주 : 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보증보험사 제외

3) 2009년 12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금융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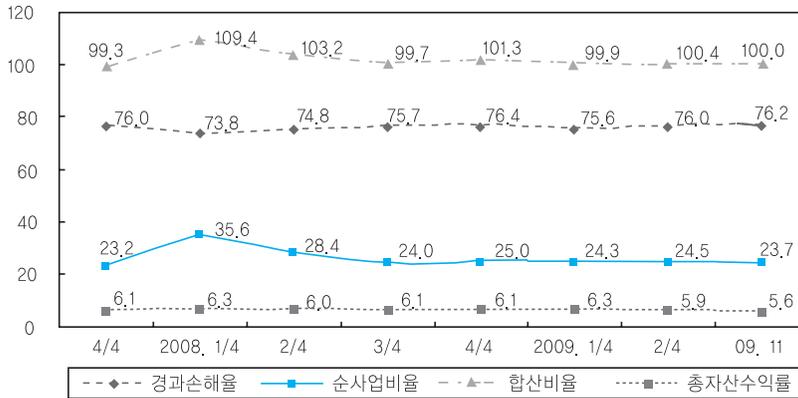
다.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

2009년 12월말 현재 손보사의 경영효율성을 살펴보면, 경과손해율 76.7%, 순사업비율 23.6%, 총자산수익률 5.5%로 집계되었다. 경과손해율의 경우 FY2009년 연초에는 해상보험 및 보증보험에서의 손해율이 급상승한 요인으로, 그리고 FY2009년 1/4분기 이후에는 자동차보험 부문에서의 손해율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손보사의 총자산수익률은 유가증권 평가이익 및 처분이익이 증가하는 데 힘입어 FY2009년 1/4분기에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2/4분기와 3/4분기에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41〉

손해보험사 경영효율성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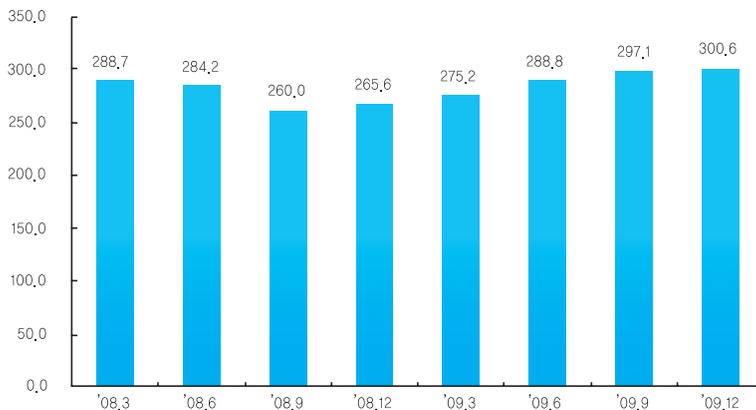


손보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은 2009년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09년 12월말 현재 300.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약 1조원 규모의 당기 순이익 시현과 장기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이익 증가 등에 주로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손보사의 경우에도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RBC 제도의 시행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자본확충 등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II-42〉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제III부

금융제도 및 정책의 변화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과 및 교훈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및 경과

2007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2000년대 들어 지속된 과잉유동성과 글로벌 불균형으로 거시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는 가운데 금융규제 및 감독의 미비라는 미시적 요인이 더해진 데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저가 공산품 공급 등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체제가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IT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자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여타 주요 국가들도 이와 같은 저금리정책에 동조함으로써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반면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서는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되었다. 무역수지 흑자국의 자금은 미국 국제무역 등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이들 국가에서 저금리기조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실물부문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잉유동성과 저금리기조를 유지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차입을 통한 자산매입 동기를 유발시켰으며 중국에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과다상승과 과잉투자 등 자산버블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버블은 경기둔화 등으로 자산가격이 점차 하락하면서 자산매각이 시작되자 급격하게 붕괴되었다. 자산버블의 붕괴로 경제주체들이 자산보유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되었다. 이와 같은 거시적 취약성에 추가하여 파생금융상품의 구조적 문제, 대출의 경기순응성, 금융회사의 높은 레버리지,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 리스크관리 및 규제·감독의 소홀 등 미시적 문제점이 더해지면서 금융위기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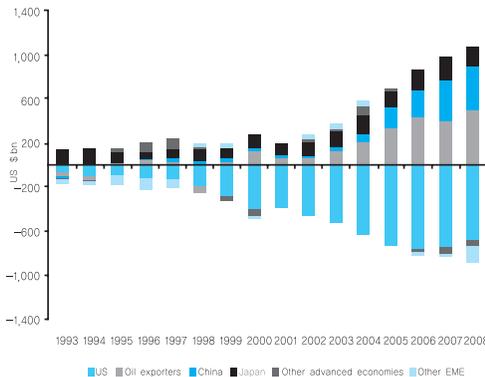
1) 글로벌 불균형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거시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인플레이션 및 저금리 기조로 주요 선진국에서 과잉유동성이 발생한 데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산유국, 일본, 중국 및 아시아신흥국들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낸 반면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더욱이 흑자국가들의 대부분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외환보유액을 크게 증가시켰고 외환보유액 대부분이 선진국 국공채 등에 투자됨에 따라 선진국의 장기금리는 실물활동 수준에 비해 낮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림 III-1〉 글로벌 불균형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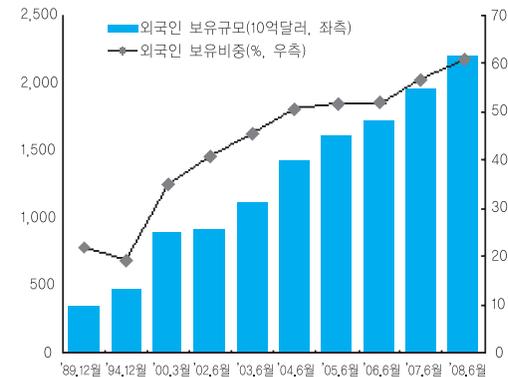


자료 : Turner Review

〈그림 III-2〉 외국인의 미국채 보유비중

(단위 : 십억 달러)

(단위 : %)



자료 : 미국 재무부

이와 같은 선진국의 저금리 정책은 가계 등 경제주체에 대한 신용팽창을 유발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저금리에 따른 가계에 대한 신용팽창으로 미국의 경우 개인저축률이 1990년 7%에서 2005년과 2006년 0% 이하로 하락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저금리에 대응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 등 고수익 신종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2) 신종 금융상품의 급성장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수익의 환경에서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이는 금융상품, 특히 고수익 유동화신용파생상품의 급성장을 유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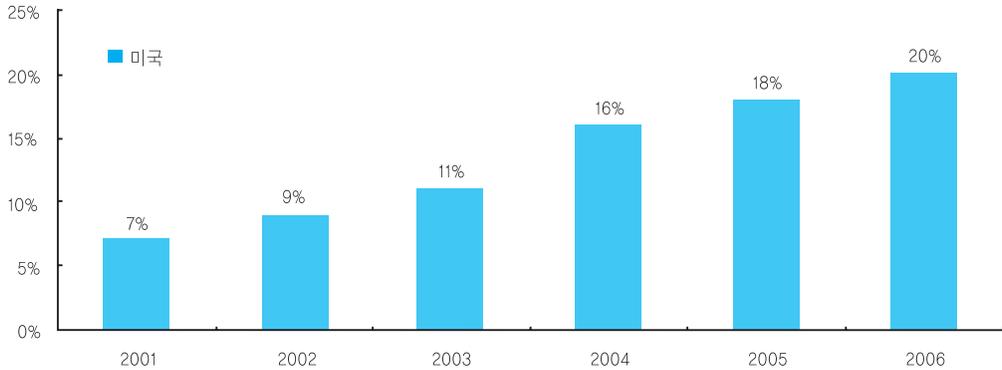
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02년말 1.2조 달러였던 미국 ABS 발행잔액은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7년말에는 3.0조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 상품 투자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의 헤지를 위하여 CDS 거래가 크게 증가하여 2001년말 0.9조 달러였던 글로벌 CDS 계약 잔액은 2007년말에는 62.2조 달러에 이르렀다.

모기지와 관련된 유동화신용파생상품은 이전에도 판매되던 상품이긴 하지만 대부분 패니매(Fannie Mae) 등 국책모기지 기관들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민간 모기지전문업체들의 채권을 기초로 한 MBS 발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상품에 비해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 모기지취급 금융기관들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높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출 확대에 치중하며 부실가능성이 큰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크게 증가시켰다. 특히 2004~05년 금리상승기에 가산금리의 축소로 수익성이 하락한 모기지업체들은 “Piggyback” 대출, “No-doc” 대출, “Interest-only” 대출⁷⁾ 등 대출기준이 완화된 새로운 형태의 판매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대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약 80%가 변동금리 모기지(ARM: Adjustable-Rate Mortgages)이며 이 중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기지⁸⁾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급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혁신화된 파생금융상품과 결합되면서 고수익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7) “Piggyback” 대출은 다운 페이먼트가 없는 대출을, “No-doc” 대출은 증빙자료 없이 대출자가 자신의 소득을 밝히는 대로 인정하여 제공되는 대출을, “Interest-only” 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다가 나중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의미하며, 이런 비전통적인 형태의 모기지 상품이 2006년 당시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중 47%까지 확대됨.

8) 하이브리드 변동금리 모기지란 처음 몇 년 동안은 낮은 고정금리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높은 금리의 변동금리로 조정되는 옵션이 있는 대출상품을 의미함. 특히 낮은 고정금리로 유지되는 기간이 2년인 하이브리드 변동금리 모기지를 “2/28 loans”이라고 하는데, 30년 만기 모기지로써 2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나머지 28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됨. 사실 “2/28 loans”는 원래 신용상태가 매우 낮아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 2년 동안 신용을 쌓고 2년 후 보다 나은 조건의 대출로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품인데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게 되었음. 서브프라임 모기지 중 약 83%는 조기상환수수료(prepayment penalty)가 있는데, “2/28 loans”의 경우 평균 적용기간은 2년이며 전체 대출잔액에 대해 평균 3% 정도로 약정되어 있어 지급충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게 설정됨.

〈그림 III-3〉 모기지 증권화 중 서브프라임 비중



자료 : Loan Performance, Credit Suisse US Mortgage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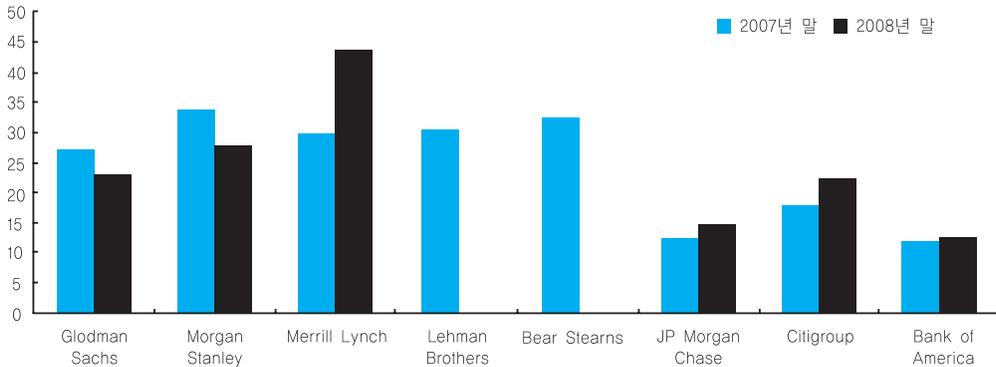
이처럼 부실가능성이 높은 모기지의 유동화가 빠르게 진전된 데에는 대출채권을 가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문취급기관과 유동화를 진행시키는 대형금융기관 모두 이를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문업체들은 대부분의 자금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추가대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채권 유동화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대출채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실리스크도 함께 넘길 수 있다는 이점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은 대형 투자은행들에 의해 유동화신용파생상품으로 만들어져 매입 또는 판매되었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단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다.

3) 금융기관들의 높은 레버리지

대형금융기관들은 자산버블이 형성되어 높아진 담보가치를 바탕으로 레버리지 상승이 가능해진 데 힘입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유지하면서 고수익 MBS 및 CDO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특히 감독 및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상업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30배에 달했다. 투자은행의 높은 레버리지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투자은행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부실가능성을 빠르게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III-4〉 미국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 레버리지 비율

(단위 : 배)



자료 : Bloomberg

4) 시가평가방식 및 자본적정성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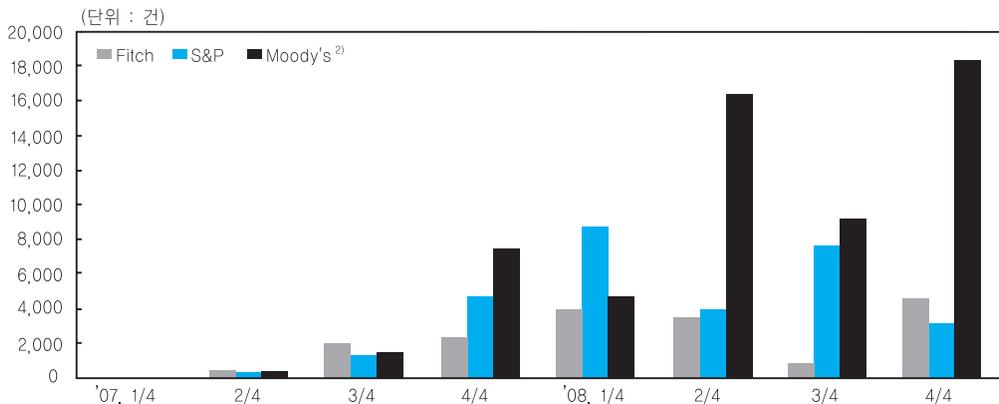
금융기관들이 높은 레버리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가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회계처리방법인 시가평가방식(mark-to-market valuation)에 의한 적정가치 접근법(“fair value” approach)에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가평가방식은 버블 형성 시에는 기초가격(fundamental value)보다 시가가 높게 형성되어 버블을 증폭시키도록 유인하는 반면, 버블 붕괴 시에는 시장의 낮은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시가가 기초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도록 유인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Basel II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자본적정성비율규제가 경기순응적이어서 경기가 좋을 때에는 신용붐(credit boom)을, 경기가 나쁠 때에는 신용붕괴(credit burst)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기업실사 의무 소홀

한편 신용평가사가 구조화 파생상품에 대해 최상위 등급을 부여해 오는 등 파생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것도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CDO와 같은 구조화 파생상품에 미국 국채와 같은 등급인 “AAA” 등급을 부여하여 신용위험의 평가치를 낮추어 주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2007년초에 이미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권의 신용등급을 2007년 4/4분기에 이르러서야 하향 조정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초기에 진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반면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신용등급을 급격히 하락시켰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은 금융위기를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림 III-5〉 미국의 CDO·서브프라임 RMBS 신용등급 순하향조정¹⁾



주 : 1) 하향조정 건수 - 상향조정 건수, 2) Moody's는 프라임 RMBS 포함

자료 : European Securitisation Forum(한국은행 재인용)

6)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

금융기관의 경영전략이 리스크 관리보다는 단기간의 수익창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도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그동안 스톡옵션 등 경영자나 투자담당자 등 대리인들의 성과급이 대부분 단기이익과 연동되어 있는 한편 성공보수대비 실패에 따른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리스크 관리보다는 부외수단 및 규제 사각지대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고수익을 올리는 데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상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단기차입 중심의 지나친 레버리지를 행하고 증권화 거래건수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단기성과 중심의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을 운용하였다. 그 결과 금융시장에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파생상품이 정확한 계약 내용 및 관련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3

자에게 양도됨에 따라 AAA등급의 기초자산보다 더 많은 AAA등급의 부채가 등장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금융회사의 경영자나 투자담당자는 새롭고 복잡해진 금융상품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그들이 보유 중인 리스크가 과소평가되어 회사가 심한 리스크에 노출된 것도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의 방만한 리스크 관리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충격에 대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여 시장에서 매력적인 상품이 되게 하였다. 또한 그들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완화되거나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여 부적절한 평가 결과를 양산하였다.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실패는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부족하게 하여 리스크에 대한 규모와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게 만들며 금융위기를 가속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그림자 बैं킹시스템 발전과 금융감독 소홀

미연준 등 금융감독당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방만한 대출관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하여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통화감독국(OCC) 및 저축기관감독청(OTS) 등은 이미 1999년 기관합동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2001년에 이를 강화하였다. 동 지침서는 이미 유동화과정에서의 위험전가문제 및 투자자의 위험선호도 변화시 손실확대 우려 등을 명시하였고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업체들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들간 규제와 감독에 차별이 존재하는 가운데 규제 및 감독의 사각지대인 그림자 बैं킹(shadow banking) 시스템이 급부상한 점도 금융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은행보다 브로커 딜러, 헤지 펀드, 머니마켓펀드, SIVs 및 Conduits 등과 같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규제나 감독이 매우 소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은행금융기관들도 단기물 및 고유동성 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장기물 및 저유동성 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예금 없이도뱅크런과 비슷한 현상을 당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림자 बैं킹 시스템의 부상과 이에 대한 규제감독의 소홀은 금융시장의 불투명성 증가로 이어졌다. 복잡하고 다양한 신금융상품들의 대두와 함께 이들 상품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어 부외계정으로 처리됨에 따라 상품정보나 기관들의 보유 규모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지 못하였다. 특히 국제시장에서 금융회사간의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각국의 정책 입안자 및 감독기구들은 자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편향된 감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함께 IMF, FSF 및 G8 등 국제기관들의 능력과 조언이 회원국들의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모든 차원의 감시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적 불균형이 커지고 리스크가 넓게 확산되는 동안에도 각국의 금융감독 당국들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서로간의 협의나 조기경고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2.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책 및 시사점

과거 사례를 볼 때 금융위기는 대체로 4단계의 해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주요국들은 대부분 4단계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실시한 상태이다. 특히 Lehman Brothers 파산 이후 각국은 정부보증 확대, 부실채권 매입, 자본 확충 및 부분국유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간의 공조체계가 강화된 것이다.

〈그림 III-6〉 정책대응 진행과정



1) 정책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2008년 9월 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였다. 2009년말 현재 미국 0~0.25%, 일본 0.1%, 영국 0.5%, 유로지역 1% 등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필요한 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개시장 조작 대상기관이나 대상증권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앙은행들은 우선적으로 전통적인 대출 및 재할인 창구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주력하였다. 일례로 미 연준은 기간물 대출제도 TAF(Term Auction Facility), 프라이머리딜러신용제도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기간물증권대여제도 TSLF(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등을 도입하였다. 영란은행은 기간물입찰(Term Auction) 방식 및 미국 TSLF와 유사한 특별유동성시책 SLS(Special Liquidity Scheme)를 도입하였다. 또한 영란은행은 금융회사들이 공공 및 민간부문 발행 적격 증권을 담보로 상시 차입이 가능하도록 상설재할인제도 DWF(Discount Window Facility)를 도입하였다. ECB는 2009년말까지 시한부로 할인창구의 대출담보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MMF 환매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연준은 AMLF(ABCP 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를 도입하였다.

이 외에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대상증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지원 기능을 강화

〈표 III-1〉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조치

	대출제도		공개시장조작		지준부리제도 신 설	구제금융 · 대민간 직접신용
	담 보 확 대	신규제도 도 입	대상증권 확 대	대상기관 확 대		
미 국	○	○		○	○	○
영 국	○	○				○
E C B	○	○	○			
일 본		○		○		○
캐 나 다		○				
스 웨 덴		○				○

하였다. 특히 미연준은 GSE(Fannie Mae, Freddie Mac, FHLB) 발행 채권 및 GSE 보증 채권의 공개시장 매입, 장기국채 매입 등을 시행하였으며 CPFF(CP Funding Facility)와 MMIFF(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Facility)를 도입하여 ABCP 시장 등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공적자금 투입

또한 각국은 금융위기 확산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의 금융산업과 제조업 등을 구제하기 위한 공적자금을 조성·집행하였다. 공적자금 투입은 주로 부실 금융회사의 자본확충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Bear Stearns 부실처리, AIG 구제금융과 양대 GSE 자본확충을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포괄적인 공적자금 투입 프로그램인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를 시행하였다. 먼저 미국 재무부는 주택구제 및 차압방지법(American Housing Rescue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 등에 근거하여 양대 GSE(Fannie Mae, Freddie Mac)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또한 미 연준은 특수목적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대출과 직접 대출을 통하여 Bear Stearns와 AIG 부실처리를 위한 신용을 제공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0억 달러 규모인 Bear Stearns의 부실자산을 매입할 유한책임회사 Maiden Lane을 설립하고 이 회사에 290억 달러를 대출해 줌으로써 JP Morgan Chase의 Bear Stearns 인수를 지원하였다. AIG와 관련하여서는 직접 대출을 위한 신용공여제도(AIG Credit Facility)를 도입하고, AIG의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2개의 유한책임회사(Maiden Lane II, III)를 설립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부실 은행을 적극적으로 국유화하는 한편 부실우려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진행되었다. 영국의 경우 Northern Rock과 B&B의 국유화에 1,080억 파운드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였으며, 2009년 1월까지 2차에 걸친 구제금융안을 발표하였다. 독일 재무부는 은행간 대출보증 기금 조성과 은행 지분 및 자산 매입 계획을 포함하는 금융시장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금융시장안정기금(SoFFin)을 통해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였다. 프랑스는 은행간 대출보증기금 조성과 함께 정부참여펀드(SPPE) 운영을 통하여 6대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였다.

3) 경기부양대책

한편 각국 정부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물경기에 대응하여 가계소득 지원, 공공투자 확대,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지원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재정지출 확대 6,320억 달러, 세금감면 2,525억 달러 등 총 8,845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확정하였으며, EU는 향후 2년간 2,0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회원국 경기부양책 1,700억 유로, EU기금 및 EIB 300억 유로)을

〈표 III-2〉 위기 이후 재량적 재정정책 규모(GDP대비 비중)¹⁾

국 가	2008년	2009년	2010년
아르헨티나	0.0	1.5	-
오스트레일리아	0.7	2.1	1.7
브라질	0.0	0.6	0.8
캐나다	0.0	1.9	1.7
중국	0.4	3.1	2.7
프랑스	0.0	0.7	0.8
독일	0.0	1.6	2.0
인도 ²⁾	0.6	0.6	0.6
인도네시아	0.0	1.3	0.6
이탈리아	0.0	0.2	0.1
일본	0.3	2.4	1.8
한국	1.1	3.9	1.2
멕시코	0.0	1.5	-
러시아	0.0	4.1	1.3
사우디아라비아	2.4	3.3	3.5
남아프리카공화국 ²⁾	1.7	1.8	-0.6
터키 ³⁾	0.0	0.8	0.3
영국	0.2	1.4	-0.1
미국	1.1	2.0	1.8
G-20 PPP-GDP 통계	0.5	2.0	1.5

주 : 1) 금융부문 지원 등은 제외

2) 인도, 남아프리카는 재정회기 기준

3) '08.9월부터 '09.3월까지 정책만 포함

자료 : IMF

승인하였다. 수출 급감 및 내수 부진으로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한 아시아 신흥 시장국들도 정책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가운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다.

4) 주요국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

2009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의 정책대응들을 평가하는 것이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상당히 유효하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MF는 금융안정보고서(2009.9월)에서 이벤트 분석을 통하여 각종 정책대응의 단기성과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먼저 주요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발표는 금융위기 초기인 리먼파산 이전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리먼파산 이후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유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회사 자본확충은 은행부채 지급보증, 은행 부실자산 매입보다 전반적으로 신용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위기의 전개과정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정책적 대응들의 유효성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동 보고서는 정책대응의 장기적인 효과도 분석하였다. 정책당국의 은행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은 은행채 발행 확대를 유도하였으며, 미국의 TALF나 EU의 커버드본드 매입계획(coveredbond purchase plan) 발표 등은 유동화시장 등이 다시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전반적으로 LIBOR-OIS 스프레드 하락 등 단기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모기지 금리를 하락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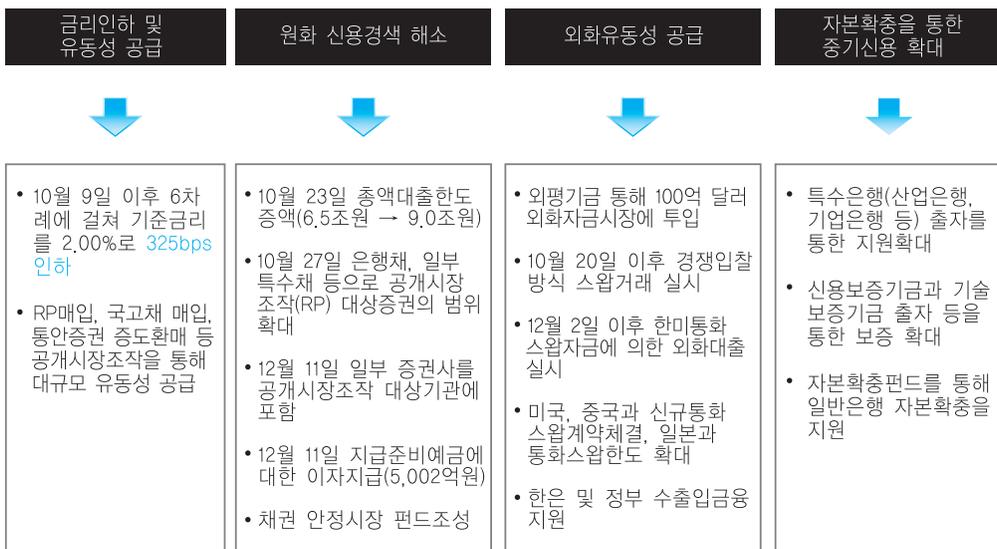
그러나 정책대응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는 향후 추가적인 정책대응 또는 출구전략 전개방식, 금융위기의 완전한 극복 여부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많은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상당한 부실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금융위기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또한 중앙은행들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정책대응의 부산물로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보유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국의 실물경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과 함께 크게 증가한 재정적자가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금융위기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2008년 9월 리먼사태 발생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빠르게 위기상황으로 내달았었는데 자금시장에서는 극심한 외화유동성 부족과 신용경색 현상을 경험하였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되어 국내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한편 변동성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는 안전자산 선호현상 증대, 차익실현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과 같은 대외적 여건 변화뿐 아니라 국가신용위험 증대, 예대율 급증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가능성 등 대내적 여건의 악화에 기인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유출 및 경상수지 적자로 외화유동성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CDS프리미엄이 급등하였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채권형 펀드잔액의 감소와 함께 2005년 이후 급증한 은행채의 만기 도래가 2008년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은행채의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고 일부 증권사에 대해 콜자금 공급이 줄어들면서 부분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Ⅲ-7>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이와 같은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시중유동성 공급, 보증 지원 및 기금 구성 등을 통한 자금경색 해소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신용 경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을 빠르게 완화 기조로 전환하였다. 2008년 10월 이후 2009년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2.0%로 인하하였으며, 총액한도대출금리도 연 3.5%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은행채, 일부 특수채(토지공사, 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발행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및 사채 등을 RP대상 증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RP대상기관에 12개 증권사를 추가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2년 이후 축소해 왔던 총액대출한도를 2008년 11월부터 6.5조원에서 9.0조원으로 2.5조원 증액한 데 이어 2009년 3월에는 이를 10조원으로 확대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미·중·일 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외화유동성을 직접 공급하였으며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실물경기의 침체에 대응하여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는데, 그 규모는 2008년 중 약 51.3조원(GDP 대비 약 5.01%, 세수감면 32.6조원 포함), 2009년 중 17.7조원(GDP 대비 약 1.66%)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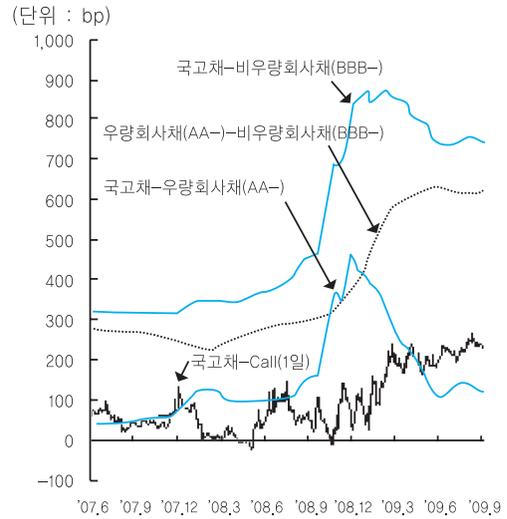
금융위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의 취약성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융기관이나 수출입기업 등 외화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외환수급을 조절해 나가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기 외화자금을 공개입찰형식에 의해 시장금리 기준으로 공급하는 등 가급적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펴나가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시의적절하게 국내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및 리먼파산 이후의 유동성 공급 등이 이루어진 것은 금융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시중금리와 함께 은행채 및 회사채 스프레드 등이 크게 하락하며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I-8〉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 FnGuide, 한국채권평가 『Bond Pricing online』

〈그림 III-9〉 국고채 및 회사채(AA-, BBB-) 수익률 간 스프레드 추이



제2장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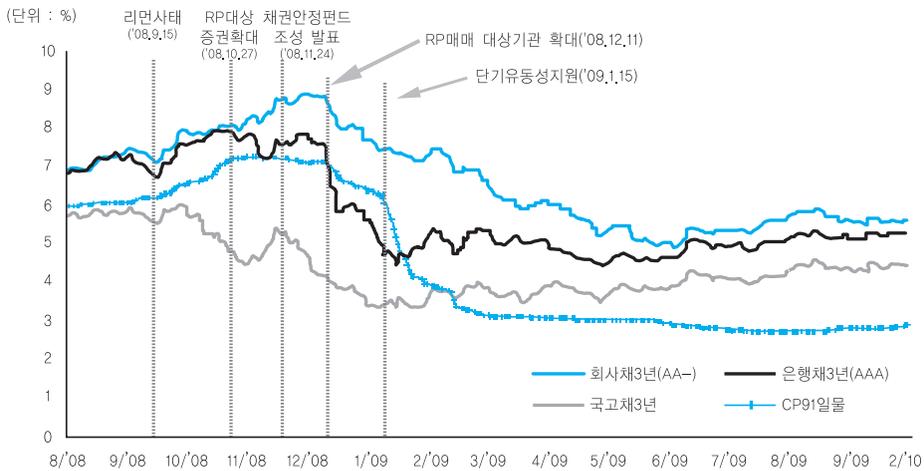
1. 금융시장 안정펀드 조성

1) 배경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로까지 확산되면서 회사채 등 신용채권의 발행이 어려워지고 은행의 대출태도도 강화되는 등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게 되었다.

채권 및 기업어음 등 직접금융시장의 경우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8년 8월말 162bp 수준이던 국고채와 회사채(AA-, 3년물) 간의 금리스프레드가 11월말에는 414bp로 확대되고 소수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채 및 CP의 발행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림 III-10〉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 FnGuide, 한국채권평가주식회사

한편 리먼 사태 직후인 2008년 9월말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07년 말의 12.31%에서 10.86%로 큰 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상반기중의 기업대출 확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표시 자산의 원화환산액 증가 및 추가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에 기인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2008년 4/4분기중 은행들은

후순위채 발행과 증자 등을 통해 약 16조원을 조달하였고, 정부는 출자를 통해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한편 신종자본증권의 BIS 기본자본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5천억원 규모의 이자지급을 통해 자본확충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은행의 2008년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전년말 수준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실물경기 침체와 기업구조조정으로 부실여신이 늘어나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부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의 수요를 확충하고, 은행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대출여력을 높임으로써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으로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였다.

〈표 Ⅲ-3〉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BIS비율(기말 기준)	12.31	11.20	11.36	10.86	12.31	12.94	13.74	14.21

자료 : 금융감독원

2) 주요 내용

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정부는 2008년 11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해소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채안펀드는 17개 국내은행이 8조원, 보험사가 1.5조원, 증권사가 0.5조원을 출자하고 한국은행이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RP매입 등을 통해 출자금의 50%이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⁹⁾ 채

9)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RP대상증권을 은행채, 특수채 등 크레디트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시키고(2008.10.27) RP매매 대상기관에 증권사를 포함하는(2008.12.11) 한편 장기RP(91일물) 매입(2009.1.15)을 통해 증권사의 CP, 여전채 등 크레디트물 투자를 위한 1.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직접금융시장의 신용물거래 정상화를 지원하였다.

안펀드의 투자대상은 은행채, 회사채, 여전채 및 PF-ABCP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을 통해 P-CBO 형태로 편입된 투자기준이하 등급자산(은행채 제외)이다.¹⁰⁾

〈표 III-4〉 채안펀드의 대상채권별 투자가능 신용등급

대상채권	투자등급	신용보강등급
회 사 채	AA- 이상	A+ ~ BBB-
PF-ABCP	A2 이상	A2+ ~ A3-
여 전 채	AA- 이상	A+ ~ A-
은 행 채	AA- 이상	

자료 : 신용보증기금

채안펀드는 투자자금의 일부를 우선 조성하여 투자금액을 집행한 후 추가수요 발생시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캐피탈 콜(Capital Call)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계획한 10조원의 절반 규모인 5조원을 2008년 12월 17일 1차로 모집하여 정식운용을 개시하였다. 이에 앞서 12월 15일 한국은행은 RP매입(91일물)을 통해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1.9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한국은행의 RP매입을 통한 자금지원은 2010년 2월말 현재 1.8조원 규모로 연장되고 있다.

기 조성된 5조원 규모의 동 펀드가 출자 금융기관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3년 폐쇄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만기일인 2012년 12월 15일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09년중 회사채 금리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축소되는 등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채안펀드의 추가 조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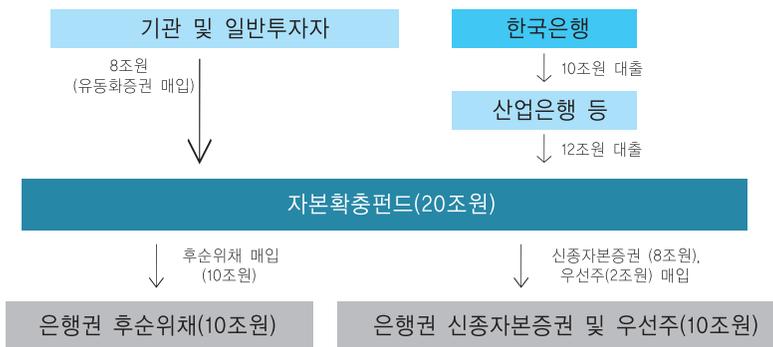
채안펀드는 1999년 9월~2000년 3월중 운영된 채권시장안정기금(이하 채안기금)과 마찬가지로 채권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채안기금은 1999년 9월 대우채 사태로 투신사의 수익증권 환매가 급증함에 따라 투신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주로 국공채를 매입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이번에 조성된 채안펀드는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어 있는 회사채, CP 등 크레디트물의 수요를 확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공채가 아닌 회사채, 은행채 등 크레디트물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10) P-CBO의 편입대상이 되는 회사채의 최저 신용등급은 1차분 P-CBO의 경우 BBB+였으나 2차분부터는 중소기업 회사채의 원활한 편입을 위해 BBB-까지로 확대하였다.

나. 은행자본확충펀드

정부는 2008년 12월 20일 향후 경기침체 및 부실여신 증가로 인한 은행의 자본 적정성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20조원 수준의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성을 결정하였다. 자본적정성 악화는 은행의 소극적인 대출태도를 유발하여 간접금융시장의 자금지원을 통한 실물경기 회복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2009년 2월 15일 제시된 펀드에 대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 대출금(10조원), 산업은행 대출금(2조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의 투자자금(8조원)으로 구성하되,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이 중 후순위채를 중심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8조원 수준)하여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림 Ⅲ-11〉 은행자본확충펀드 조달 및 운영 계획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실제 지원실적은 2009년 3월말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3조 9,56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매입에 그쳤다. 소요 자금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대출한 약 3.3조원(전체금액의 10/12에 해당)¹¹⁾과 산업은행의 자체자금 약 0.7조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기관 및 일반투자자의 펀드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원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은 금융시장상황이 크게 개선된 데다 은행들이 양해각서체결(MOU) 및 금융당국의 감독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자본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려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1) 한편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하는 과정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지급보증료로 1,378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다.

〈표 III-5〉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기관별 운용 내역

(단위 : 억원)

	우리지주	우리	경 남	광 주	국 민	하 나	농 협	수 협	합 계
신종자본증권	-	10,000	1,160	870	10,000	4,000	7,500	1,000	34,530
후 순위 채 권	3,000	-	1,160	870	-	-	-	-	5,030
합 계	3,000	10,000	2,320	1,740	10,000	4,000	7,500	1,000	39,560

자료 : 금융위원회

3) 시사점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은행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로 본격적으로 파급된 리먼 사태 직후 나타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직접적으로는 두 펀드의 운용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크레디트물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고 은행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는 것을 완화함으로써 직·간접금융시장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충분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2. 외화유동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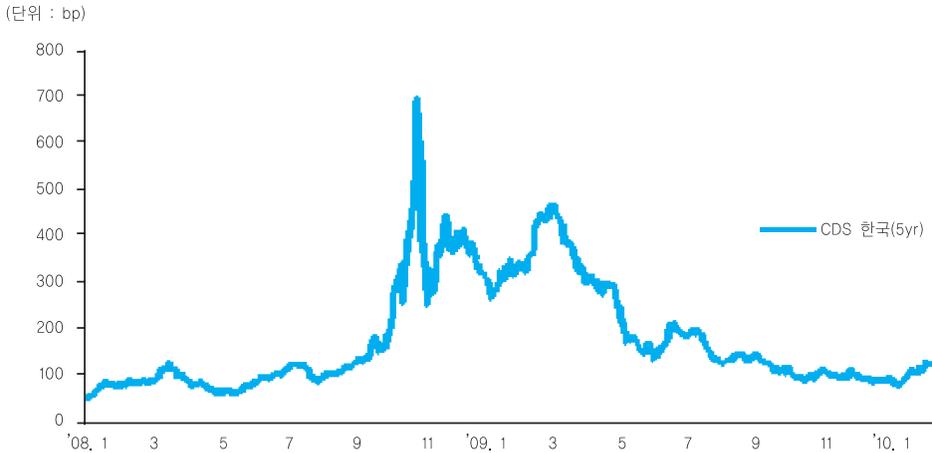
1) 배경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극심한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자금회수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화유동성 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었다.

2008년 4/4분기중 우리나라 국내은행(SC제일·한국씨티 제외)의 기간물(만기 2일~1년 이내 차입금) 차환율이 3/4분기의 99.8%에서 50.1%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외화표시 채권의 부도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기준)이 2008년 7월말 86bp에서 10월 27일 699bp까지 급등하는 등 해외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다. 국내 외화자금시장 사정을 나타내는 원/달러 외환스왑(3개월물)의 스왑레이트도 2008년 7월말 1.42%에서 10월 27일 △4.44%로 큰 폭 하락하였다.

〈그림 Ⅲ-12〉

한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 국제금융센터

2) 주요 내용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화유동성 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리먼 사태 직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한편, 미국·중국·일본과의 중앙은행 통화스왑을 신규 체결 혹은 확대하였다. 그리고 시중은행 또한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미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수출입은행을 통한 외화유동성 지원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9년 초반의 동유럽 금융불안,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 심화 등으로 불거진 외화유동성의 재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2009년 2월 26일에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¹²⁾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4월 9일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시중은행 등의 해외차입 여건을 개선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우리 정부의 외화유동성 지원 조치 효과가 나타나고 국제금융시장이 각국 정부의 노력 등으로 리먼 사태 직후의 극심한 불안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면서 우리

12) 외국인 채권투자 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대표적인 정부채권 투자지표인 WGBI 가입 추진, 재외동포 자금 유치, 공기업 및 국내은행 해외차입 활성화 등이 제도 개선방안으로 포함되었다.

나라 은행의 외화자금 사정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조치는 2009년말까지 대부분 종료되었다.

가.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제도를 한시적으로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18개 국내은행들이 2009년 6월말까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외화자금에 대하여 은행별로 한도내에서 차입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총보증한도는 1천억 달러이며 이는 2009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별 외화차입금 합계액의 약 1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사항(MOU 1)과 실물경제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사항(MOU 2)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단,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MOU 2”만을 체결하였다. “MOU 1”은 해당 은행이 정부 지급보증 외화차입자금을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 용도로만 사용하고 외화유동성 확보에 노력하며 정부의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MOU 2”는 해당 은행이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저소득 가계 대출에 대한 채무상환부담 완화, 경영합리화, 자본확충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은 2009년 4월 29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만기가 6개월 연장된 후 2009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 실제로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화채권을 발행한 은행은 하나은행 한 기관뿐이다. 하나은행은 만기 3년 외화채권 10억 달러를 2009년 4월 6일에 발행했고,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만기 2년 6개월 및 만기 3년으로 6월 19일에 발행했다. 해당 외화채권의 만기인 2012년 6월까지 하나은행은 MOU 이행 의무를 지도록 되어있다.

나. 통화스왑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화보유액이 급감함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 혹은 확대하여 가용 외화자금을 확충함으로써 환율 안정 및 안정적 외화자금 조달을 도모하였다. 우선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30일

미연준과 300억 달러 한도의 원/달러 통화스왑계약 체결하였다. 아울러, 중국인민은행과는 2008년 12월 12일 1,800억 위안(38조원)의 원/위안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은행과는 평상시 원/엔 통화스왑계약을 3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상당액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및 일본과의 중앙은행 통화스왑 계약은 통상적 위기대비 목적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따른 통화스왑과는 별도의 계약이다.

미연준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유럽은행들의 달러자금 부족이 나타나자 2007년 12월 12일 ECB(200억 달러) 및 스위스국립은행(40억 달러)과 처음으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리먼사태 직후인 2008년 9월 18일에는 미연준의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이 일본, 영국, 캐나다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호주·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뉴질랜드가 차례로 포함된 후 10월말에는 우리나라·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까지 총 14개 중앙은행이 미연준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중앙은행과 미연준 간의 통화스왑계약은 당초 종료 예정일인 2009년 4월 30일로부터 두차례 연장된 후 2010년 2월 1일자로 종료되었다. 한편 일본은행과의 통화스왑은 세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2010년 2월말 현재 계약만기일은 2010년 4월 30일이며, 중국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 만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한국은행은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통해 2008년 12월 2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최대 163.5억 달러의 미연준 통화스왑자금을 공급한 후 점차 공급규모를 줄여 나가 2009년 12월 15일에는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였다.

다.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외화자금 지원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과 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재원으로 외화자금을 지원하였다. 우선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수출입은행을 통해 은행에 대출하여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정부는 일부 자금을 경쟁입찰 방식 무담보대출을 통해 시중은행에 일반 외화유동성 확충 용도로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환어음할인 및 원자재 수입유산스 인수업무 지원용도로 시중은행에 외환을 지원하였다. 은행경쟁입찰 무담보대출은 한도 140억 달러 중 92억 달러가 실제 지원되었으며, 수출입금융지원은 한도 110억 달러의 대부분인 108억 달러가 공급되

었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외화유동성 지원 자금 중 일반 외화유동성 지원자금은 2009년 6월말까지 전액 회수되었으며, 수출입금융 지원자금은 2009년 말까지 전액 회수되었다.

〈표 III-6〉 정부의 수출입은행을 통한 외화유동성 지원 내역

(단위 : 억 달러)

	공급 한도	공급 실적치	비 고
일반외화유동성	140	92	'09.6월말 전액회수
수출입금융지원	110	108	'09.12월말 전액회수
계	250	200	

주 : 2008년 10월~2009년 12월말

자료 : 수출입은행

한국은행도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 및 수출환어음 담보 외화대출을 시행하였다.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를 통하여 2008년 10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차에 걸쳐 만기 3개월 자금을 최대 102.7억 달러를 공급한 후, 2009년중에는 점진적으로 공급규모를 줄여 나가 2009년 8월 4일에 자금을 전액 회수하였다.

〈표 III-7〉 한국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 내역

	공 급 액
외환보유액 활용 외환스왑	102.7억 달러
미연준 통화스왑 활용 외화대출	163.5억 달러
계	266.2억 달러

주 : 2008년 10월 21일~2009년 12월 15일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9.8.3.

한편 한국은행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100억 달러를 한도로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은행이 지원한 자금은 6개월 만기 대출로 중소기업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은행에 대해 수출환어음 규모에 해당하는 외화를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담보부대출이라는 절차상 복잡성 등으로 인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외화자금 공급쪽이 주로 활성화되면서 1.5억달러를 공급하는 데 그쳤으며 2009년 7월중 전액 회수되었다.

3) 시사점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노력은 리먼 사태 직후 나타난 우리나라 외화자금시장의 경색을 조기에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외환보유액과 중앙은행 통화스왑자금을 재원으로 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외금융기관의 외채상환요구에 대응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¹³⁾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조치는 실제 지원실적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은행에게 제2의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협상력을 제고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은 우리나라 외화유동성 사정에 대한 해외의 불안심리를 완화시키면서 일주일 사이에 CDS 프리미엄을 200bp 이상 하락시키는 등 외화자금 사정 개선과 우리경제의 신인도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적정 규모의 외환보유액 확보의 중요성이 이번 위기극복과정에서 재차 확인된 것은 사실이나 외환보유액 유지에는 비용이 다르므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계약의 경험을 살려 글로벌 안전망 구축 등 국제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외환부문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공적 금융기관 자본확충

1) 배경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저금리정책 및 경제주체간 공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었다.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중기 자금공급규모는 2008년의 32조원(산업은행 8조원,¹⁴⁾ 기업은행 24조원)에서 2009년에는 44조원(산업은행 12조원, 기업은행 32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13) 정부와 한국은행이 리먼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원한 466.2억 달러의 외화자금은 2008년 4/4분기중 우리나라 예금은행이 해외금융기관에 순상환한 해외차입 481.3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이다.

14) 한편 기업은행의 '08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은 8조원이었으나 추가로 2조원을 증액하여 실제로는 총 10조원이 공급되었다.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P-CBO 발행¹⁵⁾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업은행은 “선제적 금융지원 프로그램”¹⁶⁾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증대는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부는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본을 출자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을 통해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이 급감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주요 내용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및 부실채권 인수 등을 위하여 2009년 추경편성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¹⁷⁾에 대한 출자 및 출연 예산으로 2조 3,000억원을 편성하여 중기대출 만기연장 및 신용보증 확대 등과 같은 중소기업대출 원활화 시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은행에 총 3,000억원(BIS 비율 : 11.64% → 11.92%)을 출자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 1조 800억원(보증규모 33.5조원 → 46.6조원),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 5,200억원(보증규모 14.5조원 → 17.1조원)을 출연하였다. 한편, 자산관리공사에는 은행 및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부실채권인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억원(매입률 50% 적용시 2.0~4.4조원 인수 가능)을 출자하였으며, 주택금융공사에는 유동화증권 발행(7조원 → 11조원)을 통해 서민담보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0억원을 출자하였다.

15) 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1조원 규모의 P-CBO로, 이는 자체적으로 채권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모아 풀(Pool)을 만든 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기초자산은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발행하는 3년 만기의 3개월 고정금리 이표채 형태로 발행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을 현행 1.0%에서 0.7%로 인하해 기업의 조달금리를 30bp 낮추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16) 부실예후가 감지되는 중소기업을 선별해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인 자금지원으로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2009년 9월~12월말 기간 부실 징후를 보이는 거래기업 중 대출금 20억 이상인 기업 200여개를 선정해 연말까지 업체별 5억원 한도에서 우선 지원한다. 자금지원 외에 필요한 경우 대출금의 출자전환이나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대출 원리금 감면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조정도 받을 수 있다.

17) 공적금융기관 중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정책금융을 담당하였으나, 산업은행법 제50조에 따른 산업은행 분할로 2009년 10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자본금 15조원, 정부 출자)됨에 따라 이후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백서에서 다루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업무는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관되었다.

〈표 III-8〉

정부 추경편성(2009.3)

(단위 : 억원)

기 관 명	'09년 예산	추 경(안)	계
금 용 위(A)	20,000	7,000	27,000
(자산관리공사)	4,000	2,000	6,000
(주택금융공사)	2,000	2,000	4,000
(중소기업은행)	5,000	3,000	8,000
(산업은행)	9,000	-	9,000
중 기 청(B)	11,000	16,000	27,000
(신용보증기금)	9,000	10,800	19,800
(기술보증기금)	2,000	5,200	7,200
합 계(A+B)	31,000	23,000	54,000

자료 : 금융위원회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한국은행도 출연하였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산업은행 경유 대출 원리금의 80%를 지급보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기본구조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 산업은행이 동 자금을 펀드에 재대출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경우 대출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 하락이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의 펀드 관련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경기침체 지속과정에서 보증여력이 급속히 소진될 수 있어 기존의 보증재원으로 펀드지원 관련 지급보증을 실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펀드지원 대출관련 지급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9년중 총 4,300억원 이내에서 산업은행의 펀드에 대한 대출 실행 시 필요액만큼 분할하여 출연한다는 계획하에 실제 2009년중 1,378억원을 출연하였다.

3) 시사점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출연은 중소기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으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지원금융기관의 경영악화 우려를 직접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데에 공적금융기관에의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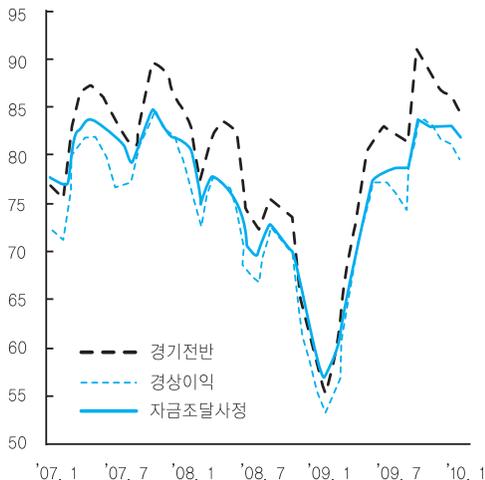
다만, 정부의 재정여력 축소로 지속적인 공적금융기관에의 출연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공적금융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중소기업 금융지원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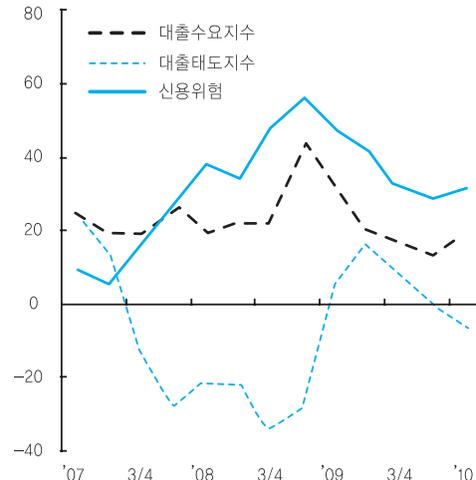
2008년 하반기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대출재원 확보가 어려워 은행이 대출심사기준¹⁸⁾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2008년 8월 이후 둔화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또한 주가 하락 및 중소기업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주식 및 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워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림 III-13〉 중소기업 BSI 추이(실적)



주 : 100 이상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III-14〉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 추이



주 : 기준치는 0으로 100과 -100 사이에 분포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8) 가산금리 확대 및 연장채취급 조건 강화 등

〈표 III-9〉

기업 자금조달

(단위 : 기간중 증감, 조원)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직접금융	4.9	5.7	1.9	14.0	21.5	5.0	2.1	1.4
회사채순발행	2.6	0.8	1.5	4.2	15.2	9.4	3.7	2.7
CP 순발행	1.4	3.5	△0.6	9.1	5.6	△6.5	△3.8	△5.1
주식발행	0.9	1.4	1.0	0.7	0.7	2.1	2.2	3.8
기업대출	24.4	25.4	21.2	7.2	10.9	2.6	8.3	△7.4
대기업	8.6	5.7	11.0	5.0	1.6	△4.6	2.0	△4.2
중소기업	15.8	19.7	10.3	2.2	9.3	7.2	6.3	△3.2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각호

2)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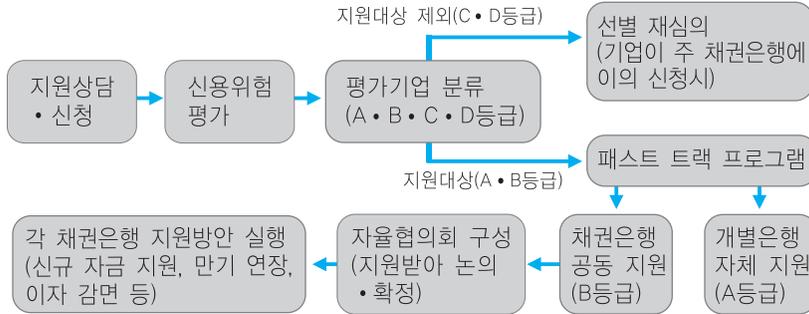
가. Fast Track 프로그램

정부는 2008년 10월 1일에 시중은행 등 민간과 정책금융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중기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종전의 정책은 정부가 정책자금의 공급 및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구도였는데, 이 경우 경기위축기에는 민간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높아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위축기에도 민간부문의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선별 및 지원기능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Fast Trac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행의 신규 여신지원과 관련한 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특별보증을 지원하였다.

먼저, Fast Track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유동성지원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법정관리) 등급으로 구분한 뒤, 부실징후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A, B등급에 속한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¹⁹⁾

19) 한편 부실 징후가 있는 C등급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부실 징후가 명백한 D등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림 III-15〉 Fast Track 프로그램 흐름도



자료 : 기획재정부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해 2008년 10월~2009년 10월까지 총 10,954개사에 22.7조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형태별로 보면 만기연장 16.1조원(70.9%), 신규대출 4.6조원(21.3%), KIKO 손실 대출전환 1.7조원(7.7%) 등이 지원되었다.

〈표 III-10〉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추이

(단위 : 개사, 조원)

	'08.10~12	'09.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지원업체수	1,614	1,755	1,724	1,812	1,231	893	716	431	311	207	202	10,954
지원액	2.7	2.4	2.5	3.0	2.6	2.0	2.4	1.3	1.4	1.3	0.98	22.7

자료 : 기획재정부

한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보증지원이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보증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이 간소화된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²⁰⁾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KIKO 손실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일반보증이 필요할 경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도 확대되었다.

나. 총액대출한도 확대 및 은행과의 MOU 체결

한국은행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이후 축소해 왔던 총액대출한도를 2008년 11월부터 6.5조원에서 9.0조원으로 2.5조
20) 일반 중소기업은 보증비율 60~70%와 보증한도 10억원을 적용하고, KIKO 등 손실기업은 보증비율 40%와 보증한도 20억원을 각각 적용

원 증액하였다. 이 중 1조원은 “특별지원한도”로 설정하여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²¹⁾”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지원한도 확대 목적으로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 추가 증액하여 2010년 2월 현재 총액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2008년 11월 14일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18개 국내은행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은행내에 중소기업지원 T/F 등이 운영되고 만기연장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이상을,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이상 유지되도록 하였는데, 2009년중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중기대출증가액/총대출증가액)은 67.6%(33.8조원 증가)로 MOU상 중기대출 목표비율(50.4%) 및 금액(32.2조원)을 모두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MOU기준 중소기업 대출 실적

(단위 : %, %p, 조원)

	목 표(a)	연간실적(b)	초과달성(b-a)
증가비율	50.4	67.6	17.2
증 가 액	32.2 ¹⁾	33.8	1.6

주 : MOU는 목표비율 달성여부만 관리하므로, 1)은 MOU상 목표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표 III-12〉 국내은행 기업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단위 : %)

	'07년말	'08년				'09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9월	12월
기 업 대 출	0.92	1.16	1.47	1.30	1.47	2.04	2.26	2.27	1.68	1.56	1.05
대 기 업	0.37	0.36	0.34	0.30	0.34	0.70	0.66	0.85	0.82	0.81	0.63
중소기업	1.00	1.29	1.70	1.50	1.70	2.33	2.59	2.57	1.86	1.72	1.14

주 :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기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21) 금융시장 불안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2008.10.13일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동성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신용보증기관은 이에 대해 보증을 실시하였다.

다. 신용보증 확대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신용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저신용등급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2월 12일에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보증기관의 보증확대를 통한 금융지원 원활화를 도모하였다.

동 방안의 기본 방향은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2009년도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 보증지원분은 지원기준등급을 완화하여 지원가능 기업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출감소를 반영하여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늘였다. 한편,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는 보증공급목표(Quota)를 설정하여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95% → 100%로, 보증한도를 30억원 → 최고 100억원까지 각각 확대함과 아울러 등급별로 1등급 높은 등급의 지원한도를 적용토록 하였다. 100% 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심사 후 은행심사 없이 바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입한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자동심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수기업에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보증지원 확대로 재정손실과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도덕적해이(moral hazard)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였는데, 부도 및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되었다.

〈표 III-13〉 신용보증 확대 방안(2009.2.12)

구 분	내 용	
기존 보증	· 2009년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에 대하여 전액 만기연장(이후 2010년 상반기로 연장)	
신규 보증	신용보증기금	· 기준등급 완화 : 21등급 중 15등급(KC4) 이상에서 18등급(KD3) 이상으로 하향조정 · 보증한도 완화 :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수출자금은 매출액의 1/3→2/4, 제조업은 1/4→1/2로 완화
	기술보증기금	· 기준등급 완화 : 10등급 중 6등급(B) 이상에서 8등급(CC) 이상으로 하향조정 · 보증한도 완화 :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소요자금(예상매출액 등 기준 측정) 대비 100%→130~150%

자료 : 금융감독원

이후 정부는 보증 만기를 2010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한편 보증비율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였는데, 기존 보증의 경우 2009년 95% 보증에서 2010년 1월부터는 90%로 낮쳤으며 2010년 7월부터는 85%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신규 보증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보증비율을 50~85%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춰 정상화할 예정이다. 장기·고액 보증에 대한 감축조치가 2009년 중 일시 중단되었으나 2010년부터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다시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신용보증 확대조치 이후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9년 10월 말까지 보증공급 규모는 47.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조원 증가하였다. 다만 월별 신규보증 규모는 3월에 4.6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만기연장률도 상승하였는데, 2009년 10월말 기준 신·기보의 만기연장률은 87.7%로 2007년의 82.2%, 2008년의 8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신용보증기금 및 기보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조원)

	'08년		'09년										
		1~10월	1~10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신규보증	13.8	10.0	23.2	0.9	3.2	4.6	3.7	2.8	2.8	1.0	1.1	1.7	1.4
만기연장	27.8	22.3	24.1	0.8	1.4	2.6	3.3	3.0	4.3	1.5	2.8	1.7	2.7
합 계	41.6	32.3	47.3	1.7	4.6	7.2	7.0	5.8	7.1	2.5	3.9	3.4	4.1

자료 : 기획재정부

3) 시사점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정부 및 은행, 보증기관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대외충격을 완화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ast Track 프로그램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목표가 강조됨에 따라 은행의 자율적인 신용평가 역량이 강화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그동

안 우리나라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거 은행의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문제기업을 선별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Fast Track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은행의 자율적인 상시평가시스템이 적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5. 기업구조조정

1) 배경

2008년 하반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기업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신생조선사 등 일부 업종 기업들의 부실 심화와 신용경색에 따른 연쇄도산 우려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8년 12월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 및 체계를 발표하였으며 2009년 중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는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한데 반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만 신속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 및 그룹별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산업별로 시행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구조조정 체계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 주도로 추진되었는데, 대기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의해 진행되었다. 다만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건설사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자금지원과 함께 구조조정을 진행시켰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주채권은행이 대상기업별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의결하는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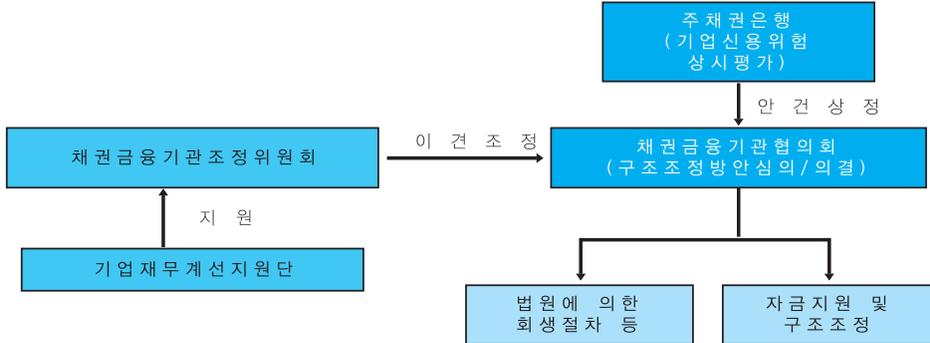
으로 진행되었다. 채권은행들은 상시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하고, 주채권은행은 B와 C 등급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였다. 다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되었다.

〈표 Ⅲ-15〉 기업규모별·업종별 기업구조조정체계

	대 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구조조정	건설사 구조조정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영업력·인지도 갖춘 건설사· 연관 시행사	신용위험평가 A·B 등급의 중소기업
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대주단협약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
이견조정 기구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채권은행조정 위원회	없음	채권은행 조정위원회
위원구성	7인 (은행연합회장 2인, 자산운용·보험협 회장·상공회의소 장·공인회계사회 장·대한변협회장 각 1인 선정)	5인 (은행연합회장과 협약 가입기관 대표자로 구성된 상설협의회의선정 4인 및 「기촉법」 상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위원장		5인 (채권은행조정 위원회 위원과 동일)
위원장	위원 중 호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위원장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위원장
실무조직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			

〈그림 III-16〉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과정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개선 등을 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을 진행하였다.

나. 구조조정 현황

2009년 중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른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대기업 9개 그룹, 개별대기업 33개, 건설·조선·해운사 46개 및 중소기업 512개가 선정되어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대기업그룹 45개 주채무계열 중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2009년 6월 1일 9개 계열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들 그룹을 중심으로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및 자본확충 등이 이행 중이다. 개별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이 매년 4~6월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채권단 협의, 외부전문기관 실사 등 워크아웃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데,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가 2006년 3개, 2007년 7개, 2008년 0개에서 2009년에는 총 33개사(C 22, D 11)로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경우 우량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독려하는 한편 리스크관리 강화 및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병행되었다. 특히 2009년 11월말까지 중소기업 여신규모 등에 따라 1~3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총 512개사(C등급 291개사, D등급 221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1, 2차 신용위험평가결과 C등급으로 선정된 185개사 중 96개사에 대해 사전공동관리(45개사), 단독관리(37개사), 공

동관리(14개사) 등의 방법으로 워크아웃이 개시되었다. 한편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적 신용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채권은행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III-16〉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단위 : 개사)

	총 평가대상	세부평가	C~D등급	C~D등급	
				C등급	D등급
1차 ('09.7)	10,738	861	113(13.1%)	77	36
2차 ¹⁾ ('09.9)	15,618	1,461	174(11.9%)	108	66
3차 ('09.12)	21,366	1,842	225(12.2%)	106	119
합 계	40,734	4,164	512(12.3%)	291	221

주 : 1) 1차평가 대상(50억원 이상) 중 질적기준 적용 재평가 업체 6,988개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건설·조선·해운사의 경우 총 277개사 중 46개사(C 32, D 14)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채권단과 C등급기업(워크아웃)은 MOU를 체결하고 채무조정 및 자구노력을 추진 중이며,²²⁾ D등급기업(퇴출)은 경매 등 채권회수, 기업회생 절차, 파산신청 및 자체매각 등 기타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해운사의 경우 선박의 공급과잉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해운시장의 본격적 회복에 장기간(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운사 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²³⁾

〈표 III-17〉 건설·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단위 : 개사)

	평가대상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162	29
조선업	24	7
해운업	91	10

자료 : 금융감독원

22) 이에 따라 2009년 9월 기준 6개사는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완료하기도 하였다.

23) 정부는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해 기금 1조원을 포함하여 총 4조원의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2009년 7월까지 17척(총 4,800억원)의 선박을 매입하였다.

3)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권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시행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정부의 신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의 만기대출 연장 유도 등이 이루어져 구조조정 의지와 상충되는 시그널이 시장에 제공되어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향후 경기회복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는데 오히려 경기회복을 적극적인 구조조정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보다 해소하고, 과잉투자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2010년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1) 배경

2009년 부동산시장은 초반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부동산 가격하락 압력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초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2008년 이후 시행된 규제완화 및 재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우세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시장 관련 대책도 이러한 부동산 시장가격 추세에 맞추어 초반에는 2008년말 시행된 가격 급락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지속된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상승방지를 위한 대책, 특히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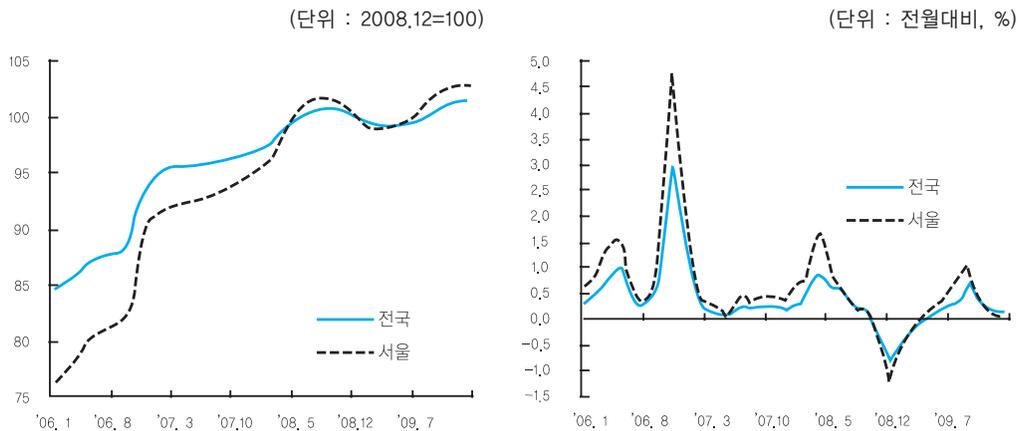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가. 2009년 상반기 :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지속

2008년말 실물경기 급락 및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미분양 아파트 지원 정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 상반기까지는 금융시장 불안, 경기침체의 모습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8년말 이후 시행된 부동산 가격 하락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지속되었다.

〈그림 III-17〉

주택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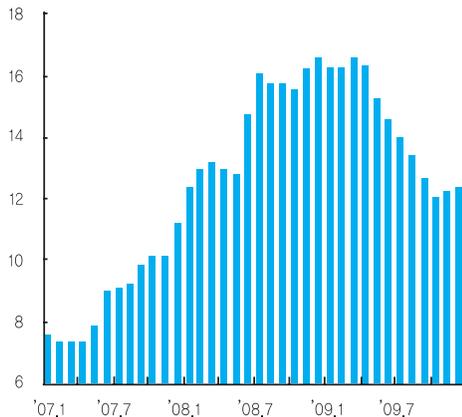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2008년 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투기 억제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인위적 수요억제 및 거래제한을 목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의 지정이 2008년 11월 7일 이후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초과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되던 한도 40%의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배제되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시 적용되던 한도 50%의(단, 투기지역은 40%)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도 60%까지 상향 적용받게 되었다. 주택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금융지원도 확대하였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으로 장기 보금자리론 공급여력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에 30년 장기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대출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천만원 → 1.5천만원) 등 주택자금차입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도세 등의 규제도 2008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완화시켰는데,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양도세율도 기존 9~36%에서 6~33%로 변경되었다.

〈그림 III-18〉 미분양아파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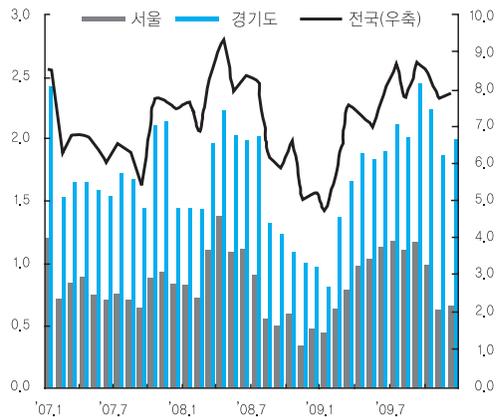
(단위 : 만호)



자료 : 국토해양부

〈그림 III-19〉 아파트거래량 추이

(단위 : 만필지)



자료 : 국토해양부(부동산정보통합포털)

한편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면서 건설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세제지원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금융지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상향(분양가 10% 인하시 기존 60%에서 70%로 상향조정) 및 모기지 보험 확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III-18〉 미분양 해소 등 건설경기 보안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감면('08.7) - 지방 주택은 3억원까지 양도세 종과배제('08.10) - 1주택자가 2년내 추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일반세를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허용('08.12) -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주택 취득시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지방주택 양도세 종과배제('08.11) - 非수도권에 한해 매입임대사업 세제혜택(양도세 종과배제, 종부세 비과세) 요건 완화('08.10)
금융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LTV 상향(분양가 10% 이하 시 기존 60%에서 70%로 상향조정) 및 모기지 보험 확대('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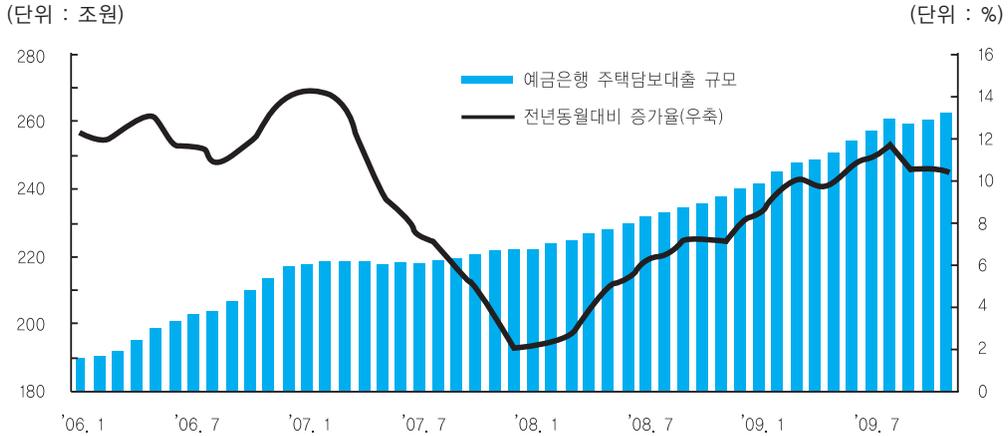
또한 2009년 3월말에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한 자산 유동화,²⁴⁾ 리츠·펀드를 통한 미분양 주택 할인 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미분양 투자상품의 도입을 통해 준공전 미분양 해소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준공전 미분양 투자상품의 경우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리스크가 높아 투자자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주택보증이 자금관리를 함과 동시에, 분양보증, 매입보장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관련 집단대출 감소세에 대응하여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의 한시적 확대(종전 90%에서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도 시행하였다.

나. 2009년 하반기 :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가는 가운데,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2009년 하반기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초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의 뒷받침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4) 한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자산 유동화에 대한 신용보강 지원은 2008년 10월 21일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서 이미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2009년 3월 이후 준공 후뿐만 아니라 준공 전 P-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등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2007년 0.2조원이던 P-CBO 발행규모가 2008년 4/4분기 1.55조원, 2009년 1/4분기 2.37조원, 2/4분기 1.64조원을 기록하였다. 다만 2009년 하반기부터는 주택시장이 회복되며 분양률이 높아지자 발행규모가 급감하여 3/4분기에는 0.52조원, 4/4분기에는 0.45조원의 P-CBO가 발행되었다.

〈그림 III-20〉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이에 금융감독원은 2009년 7월 7일 은행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증가 예상 지역에 대해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강남 3구 투기 지역 이외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대해서도 LTV를 강화할 것을 은행들에게 요청하였다.²⁵⁾

〈표 III-19〉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LTV 강화 내용(2009.7.7)

만 기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주 택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3년 이하	60% 이내	50% 이내	60% 이내	50% 이내	
3년 초과~10년 이하	60% 이내	50% 이내	60% 이내	좌동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 초과	60% 이내	50% 이내	60% 이내	좌동
	담보가액 6억원 이내	60% 이내	좌동	60% 이내	좌동
10년 이상 분할상환 ¹⁾	70% 이내	좌동	70% 이내	좌동	

주 : 1) 1년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 유동화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 총부채상환비율 40% 이하)을 의미함.

자료 : 금융감독원

25) 다만 서민·실수요자 배려 등을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강화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도권에 대한 LTV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게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월 7일부터 수도권 비투기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 강화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Ⅲ-20〉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DTI 강화 내용(2009.9.7)

구 분		DTI 기본 비율			
		기존	확대적용		
담보가치	대출금액	투기지역	서울 (투기지역 제외)	인천·경기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천만원 초과	40%	50%
5천만원 이하	-		-	-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경과)	1억원 초과	40%	50%	6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			
	5천만원 이하	-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억원 초과	40%	50%	6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			
	5천만원 이하	-	-	-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초과	1억원 초과	50%	6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
		5천만원 이하	-	-	-
	국민주택규모 이내	5천만원 초과	50%	50%	60%
		5천만원 이하	-	-	-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리스크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증가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2009년 10월 12

일부 리스크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에는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를 강화하고 DTI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기존 60% 이내인 LTV가 50% 이내로 강화되며, DTI는 수도권 비투기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는 현행 70% 이내의 LTV가 60% 이내로 강화되고 DTI도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되었다.

3) 시사점

2009년 하반기 이후 시행된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권고의 영향으로 3/4분기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주택담보대출은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²⁶⁾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세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LTV, DTI 등 금융규제만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²⁷⁾되었다. 그러므로 주택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강화하는 한편, 위기 기간 중 시행된 비정상적 금융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정상화시킴으로써 과잉 유동성을 점차 흡수해 나가는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택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인상 등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DTI 규제를 부동산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에 한하여 획일적으로 적용시켜온 경향이 있는데, 이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직업, 소득수준 등 차주의 성격을 감안하여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DTI 규제의 유효성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 2009년중 주택담보대출 분기별 증가액 : 8.3조원(1/4분기) → 11.9조원(2/4분기) → 13.4조원(3/4분기) → 9.8조원(4/4분기)

27) 장민·이규복·임형준,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금융VIP시리즈 2009-02 참조

7. 민간배드뱅크(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1) 배경

2009년에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확대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처리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국내 부실채권시장의 실질적인 수요자로는 공기업인 자산관리공사(KAMCO)와 소규모의 민간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 민간수요자들은 영세적인 소규모 사업인 관계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산관리공사 이외에는 마땅한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이후부터 완전매각방식(outright sale)을 지양하고,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실채권을 인수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처리한 후 발생한 손익을 부실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와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사후정산 방식의 부실채권 매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즉, 은행이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회계적으로 진성 매각(true sale)이 아니므로 은행의 장부상에 부실채권이 남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실채권의 처리와 동시에 자산건전성 제고효과가 발생함으로써 BIS비율의 상승 및 신인도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나, 사후정산 방식의 부실채권 처리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민간 배드뱅크를 통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안이 자산관리공사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에 비해 부실채권매각에 대한 회계적 처리 조기 완료 및 수익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인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민간배드뱅크 설립과정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경기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급증하는 은행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2009년 2월 15일 ‘금융당국 및 주요은행 은행장 합동 워크숍’에서 민간 배드뱅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인해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부실채권 매각이 회계처리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후, 3월 24일부터 외부 전문기관, 주요 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에서 민간배드뱅크 설립방안이 마련되어 당초 4월 중 자본금 3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의 참여 여부 및 은행의 민간배드뱅크 출자금에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출범이 하반기로 지연되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출자하는 민간배드뱅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출자기관인 자산관리공사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은행들이 부실채권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 상대인 자산관리공사가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상충 관계를 발생시킬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의 참여는 무산되었다. 또한, 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여 배드뱅크에 출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출범이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한 민간배드뱅크 설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체자금으로 하되 자본금을 3조원의 기존 계획보다 줄인 1~2조원 규모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7월 30일 금융당국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간배드뱅크 설립계획을 보고하고, 8월 20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이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 9월 28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10월 1일 민간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나.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현황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인수, 관리 및 처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연합자산관리에 출자한 은행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이다. 총 투자약정액은 출자금 1조원 및 대출금 5천억을 포함하여 총 1조 5천억원으로 이를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납입한다. 캐피탈 콜은 목표한 투자금을 전액 모아놓고 투자집행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일부를 조성하여 투자에 나선 후 추후 추가소요가 있을 시 자금을 더 모아 투자하는 방식이다. 향후 연합자산관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약 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자산관리 설립 후 1~2년 후부터는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재투자(revolving)가 가능하고, 자체 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leverage)를 높일 경우 추가적인 부실채권 정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표 Ⅲ-21〉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지배구조

주주총회	· 의장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수행
이사회 및 대표이사	· 이사는 대표이사 1명, 상근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 · 주주는 이사회에 이사지명권이 없으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이사 후보를 추천 ·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선임
감 사	· 상근감사 1인 ·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결정
임원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비상설 기구 · 임원추천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각 주주의 대표로 구성
주주간 협의회	· 주주 각 당사자가 각각 지정한 자로 구성 · 출자규모 및 시가협의/운영과 관련된 이견조정/대표이사가 요청한 사항 · 주주간 협의회의 결정사항은 회사를 구속할 수 없음.
공정가치심의위원회	·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비상설 자문기관 ·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부실채권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자문/매입실태에 대한 평가/매입관련 제도개선사항 자문

자료 : 연합자산관리

연합자산관리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및 그 지분 또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 업무이다. 둘째, 부실채권, 부실채권에 수반하여 처분된 증권이나 출자전환 주식, 또는 구조조정 대상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증권의 매입 및 매각이다. 셋째, 기업구조조정 업무이다. 넷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관리 업무이다. 다섯째, 기타 각호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이다.

연합자산관리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은행연합회장을 의장으로 하는 주주총회, 대표이사과 상근이사·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감사, 공정가치심의위원회로 이루어진다. 공정가치심의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기구로 연합자산관리의 정관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3) 시사점

설립 이후 연합자산관리는 신한은행이 매각한 1,026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785억원에 인수하는 단 1건의 성과를 올리는데 그쳐 저조한 부실채권 매입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의 2,3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 입찰에 참여했으나 결과는 아직 미정이다. 반면 자산관리공사와 저축은행 등은 연합자산관리와의 부실채권 입찰경쟁에서 입찰을 따내며 많은 규모의 부실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연합자산관리회사가 배드뱅크시장에서 적극적인 시장참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부실채권 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15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두고 수요 기관들 간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연합자산관리는 특정 부문의 부실채권에 대한 전문성을 보강하는 등 부실채권 시장에서의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8. FATF 정회원 가입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

1) 배경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기 제1차 총회에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었다. 2001년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립하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는 FATF 가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실행 수준과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받아 만장일치로 정회원이 되었다.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1989년 G7 정상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회원으로는 OECD 회원국 중심 33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가 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과 테러자금조달 차단과 관련하여 특히, 9.11 테러 이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구이다.

〈표 Ⅲ-22〉 FATF 주요국 현황

	OECD회원국	非OECD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18)	러시아	EC
미주·중동·아프리카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3)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3)	GCC
아·태 (8)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한국 (5)	홍콩, 싱가포르, 중국 (3)	
계 (35)	26	7	2

주 : OECD 30개국 중 미가입국 : 4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자료 : FATF

우리나라가 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2008년 11월 FATF 정회원 가입을 전제로 가입자격 여부에 대한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2009년 6월 FATF 총회에서 공식보고서로 채택되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FATF 정회원으로서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국제기준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FATF 정회원 가입에 따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및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자금세탁방지 선진국의 협의체인 FATF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국내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2월 15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2010년 6월 30일 시행 예정)하였으나 국제기준으로 볼 때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환경범죄의 자금세탁 전제범죄 규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테러조직 또는 테러행위자에 대한 자금 제공과 모집의 범죄화, 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FATF 지정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부과 등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개선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의 단계적 인하 및 폐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1,000만원(외화거래는 5,000달러 상당)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기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1,000만원은 대규모 테러행위를 도모할 수 있는 자금으로 1,000만원 미만은 혐의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폐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의 즉각적인 폐지는 금융회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한 이후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의 제정이다. 우리나라는 금융회사 등의 이행사항을 규정한 지침은 있으나 정부기관 명의를 지치지 않아서 관련 상호평가에서 업무지침의 강행규정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금융정보분석원장)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제정된 규정은 법규적 성격을 갖게 됨으로 국제기준의 강행 규정성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와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존 법률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는 자금세탁전제범죄 대상의 확대이다. 우리나라는 FATF가 자금세탁전제범죄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20개 범죄 중 환경범죄를 자금세탁전제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3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관련 범죄만을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하고 있어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환경범죄를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법무부, 환경부, 금융정보분석원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2010년 6월까지 입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기·횡령·배임 관련 기준금액 하향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넷째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개선이다. 2007년 제정된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인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은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축소되어 입법되었다. 그 결과 상호평가에서 우리의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는 국제기준에 현저하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개선을 통해 현재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제공과 모집만을 범죄로 보는 것을 보다 확대하여 테러조직 또는 테러행위자에 대한 자금제공과 모집도 범죄화하고, 관련 자금 또는 재산을 동결·몰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시행 등을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개정이다. FATF는 2003년 6월 전문직종사자(법률전문직,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 및 비금융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최종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과정에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다. 비금융 전문직종사자들은 기업, 재단 등 각종 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범죄수익이 유통되는 데 연루될 가능성이 상존할 뿐 아니라 자금세탁 범죄자들에 있어서도 전문직종사자들의 신용도와 지명도를 이용해 자금세탁에 대한 혐의를 약화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FATF 지정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

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점진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팔레모협약의 이행입법 및 비준이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과 관련된 UN협약을 대부분 비준·이행하고 있으나, ‘초국가 조직범죄의 방지에 관한 협약(2000년, 팔레모협약)’은 아직 이행입법과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팔레모협약의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로 범죄단체 처벌범위의 확대, 사법방해 행위의 처벌, 조직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범죄를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한 관련 수익의 몰수 등 세 가지를 설정하고, 동 협약의 이행입법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조만간 입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 시사점

FATF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각종 논의와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분야의 선도국가로서 지도력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해외영업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FATF 정회원 가입에 대한 각종 유리한 대우로 국내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ATF 정회원 가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숙한 세계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역할과 활동을 강화해 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현재 FATF는 G20의 요청에 따라 비협조국 지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지역별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규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G20의장국이자 G20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FATF 내에서 역할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개의 FATF 실무그룹을 통해 각종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각종 규범이 재검토되고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FATF 정회원으로서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규칙제정자’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FATF 상호평가자 및 협의거래보고 심사분석 인력 등 전문가 양성 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제3장 금융시장의 효율화

1.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과 시행 1년의 평가

1) 배경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은 은행이나 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겸업화, 대형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2월 규제완화 및 금융기관간 무한경쟁 촉진을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금융빅뱅(big bang)을 유도하고자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겸영 허용 등을 통한 업무범위의 확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허용 및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2) 주요 내용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및 증금업법 등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첫째,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을 기존의 한정적 열거주의방식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규율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①이익획득 또는 손실회피 목적, ②현재 또는 장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③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된다. 이는 위험 크기(원본초과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누어지며, 파생상품은 다시 거래장소에 따라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표 III-23〉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명 칭		정 의	예
증 권	채 무 증 권	채무를 나타내는 것	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등
	지 분 증 권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것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등
	수 익 증 권	수익권을 나타내는 것	신탁 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지분증권의 예탁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증권	KDR, GDR, ADR 등
	투자계약 증권	이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	간접투자증권, 비정형간접투자증권, 주식, 출자지분 등
파생결합 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의 권리	주가연계증권(ELS), ELW,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 등	
장외파생상품		선도, 스왑, 옵션을 추상적으로 정의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중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정의	

자료 : 금융감독원

둘째, 자본시장법은 그 규율체제를 기존의 법체제에서 볼 수 있었던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금융기능을 취급대상 금융상품,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 영업대상 투자자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기능별로 규제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였다.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융투자업을 그 경제적 기능과 위험을 기준으로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취급 금융기관의 업종을 불문하고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등의 금융규제가 금융기능을 중심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금융기능별 진입규제는 ‘기능-상품-투자자’의 조합에 의해 구성되는 총 42개의 인가 및 등록업무단위별로 차별화되었다. 기존의 인허가 단위가 종합증권업, 위탁매매업, 자산운용업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세분화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회사의 인허가 단위를 보다 세분화함과 동시에 각 단위별 자기자본요건을 차등화하였다. 또한, 위험도나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일부 단위에 대

해서는 인·허가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완화하였다. 진입요건은 진입 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 하는 유지요건으로 규정하여 진입 시 적용된 적격성이 지속 되도록 하였다.

〈표 Ⅲ-24〉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

舊 법명	적용 회사명	규정된 금융투자업	금융기능
증권거래법	증권회사	매매업, 인수업, 매출업	①투자매매업
		위탁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	②투자중개업
선물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업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	중개업	
		매매업, 인수업	①투자매매업
	자금중개회사	자금중개업	수신업
신탁업법	신탁회사	신탁업, 개인연금신탁업, 연금신탁업	자금중개업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⑥신탁업
	투자자문사	투자자문업	①투자매매업 또는 ②투자중개업
	투자일임사	투자일임업	⑤투자자문업
	자산운용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④투자일임업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⑤투자자문업
	-	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 기능	
	수탁회사	투자신탁재산의 수탁업	
자산보관회사	투자회사의 자산보관업	⑥신탁업	

자료 : 재정경제부(2006)

셋째, 자본시장법은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상호간 겸영을 허용하여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먼저, 영위가능한 부수업무를 법률에 사전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negative system)로 전환함으로써 법률에서 제한하는 업무 이외에는

부수업무의 포괄적인 허용이 이루어졌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결제·송금·수시 입출금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망을 확충하고,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자제도(introducing broker)를 도입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더하여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다양화, 펀드 종류별 투자 대상자산의 제한 폐지, 혼합자산펀드 허용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넷째, 투자자보호수준의 강화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영업행위규제의 일환으로서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불초청권유금지 등 새로운 투자권유규제와 함께 투자광고규제를 도입하고,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구축의무를 금융투자업자의 일반적 의무로서 도입하였다.

3) 시사점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국내 자본시장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반면, 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등의 변화는 아직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와 기능주의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창의적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경쟁이 촉진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 및 겸업화가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당초 기대했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또한 증권사들의 사업모델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기대되었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의 시행시작단계에서는 자본시장의 안정적 변화와 투자자 보호에 보다 중점이 두어졌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마련된 금융기능별 인가 및 등록 체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본시장의 위축, 금융투자업의 수익기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운용하여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등도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 금융투자업 위험평가제도 개선

1) 배경

금융의 글로벌화, 증권화 및 디지털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면서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금융투자회사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향후 고수익·고위험의 파생상품업, 투자은행(IB)업 등이 확대될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독체계를 기존의 총량적인 건전성감독(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NCR)과 병행하여 리스크중심의 감독(risk based supervision, RBS)으로 전환하였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RBS를 이원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규모와 관리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리스크평가시스템(risk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 RAMS)’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한편,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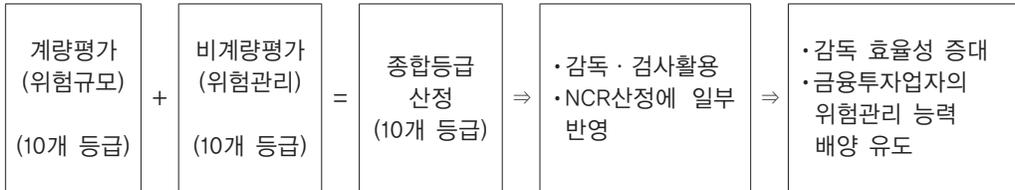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RBS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RAMS는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규모 및 관리능력을 영업부문별로 세분화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내의 전산시스템으로 2008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월 RAMS 위험평가 결과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금융투자회사(영업)에 대해 그 위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RAMS는 리스크 유형별(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네가지) 및 영업부문별(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주식·채권·기타 유가증권, 장내파생상품업, 장외파생상품업, 투자은행업 인수·ABS·PI 등, 자산관리업 일임·CMA, 종합금융업 등 12가지)로 세분화하여 구성된 총 36개의 계량지표를 통해 리스크 규모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RAMS는 분야별(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리스크조직 및 관리, 리스크관리시스템, 내부통제 등 4가지) 및 영업부문별(12가지)로 세분화된 비계량평가지표를 통해 리스크 관리수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10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위험평가 결과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험에 취약한 영업부문을 파악할 수 있고

록 함으로써 감독·검사 자료로 활용되며, 비계량평가 결과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운영위험액 산정 시 가중 또는 경감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표 III-25〉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기본구조 및 활용



자료 : 금융감독원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감독 공조 강화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금융당국은 2009년 12월 8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RAMS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이번 RAMS 개선방안은 위험평가대상 범위의 명확화, 금융투자회사의 위험수준 변화에 대한 판별능력의 개선, 금융투자회사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원활한 정착 촉진 및 파생상품과 유동성위험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의 상대적인 고위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의무평가대상인 투자매매업 외에 여타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회사도 평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현행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위험평가제도는 총자산(투자자예탁금 제외)이 1,000억원 이상이며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추가되는 평가대상회사로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이며 장내파생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이 포함된다. 다만, 추가평가대상 회사는 분기별로 평가를 함으로써 위험수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현재로는 추가평가 대상회사가 없으나 향후 자산규모 확대에 따라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26〉

위험평가대상 변경내용

	'08.6~'09.7월	'09.8월~현재	향후
위험평가 대상	모든 증권회사	의무 평가대상	· 의무평가대상(월별) · 추가평가대상(분기별)

자료 : 금융감독원

또한, 급변하는 금융투자 산업의 특성을 반영·평가하기 위해 최근 5개년 자료를 토대로 계량평가지표(위험규모) 등급 구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연도 자료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근 상황 변화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PF자산 등 부실화 진행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 변화 참고지표가 도입된다. 한편, 비계량평가항목 개선과 관련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 평가 신설 및 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 강화, 유동성위험 관리 강화, 위기상황분석 강화,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평가 강화, 위험통제구조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원활한 정착과 파생상품 및 유동성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적절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파생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한도 및 유동성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위기상황분석 방법 및 절차가 마련되었고, 내부자본의 적정성 평가, 손실한도·투자한도 설정 등 위기상황분석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는지의 여부 등도 평가하게 된다. 위험관리위원회의 활성화 수준 및 위험관리전담임원(CRO) 지위의 안정성 여부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번 개편된 위험평가제도는 2010년 3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하여 위험평가가 실시된다.

3) 시사점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RAMS의 운영으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규제 중심(rule-based)에서 리스크 중심(risk-based)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초 인프라

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RAMS 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리스크 중심의 경영 마인드가 더욱 확산되어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펀드산업 관련 각종 제도개편

1) 배경

2009년 중 펀드 투자자보호 기반을 확충하고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펀드산업 관련 각종 제도가 개편되었다. 특히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펀드 발행공시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표 Ⅲ-27〉 참조), 그 중 공모펀드의 약관보고제도가 펀드신고서 제도로 전환된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상 펀드에 대한 감독은 투자신탁약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투자위험요소나 투자위험등급 등 투자자보호의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펀드내용을 충분히 공시하고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을 강화한 펀드신고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표 Ⅲ-27〉 펀드 발행공시 관련 제도 변경 내용

구 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본시장법
신규펀드 등록	투자신탁 : 보고제(사전·사후) 투자회사 : 등록제(사후)	등록제(사후)로 일원화
공모펀드의 발행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펀드신고서 제출 의무화
투자설명서	사전 제공 의무화	현행과 같음
투자권유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설명 의무, 부당권유금지 외에 고객숙지의무, 적합성원칙 등

자료 : 금융감독원

또한,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2009년 7월) 및 판매회사이동 제도(2010년 1월)가 도입되었다. 기존 특정 펀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경우 모든 판매회사가 동일하고, 펀드투자자가 펀드가입 이후 투자자가 판매회사 변경을 원하는 경우 환매 후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하며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의 부담을 지어야 했다. 이는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판매회사 간 경쟁축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방법이 우편발송 위주로 선택됨으로써 비용·시간의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투자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제공 방법을 선택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가능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법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2) 주요 내용

가. 펀드판매신고서 제도 시행

펀드신고서 제도의 도입에 앞서 2009년 1월 펀드신고서의 서식과 관련한 법규가 서식을 단일화하고 서식종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집합투자업자가 공모펀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펀드등록 → 펀드신고서 제출 → 투자설명서 제출」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서식 작성의 편의성 제고와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등록신청서, 펀드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을 통일하여 단일화했다. 또한 펀드신고서 서식은 신탁형과 회사형 두 종류를 기본형으로 하고, 모집방식(개방형·추가형, 폐쇄형·단위형) 및 펀드종류에 따라 기본형의 서식에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이미 설정·운용 중이었던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 등록 및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펀드정보에 대한 일괄 공시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및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제도는 우선적으로 2009년 7월부터 판매회사의 수수료에 대해서 시행되었으며, 향후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과 결합된 수수료에 대해서도 차등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제도의 도입으로 펀드신고서에 수수료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융

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방법 개선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은 전자우편·직접교부·우편발송 중 하나를 투자자가 반드시 스스로 선택하고,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시공시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는 전체보고서와 요약보고서로 구분하여 각각 1년, 분기별 단위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특히 요약보고서는 내용을 현행 보고서보다 축소하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의 종류 등을 새로 정비하였다.

3) 시사점

펀드신고서 제도의 도입으로 자산운용사에 허위기재·부실기재 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펀드공시의 충실성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는 공시된 펀드 투자정보를 투자 판단자료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투자책임도 강화되었다. 또한 펀드 신고서 부실기재·허위기재 등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등이 가능해져 펀드 심사 기능이 강화되었다.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고객숙지의무(know-your-customer-rule) 및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어 투자자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펀드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되고, 투자자가 수수료 비용부담 없이 판매회사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판매회사별 경쟁체제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판매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자발적인 보수·수수료인하 여건의 조성 등 투자자 편익이 증대되고 펀드 판매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펀드산업 발전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산운용보고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펀드투자에 따른 투자수익 등 투자 상황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의 폭을 확대하여 보다 정확한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 한국 증시의 FTSE지수 편입

1) 배경

FTSE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와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국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FTSE 지수는 각국 주식시장을 선진국시장(Dveloped), 준선진국시장(Advanced Emerging) 및 신흥국시장(Secondary Emerging)으로 분류하는데 국내 증시는 준선진국시장에 분류되고 있었으나 2004년 9월 선진국시장 편입을 위해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었다.

2)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2004년 FTSE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었던 이후 FTSE 주가지수위원회는 2005년과 2007년에 장외거래 허용요건 완화, 외환시장의 추가적인 자유화 및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이용의 편의성 제고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결정을 연기하였다.

이후 국내 증권시장은 FTSE 선진시장 미충족 요건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증권 투자·매매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국제투자자에 대한 홍보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08년 9월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정되고 2009년 9월 정식으로 선진국시장으로 분류되었다.

한국거래소 및 국내 증권사들은 FTSE 선진국시장 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액이 적게는 80억 달러에서 많게는 18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실제로 선진국지수 편입과 더불어 국내의 빠른 경기회복세 등으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자금 유입이 2009년 7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외국인 순매수액은 상반기 6.3조원에서 하반기에는 15.6조원으로 급증하였으며 KOSPI 변동성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2009년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규모가 7개 아시아 신흥국(한국, 대만,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컸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III-28〉

아시아 주요국 외국인 주식 순매수

(단위 : 백만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한 국	△29,417	△33,377	24,836	16,420
대 만	2,594	△15,120	14,676	10,494
인 도	17,236	△12,920	17,227	12,202
태 국	1,570	△4,770	1,121	530
필 리 핀	1,253	△1,102	415	168
인도네시아	3,581	1,249	1,300	815
베 트 남	1,424	361	183	150
합 계	△1,760	△65,678	59,757	40,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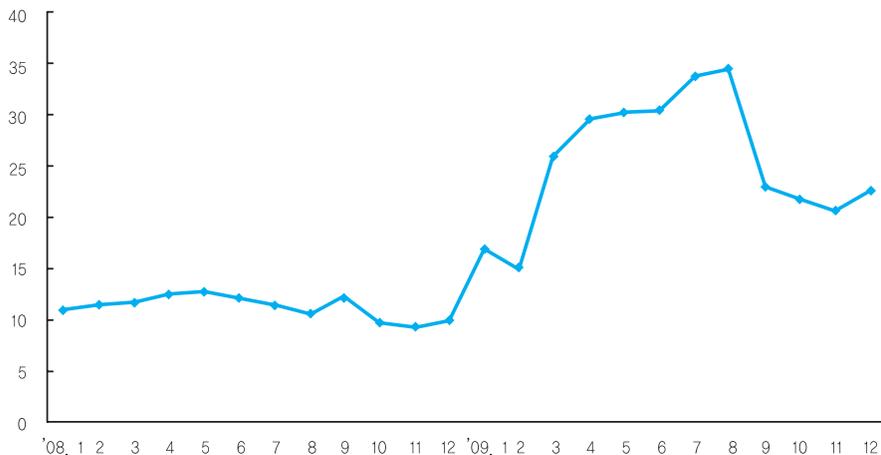
자료 : 국제금융센터

또한 지수 편입에 따라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시장 전반과 개별 상장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수 편입 전 국내 증시의 경우 최근 브라질·인도 등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의 자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신흥시장으로서의 프리미엄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FTSE 신흥국시장지수 내 한국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으며 외국인 자금유입 확대에도 한계를 드러

〈그림 III-21〉

KOSPI 주가수익비율

(단위 : 배)



자료 : Bloomberg

내고 있었다.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시 신용경색이 나타나자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높은 국내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매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미 수익구조가 선진화되어 안정적인 수익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고위험-고수익 투자성향을 보이는 신흥시장 투자자들의 투자패턴에 맞지 않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치 저평가)’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2009년초 동유럽 발 금융위기 발생 우려 등으로 국내 증시의 가치 저평가가 심화되어 국내 증시 주가수익비율이 크게 하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FTSE 선진국지수 편입으로 인해 신흥시장국의 리스크 요인들이 감소하면서 하반기 이후 국내 증시 주가수익비율은 8월중 34배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3) 시사점

우리나라 증시가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자금에서 선진국시장 포트폴리오 자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질적 변화 및 양적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성향이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기존의 신흥시장 투자자금을 대체하여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본이 장기화되고 주가변동성도 하락하는 등 증시의 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 및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약,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및 반경쟁적인 시장 요소 등을 이유로 MSCI²⁸⁾가 국내 증시를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가운데 FTSE의 국내 증시 선진지수 편입 결정은 향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의 FTSE 선진지수 편입은 시장의 안정성 강화, 장기투자 성향 확대에 따른 수요기반 확충 및 가치저평가 현상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동시에 새로운 투자자 및 새로운 경쟁시장의 출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및 회계·공시·기업 지배구조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부

28)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MSCI) Barra는 세계 증시의 각종 종합 지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FTSE 지수와 함께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지수로 사용된다. MSCI EAFE(Europe, Australasia, Far East) 지수의 경우 선진 21개국 증시를 종합하는 반면 우리나라 증시가 포함되어 있는 MSCI Emerging Market 지수는 22개 신흥시장국의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한다.

문에서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2010년에 예정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해외 투자자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주식 공매도 및 사이드카 제도 개선

1) 배경

2009년도 주식시장 거래제도 상의 주요 변화로는 주가의 급격한 하락과 투기적인 매도세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코스닥시장 사이드카(side-car) 제도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빠르게 확산되자 미국, 영국, 호주 및 대만 등 각국 금융감독 당국들은 투기적인 공매도로 인한 과도한 주가 하락과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 규제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08년 10월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였다.

사이드카는 코스닥시장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주식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의 급등락이 지속될 때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시장상황에 휩쓸려 주식을 대량 매수 혹은 매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교란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중 코스닥시장에서 1~3건의 선물계약에 의해 7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코스닥 스타지수선물의 유동성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사이드카가 쉽게 발동되어 사이드카의 시장에 대한 경고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 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7월 사이드카 발동 요건을 개정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주식 공매도

2008년 10월 차입공매도 금지 이후 금융감독 당국은 2009년 2월에 모든 차입공매도에 대한 결제가능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주식관련채권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3월에는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공매도 확인 방법

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중개업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해 매도자의 차입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매도를 하지 않는 투자자 거래의 편의를 돕기 위해 미실행확인서(long sell confirmation)의 제출로 증권사의 확인 의무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결제일에 결제부족이 있는 거래에 대해 공매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투자자의 경우 30일간 해당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 수탁 시 차입계약 체결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09년 4월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공매도 허용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한 2008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였던 국가들이 증시 안정화 차원에서 공매도를 재허용하거나 관련 거래 제한조치를 해제하자 국내 당국은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허용하였다.

나. 사이드카 제도

기존에는 KOSPI200선물의 경우 선물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코스닥 스타선물은 가격이 기준가 대비 6% 이상 급등 또는 급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6% 이상 변동된 상태에서 선물거래대상지수가 3% 이상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는 최근 사이드카 발동 당시 보였던 코스닥 스타지수 현·선물의 등락률 3%를 감안한 것으로 선물가격의 변동뿐만 아니라 대상지수인 코스닥 스타현물지수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선물가격 변동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3) 시사점

공매도 제한은 국제금융위기에 따라 발생할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된 조치였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의 시

장 유동성을 제약하고 가격발견기능을 약화시키며 외국인투자자들의 접근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국내외 여건이 개선되어 공매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게 됨에 따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고 버블 형성이 억제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 사이드카의 경우 제도 개선 이후에도 몇 건의 계약에 의해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결국 사이드카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코스닥 선물시장의 유동성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선물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다면 몇 건의 거래로 인해 가격이 급변동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6. 코스닥시장 신주인수권증권 개설과 기업인수목적회사 도입

1) 배경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신주인수권증권과 채권을 분리(strip)하여 상장·유통시킬 수 있다. 아울러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 청약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유통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경우 신주인수권 관련 유통시장의 미비로 코스닥 상장기업 및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009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을 개설하였다.

한편 2009년 9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rporation; SPAC) 제도 도입이 포함되었다. SPAC는 공신력 있는 M&A 전문가·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Paper Company)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는 명목회사를 공모(IPO) 후 거래소에 상장하여 M&A 자금을 마련하고, 일정기간 내에 다른 기업(비상장 기업 포함)을 M&A하여 해당 기업의 가치증대로 인한 이익을 투자수익으로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만약 투자자금을 예치·신탁한 상태에서 약정 기간내 M&A를 실패할 경우 투자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SPAC는 레버지리가 낮아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위험이 낮고 투자자보호가 잘 되어 있으며 IPO, M&A 시장 등을 활성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제도 변화의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가. 코스닥시장 신주인수권증권시장 개설

신주인수권증권 및 증서의 공통적인 상장요건은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으로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상장증권수는 액면가 5천원 기준으로 발행총수가 1만증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권리행사기간과 발행방식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증서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잔존 권리행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신주인수권부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해 발행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거래가능 기간이 5일 이상이며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든 주주에게 증서를 발행한다. 또한,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매매 시 지정호가만 허용하며 레버리지가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았다.

신주인수권 상장 폐지는 해당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경우 이루어진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 시 상장이 폐지되고,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청약개시일 5일전 또는 공익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인수권 상장이 폐지된다.

나. 기업인수목적회사 도입

SPAC 제도는 회사설립 → IPO → 상장 → 합병 → 합병 후 대상회사 존속의 사업단계를 거치게 된다. SPAC는 별도의 인허가·등록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며,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증권사) 1인 이상의 참여(대표발기인)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금융투자회사를 참여시켜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금융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등의 발행금액은 총발행금액의 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III-22〉

SPAC의 개념



IPO는 일반 증권신고서에 추가로 SPAC의 특수한 요건을 기재한 별도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SPAC 스폰서 또는 경영진의 부당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IPO 전 M&A 대상으로 특정 회사를 지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환금성면에서 제약을 받지 않도록 IPO 후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신탁)하고, 예치된 자금 운용을 국공채 등 위험이 낮은 증권 투자로 한정하여 투자자금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상장 시에는 기업규모, 분사요건 등의 기본 요건 및 투자자 보호,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 질적 기준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상장 이후에도 정관 변경, 경영진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업결합 방식은 합병으로 제한하고 기업결합 시한은 IPO 이후 최대 36개월 이내로 제한하며 합병 실패 시에는 SPAC을 해산한다. 기업결합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스폰서·경영진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반면 기업결합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한계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제한하여 SPAC 제도가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이나 상장기업의 퇴출 모면행위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국내 SPAC 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SPAC 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특징이 있다. 일반 주식회사 취급, 공모자금 예치, 현금 전환청구권 기업결합시한, IPO 전 합병 대상회사 지정 금지, 지분매각 제한 및 SPAC의 특별 상장요건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 SPAC 기본 구조는 미국과 동일하다. 다만 국내 M&A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점을 반영하여 미국 SPAC 제도보다 스폰서 및 임원의 요건, 투자자보호 기재사항, 공시요건 및 지분취득 방식 제한 등은 강화하였다.

3) 시사점

코스닥시장에서의 신주인수권증권 시장 개설은 투자자의 기회 확대, 기업의 자금조달원 확충 및 장내화를 통한 관련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증권과 같은 콜옵션(call option)은 주가 상승기에 시세차익으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주가 하락 시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며 행사 기간이 만료되면 가치가 소멸하는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아울러 SPAC 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본조달은 물론 경영권 위협에서 보다 안전한 지분구조가 형성·정착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업은 SPAC과의 합병을 통해 IPO·유상증자 투자자 모집·기타 각종 절차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자본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공모를 통해 분산된 투자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SPAC와의 우호적 M&A 시행으로 경영권과 무관한 다양한 기업 주주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는 SPAC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리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 이전에는 SPAC의 주식 매각을 통해, M&A 이후에는 상장기업의 주식 매각을 통해 투자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으며, M&A 실패 시에도 예탁 투자자금이 반환되어 안정적인 투자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SPAC이 발행주식 총액의 최소 5%를 투자해야 하는 규정을 통해 투자자와의 이해관계 대립여지를 줄임으로써 대리인의 모럴 해저드를 완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올바른 SPAC 제도의 운영은 IPO 인수 업무 및 M&A 자문 업무, 직접투자(PI) 업무 등의 투자은행업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및 기업가치 제고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의 SPAC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은 우려된다. SPAC 주가는 증권의 성격상 기업인수 전에는 공모가 수준으로 회귀하는 성향을 띠는데, 주가가 급등할수록 효율적 기업인수 가능성은 낮아지고 SPAC 투자가 투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거래소 해외협력 및 외국기업 국내 상장 확대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 개설〉

1) 배경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의 거래소를 중심으로 국가 및 대륙 간 거래소들의 업무제휴가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 거래소들의 아시아 증권시장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NYSE Euronext는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와 거래시스템, 투자자 및 발행관련 서비스, 투자상품 규정 등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아시아 증권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CME는 1984년 싱가포르거래소와 연계거래를 실시하였으며 1992년 Globex를 개발하여 시간적·지역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주요 파생상품시장에서 24시간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아시아 거래소 간의 업무제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JASDAQ은 중국의 심천거래소와 상장지수펀드(ETFs)의 교차상장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싱가포르거래소는 봄베이거래소의 지분 5%를 인수하여 거래소 간 업무제휴를 강화하였다.

2) 주요 내용

KRX는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의 서울 통신허브를 설치하여 코스피200선물에 대한 글로벌시장의 투자자를 위한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하였다. KRX는 투자자들에게 24시간 위험관리 및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유동성 제고를 통한 코스피200선물 및 한국거래소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24시간 거래체제를 추진하여 왔다. KRX는 2006년부터 전 세계 88개국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24시간 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ME그룹과 연계거래를 위한 접촉을 시작하였다. 2008년 연계거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4월에는 CME의 24시간 전자시스템 Globex, 즉, 서울 통신허브를 설치함으로써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이 개설되었다.

Globex는 “Global Exchange”의 합성어로 CME가 운영하는 24시간 전자거래시스템으로서, 1992년 로이터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정규시장 거래 종료 후 시간

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Globex 시스템은 2002년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시간외 에너지상품 거래를 취급하였고 2003년에는 CBOT 상품에 대한 청산·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CME와 CBOT 간 합병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CME는 Globex 시스템의 확산 및 전산거래의 빠른 정착을 위해 사용 수수료를 인하하고 다양한 종류의 파생상품을 단일시스템에서 제공하여 거래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세계 최초로 24시간 거래 시스템의 도입 및 다양한 접속수단의 제공을 통해 시간·장소에 상관없는 손쉬운 거래환경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CME 전체 거래량의 약 80%가 Globex를 통한 거래로서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세계 88개국 투자자들이 접속하는 대표적인 글로벌시스템으로 정착하였다.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하는 해외 연계거래 시장으로서 KRX 정규시장 종료 후(17:00~익일 06:00) 코스피200선물을 거래하며 국내법과 KRX 규정이 적용되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이다. 매매체결은 Globex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청산·결제 및 불공정거래 감시 등 매매체결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KRX가 담당한다. 국내투자자들은 KRX 회원사에 계좌를 개설해야만 글로벌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CME 회원사에 개설한 계좌로는 거래할 수 없다.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의 과도한 가격 변동이 국내 정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제한폭, 호가수량한도, 지정호가 및 접속거래 제한 등은 정규시장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서울 통신허브 설치로 국내 투자자 및 회원사가 언제든지 CME Data 센터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서울 허브를 통해 거래할 경우 주문 또는 시세정보 처리 지연이 대폭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아시아지역 허브인 싱가포르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주문 및 시세정보의 처리시간이 0.1초 가량 단축되어 국내 투자자는 보다 빠른 통신환경에서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울 통신허브 설치로 인하여 코스피200선물 이외에 CME의 다른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투자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시사점

외국 주요 거래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KRX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각국 거래소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CME 서울 통신허브는 CME의 전 세계 통신허브로서 암스테르담·더블린·런던·파리·밀란·싱가포르·상파울로에 이어 세계 여덟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이다. KRX는 CME와의 연계를 통한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내파생상품시장의 국제적인 관심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CME 서울 통신허브 설치에 따라 런던, 미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이 야간에도 시차에 따른 지연 없이 거래되어 위험관리의 효율성과 거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거래시간이 확대되고 해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용이해짐에 따라 코스피200선물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기업 KRX 상장 확대〉

1) 배경

증권거래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 주요 거래소들은 외국기업의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국내거래소 상장유치는 국내 투자자의 편익 제고와 함께 거래소의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데, 증권투자자들에게 국내주식 투자에 국한되는 경우에 비해 외국주식에까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래소도 국내 투자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 주요기업의 상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주요 거래소들은 외국기업 상장에 노력한 결과 거래소 상장기업 중 외국기업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NYSE Euronext(US)와 NYSE Euronext(Europe)의 외국기업 비중은 각각 15.6%와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London Stock Exchange는 22.0%에 달하고 있다. 특히, Singapore 거래소의 외국기업 비중은 40.6%로서 주요 거래소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KRX의 외국기업 비중은 0.6%로서 매우 낮아 향후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장 유치가 적극 필요한 상황이다.

〈표 III-29〉 주요 거래소 외국기업 상장 현황(2009년말)

거래소	상장회사 수	외국회사 수	외국회사 비중(%)
NYSE Euronext(US)	3,164	495	15.6
NYSE Euronext(Europe)	1,160	170	14.7
NASDAQ OMX	2,852	283	9.9
London Stock Exchange	2,792	613	22.0
Deutsche Börse	783	79	10.1
Tokyo Stock Exchange	2,335	15	0.6
Hong Kong Exchange	1,319	11	0.8
Singapore Exchange	773	314	40.6
Taiwan Stock Exchange	755	14	1.9
Korea Exchange	1,788	10	0.6

자료 : World Federation of Exchange

2) 주요 내용

2007년 8월에 중국회사인 3노드디지털이 KRX에 외국기업으로서 최초 상장된 이후 2008년까지 3개사가 추가로 상장되었고 2009년에는 6개사가 신규로 상장되었다. 2009년말 현재 KRX에 상장된 10개 외국기업은 중국회사 8개, 일본회사 1개, 케이만 회사 1개 등으로 중국기업의 편중현상이 크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인접한 국가로서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반면, 중국 금융시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비해 발전수준이 낮다. 따라서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중국기업의 KRX 상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KRX는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장유치에 노력하여 상장유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KRX는 2009년 5월에 중국의 심천과 북경에서 KRX 상장을 추진하였고 해외상장에 관심이 있는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증권시장 소개 및 상장 안내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증권회사 및 중국법무법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KRX 상장요건 및 상장절차, 중국기업 해외상장 시의 주의사항 등 KRX 증권시장 상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표 III-30〉

KRX 외국기업 상장 현황

상 장 일	회 사 명	시 장 구 분	국 가
'07년 8월 17일	3 노 드 디 지 탈	코 스 닥	중 국
'07년 11월 26일	화 풍 집 단	유가증권	중 국
'08년 1월 29일	코 웰 리 홀 디 스텍	코 스 닥	중 국
'08년 12월 4일	연 합 과 기	유가증권	중 국
'09년 3월 27일	중 국 식 품 포 장	코 스 닥	중 국
'09년 4월 24일	네 프 로 아 이 티	코 스 닥	일 본
'09년 5월 22일	중 국 원 양 자 원	유가증권	중 국
'09년 5월 29일	차이나그레이트스타	코 스 닥	중 국
'09년 12월 4일	중 국 엔 진 집 단	유가증권	중 국
'09년 12월 23일	G S M T	코 스 닥	케이만

자료 : 한국거래소

3) 시사점

선진국의 주요 거래소들은 제도적 편의성, 높은 유동성 및 투자자 보호제도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거래소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KRX도 해외 상장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KRX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지도가 낮아 아시아 지역의 주요 거래소에 비해 외국기업의 상장 비중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인접국이라는 이점을 적극 활용할 경우 KRX에 의한 중국기업의 국내 상장 노력은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국내투자자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취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중국기업이 미국 및 유럽 국가의 기업에 비해 정보취득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KRX가 중국 등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된 규모요건, 재무기준 및 공시원칙 등의 규정을 개선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장된 외국기업의 기업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등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8.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1) 배경

지난 20년간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간에 증권시장의 청산 및 결제 업무 분장에 관한 이견으로 청산 및 결제 업무의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어 왔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청산 및 결제 업무와 관련된 법제가 정비되었으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랜 논의를 거쳐 2006년과 2008년에 청산 및 결제에 관한 합의와 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청산 및 결제제도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9년 11월 30일에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국내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증권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은 201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은 증권시장의 조기결제가 가능하도록 장내 및 장외 증권 결제방식의 변경, 결제개시시점의 조기화 및 장내주식의 이연결제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국채, 정부보증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의 매매 거래 결제에 필요한 일중유동성을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방안도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내주식시장의 대금결제은행을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안과 결제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에 교환할 결제정보의 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증권시장의 조기결제를 위한 증권결제방식의 변경은 장내주식 결제 부문과 장내국채 및 Repo 결제 부문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장내주식의 결제개시시점은 현행 16시에서 15시로 앞당겨지며 주식기관결제는 현행 회원별·종목별로 차감하는 증권결제를 건별 결제로 변경하여 장내외 연계결제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장내국채 및 Repo 거래에서 증권결제의 경우 종목별 차감결제, 대금결제의 경우 모든 종목의 대금 간에 차감결제가 16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화 방

안에서는 장내국채는 증권 및 대금 모두 종목별 차감결제방식, 장내 Repo는 증권 및 대금의 실시간 건별 총액결제방식으로 변경하며 결제개시시점은 조기화할 계획이다. 다만, 채권기관결제에서는 증권 및 대금을 건별 총액결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장내국채 및 Repo 결제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기관투자자의 결제특성에 부합하고 장외국채 결제방식과 조화되는 결제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장내국채 및 Repo 거래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31〉 증권결제방식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방안
장내주식	- 결제시한(16:00) 이후에 결제	- 결제개시시점 조기화
주식기관	- 증권은 종목별로,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 결제	- 증권은 건별로,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 결제
장내국채 /Repo	- 결제시한(16:00) 이후에 결제	- 결제개시시점 조기화
	- 증권은 종목별로, 대금은 모든 종목의 대금 간에 차감 결제	- 국채 : 증권/대금 모두 종목별로 차감결제 - Repo : 차감없이 매매건별로 결제
채권기관	- 증권 및 대금을 건별 총액으로 결제	(현행과 같음)

또한,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채권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증권회사 및 거래소(“증권회사 등”)를 대상으로 건당 거래금액 및 결제금액이 큰 장내국채·장외국채의 결제에 필요한 일중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증권회사 등의 거래은행을 통한 간접 Repo 방식(back-to-back Repo)에 의하여 증권회사 등에게 일중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는, 한국은행은 국채 Repo에 의해 시중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함과 동시에 시중은행도 국채 Repo에 의해 증권회사 등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장내주식시장의 이연결제제도(Continuous Net Settlement: CNS)는 미결제증권을 익일로 이연하여 차감 결제하는 제도로서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제시한인 16시까지 일부 증권이 미납된 경우 미납수량의 납부완료 시까지 수령회원에 대한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CNS가 도입되면 결제시한(16시)까지 납부한 증권을

즉시 수령회원에게 인도하고 미납된 증권은 익일 결제증권과 차감하여 익일에 결제되어 결제시한에 증권수령 여부가 조기 확정되므로 수령회원의 자산운용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CNS 도입 시에는 증권 미납부가 최소화되도록 증권 미납부 회원에 대한 결제지연손해금 징수 및 지연수령회원에 대한 지급, 증권대차 활성화 및 거래소에 의한 증권조달기능 강화 등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3) 시사점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의 시행에 따라 증권결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이 제고되고 결제 참가자의 결제 편의성 향상 및 증권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결제개시시점의 조기화 및 장내주식의 이연결제제도 도입 등으로 증권 거래의 조기결제 관행이 정착되고 결제지연현상이 해소되며, 한국은행의 일중유동성 지원과 이연결제제도 도입으로 결제위험 감소 등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권시장 결제제도의 선진화로 결제비용의 절감과 결제 업무 효율성의 향상으로 결제참가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며 주요 선진국에 버금가는 효율적인 증권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내 증권시장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9.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면세

1) 배경

2009년 2월 동유럽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도가 발생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동유럽에서 서유럽을 거쳐 미국 및 아시아로 파급되면서 실물경기 침체 가속화로 인한 소비부진과 함께 기업실적 악화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9년 2월 26일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경제 위협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근거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선안은 외화유동성 확충, 글로벌 정책공조, 대외신인도 유지 및 경상수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해서는 해외차입·채권발행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정부보증을 활용한 은행의 해외차입 및 공기업의 해외채권발행 등 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독려함과 아울러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상·하반기 1회 이상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고 민간부문 후속 발행을 연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외화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의 국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한편 기업·외국인·재외동포 등으로부터 외화예금 및 펀드투자를 위한 외화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 주요 내용

정부의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외국인의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 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 및 채권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면제조치가 이루어졌다.

〈표 III-32〉 외국인 채권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 내용

제도개선 전	개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 국채투자자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 비거주자 채권 양도차익에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 채권 양도차익 비과세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확대를 위해 제시된 동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조치는 과세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과세시스템은 국채투자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2009년 2월 현재 OECD 30개 회원국 중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태리·스페인 및 아일랜드 등 14개국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자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왔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이한 과세시스템으로 한국 국채는 대표적인 글로벌 정부채권 투자지표인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미편입되어 왔고,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왔다. WGBI는 23개국 정부채권으로 구성된 지수로 Citigroup의 글로벌 투자지표이며 우리나라는 한 단계 아래인 Additional Market Index에 등재되어 있다.

〈표 III-33〉 기존 외국인 국내채권투자 과세제도

	구 분	세 율
이자소득원천징수세	조세협약체결국	0%~15%
	조세협약미체결국	14%
양도소득세	총매각액의 10% 또는 순매매차익의 20% 중 적은 액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의 0.3%	

〈표 III-34〉 WGBI 구성국가 및 편입 요건

구 성 국 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편 입 요 건	3대 편입요건을 3개월 연속 만족 시 해당 분기말에 신규 편입 1.규모 : 최소 200억 달러 이상 규모(유로존 제외) 2.신용 : BBB-(S&P) or Baa3(Moody's) 이상 투자적격만 가능. 투자부적격으로 하향 시 제외 및 Additional Market Index로 강등 3.진입장벽 : 외국인 투자유인 제고 정책의 공식화 및 실제 반영. 시가총액이 진입 시점의 절반 이하로 3개월 연속 이어지면 다음달에 제외 및 Additional Market Index로 강등

자료 : Citigroup, SK증권

또한 외국인(비거주자)이 우리나라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에 따른 제도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2009년 4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21일 개정 법률을 공포 및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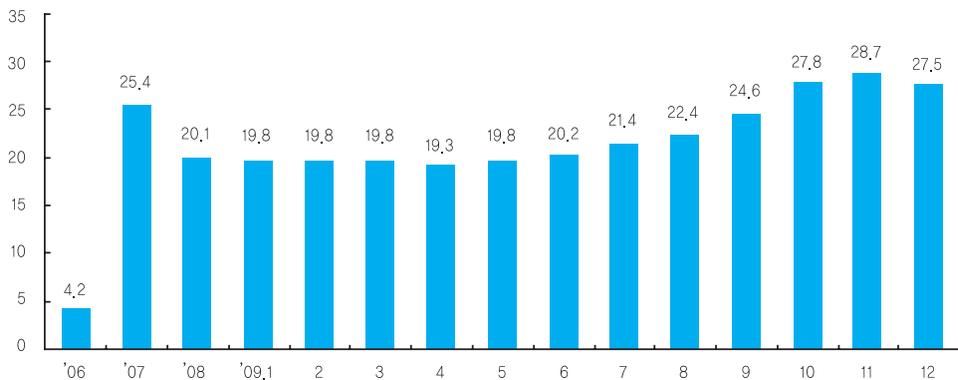
3) 시사점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조치 이후 WGBI 편입요건(규모, 신용도, 진입장벽)이 충족되고 외국인의 국채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시스템 변경으로 외국인의 국채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특히 우리나라 국채의 WGBI 편입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중장기 국채 투자가 증가하였다. 동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9년 5월 이후 외국인의 국채보유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자본시장개방(1994) 이후 최고치(2009년 11월말 28.7조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진 채권투자지수 편입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WGBI에 편입될 경우 100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III-23〉

외국인 보유 국채잔액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

최근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주로 무위험차익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후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차익거래 유인이 한층 커져 외국인의 채권투자 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은 스왑스프레드만큼의 무위험 차익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채권투자 유입이 계속된다면 외화유동성 여건이 개선되면서 무위험차익 기회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면세조치로 외국인 채권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외환부문에서 대외적인 취약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보유액이 증가하고 이들 자금이 일시에 유출되면서 외화유동성 여건을 악화시켰던 것처럼 채권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증가가 외환취약성의 증가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하나로 가령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10. 파생상품시장 감독방안 마련

1) 배경

2008년 하반기에 들어서며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파생상품이 지목되면서 많은 이슈와 논란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파생상품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지목되었던 문제는 대외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부실이 신용파생상품 거래와 동반된 유동화 과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시스템 위기로 증폭되는 문제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환위험 헤지를 위해 외환시장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인 KIKO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이나 파생·역외 펀드 투자자가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으로 큰 피해에 직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파생상품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논란들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파생상품시장의 감독 문제에 대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파생상품관련 금융이슈들은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금융혁신과 함께 진화·성장하는 파생상품을 감독역량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금융선진국에서도 규제 및 감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과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은 관계기관들과의 협의하에 2008년 중반부터 종합적인 파생상품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시작하였다. 2008년 12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하였고 2009년 동안 구체적인 세부실천 과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였다.

2) 주요 내용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관련된 감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고려된 주요 내용은 파생상품시장의 ① 모니터링 강화, ② 투자자 보호, ③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및 ④ 감독기구 기능 재정립 등 4개 분야였다. 4개 분야의 개선을 감독 방안 마련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50여개에 이르는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모니터링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파생시장의 리스크 전이과정별(개별거래 리스크→시스템리스크) 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파생상품시장 관련 정보취합 및 해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정보취합단계의 목표는 상황별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취합하는 정보를 세분화하는 것이며 정보해석단계에서는 취합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중요도 기준'에 따른 취합수준·빈도 차등화를 통해 정보취합·분류에 소모되는 감독자원을 최소화하고 파생정보 DB 구축을 통한 추이분석·특화된 정보 추출, 민간 전문가 집단과의 정례 협의 및 리스크 조기 인지 지표 활용 등의 세부과제 실천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 강조되는 부분의 하나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파생상품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계획을 마련하였다. 즉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펀드 등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전달된 상태에서 투자자의 투자목적 및 위험 감수 능력 등에 맞는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① 파생상품 등의 개발·발행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②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판매책임을 강화하는 등 유통과 분쟁 단계에서 상품의 성격과 투자자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취급 한도 등 직접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 문제는 일단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은 보완 추진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파생시장에서 파생거래의 잠재 위험이 적절한 통제 없이 축적되어 위기 발생 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거나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위험 및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경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래인프라 체계 구축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 기구 및 자율규제 기구 기능의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포괄주의와 기능별 감독체계 등의 기본틀에 맞도록 개별회사, 자율규제기구 및 금융당국이 적절한 파생시장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확립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업권별 감독과 더불어 파생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여 이중의 감독체계를 통해 파생상품과 관련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파생상품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구조화상품 시장 감독에도 기능별 감독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감독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자율규제기구는 투자자 보호 등 자율적인 건전 거래질서의 유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제고 지원 및 시장모니터링과 관련된 조사분석 자료의 제공 등을 담당하여 금융감독당국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파생상품시장의 감독방안은 2009년 동안 각종 세부과제의 실행을 통해 이행되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이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전반적인 파생상품시장 감독방안이 마련된 이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감독원은 2009년 12월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전이를 과정별로 적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취합과 해석과정을 통해 거래상대방별 거래내역을 파악하여 개별거래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특정 상품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쏠림현상 판별 등을 통하여 시장시스템의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은 향후 파생상품관련 감독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사점

전반적으로 금번에 마련된 파생상품시장의 감독방안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동 방안은 금융위기 이후 논의되고 있는 국제조류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영국·미국 등 금융선진국이 고안하고 있는 해외사례와 비교해서도 방향설정 및 방법 면에서 오히려 한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지나친 감독이 국내 파생상품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파생상품시장 감독방안의 시행방안 중 하나인 신규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는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장참가자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파생상품시장 감독 방안은 시장을 일률적으로 규제·감독하여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별·상황별로 차별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시장 감독 방안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킨 이후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번 파생상품시장 감독방안에서 제시된 전체 실천방안의 시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투자자 보호,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및 감독 체계의 개편 등은 현재 파생상품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과 연결되어 실천되어야 되는 과제이다. 특히 투자자보호는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더불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의 하나로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 목표를 설정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국내 시장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장내시장에서 선물·옵션거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물환, ELS 등 장외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강화된 투자자보호 조치가 시장과 거래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투자자보호에 대해서는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여 개별 실천과제를 장기적으로 시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기조의 변화와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특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정착여부에 따른 미세조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FX마진거래 관련 규제 개선

1) 배경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는 국제 외국환 은행 사이의 거래를 온라인 시장에 접목해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24시간 매매가 가능하며 은행간 거래되는 현물환 거래의 계약 금액을 축소하여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에 손쉽게(HTS 등)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런 이점으로 인해 FX마진거래는 미국·일본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간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내시장에서는 FX마진거래의 급성장과 더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우선 FX마진거래의 주요 참가자인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으며 또한 개인투자자의 손실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FX마진거래와 관련된 법률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금융감독당국은 2009년 7월 FX마진거래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X마진거래 관련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2) 주요 내용

FX마진거래는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인기를 끌고 있는 금융거래이다. 전세계 FX마진거래는 1일 평균 3조 2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거래되어 그 규모가 전 세계 선물시장의 40배 이상이며 국내 주식시장의 약 400배에 달하고 있다. 국내시장의 경우 환변동성이 커진 2008년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동안 거래량이 2007년말 대비 594%가 증가하였고 2009년 5월까지의 계약금액이

〈표 III-35〉

FX마진 거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5월
거래현황(B)	12,822	77,277	653,815	4,538,244	3,614,604
개 인(A)	12,822	75,162	559,274	4,187,595	3,577,241
비 중(A/B)	100%	97%	85%	92%	99%

자료 : 금융감독원

2008년 전체 거래금액의 85%를 상회하는 361조원에 육박하였다. 또한 개인의 투자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09년 5월까지 개인투자비중이 99%에 육박하였다.

하지만 FX마진거래에서 투자자들이 입는 손실이 2007년 154억원, 2008년 467억원, 2009년 5월까지 455억원 등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 5월까지 개인투자자의 투자손실액이 전체의 98.7%인 449억원에 달하였고 전체 계좌의 90% 이상이 손실을 입었다. 이는 외환거래에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통화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개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소폭의 환율 변동 시에도 투자자금 대부분을 상실할 수 있는 FX마진거래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FX마진거래는 낮은 증거금 적용에 따라 로스컷(Loss-cut)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통화의 상대적인 환율 변동이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1~2%만 소폭 변동하더라도 강제로 반대매매를 통해 포지션이 청산된다.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관련시장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투자자금의 대부분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표 III-36〉 FX마진 거래로 인한 손실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5월
				1/4	2/4	3/4	4/4	
개 인	-16	-118	-489	-73	-69	-174	-173	-449
일반법인	-1	-36	22	14	29	-28	7	-6
합 계	-17	-154	-467	-59	-40	-202	-166	-455

자료 : 금융감독원

게다가 FX마진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도 증가하였다.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나 FX마진거래가 급증하였던 2008년 이후 수백명의 개인투자자가 해외 선물업자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사설업체가 FX마진거래를 가장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와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이용하여 무등록 불법 사설교육장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하는 등 위법 행위도 급증하였다.

FX마진거래의 높은 거래비용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투자자들은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해외 선물업자(FDM: Forex Dealer Member)가 제시하는

스프레드만큼 사전에 비용으로 지불하는 고비용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FX마진거래는 거래비용이 높다. 또한 해외 선물업자가 호가정보(각 호가별 매수/매도주문잔량 등)의 제공 없이 매수·매도(bid/ask)가격, 즉 스프레드만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투자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가격(스프레드)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

문제점을 인식한 정책당국은 2009년 7월 FX마진거래의 증거금률 인상 등 제도 개선과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개인 투자자의 FX마진거래 증가로 시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기존 2%의 증거금률을 5%로 조정하여 레버리지를 20배 이내로 축소하였다.

또한 금감원 검사와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FX마진거래 중개회사(선물회사 등)의 업무 현황 및 고객 모집 행위를 수시 점검하는 등 FX마진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세부적으로 ① FX마진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검사·모니터링을 강화하고 ② 불법 거래조직과 연계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한편 ③ 광고규제 강화 적용과 관련 규제의 정비 및 ④ 투자 권유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세부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증거금률 인상 및 감독 강화 조치와 더불어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발표하였다. 해외 선물업자가 제시하는 호가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통한 스프레드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선물회사가 복수 해외선물의 호가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0년 이후 추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① 불법 FX마진거래 중개 사이트 신고센터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의 협조를 통한 불법 FX마진거래와 관련된 외환 송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③ 해외 금융감독당국(미국 선물감독당국(CFTC) 등)과의 협조 강화를 통해 FX마진거래의 불법적인 급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3) 시사점

감독당국이 FX마진거래 제도 개선 및 감시 강화 정책을 내놓은 이후 FX마진거래는 월 평균 거래금액이 71.9조원에서 9월에는 32.3조원, 10월에는 30.9조원, 그리고 11월에는 31.0조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제도개선 이후 감시 강화

정책으로 국내 FX마진거래시장은 일시 축소됐지만 최근 선물업 인가를 취득한 증권사들이 장외 외환거래상품인 FX마진거래 서비스를 잇달아 시작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2010년 2월 현재 선물업 인가를 이미 취득한 증권사는 11개사에 이르는 등 기존 증권사의 선물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중 6개사는 이미 FX마진거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고 2~3개사도 곧 FX마진거래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FX마진시장의 경쟁심화가 예상되면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진화되고 있다. 기존 선물업자보다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더 용이한 일부 증권사들은 아직 FX마진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을 위해 차별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증가하는 것처럼 유럽 금융위기에 따라 유로화 등 일부 통화의 변동성이 높아지자 투기적 목적의 단타를 노리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FX마진거래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FX마진거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선물거래와는 달리 FX마진거래는 일반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이종 통화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투자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책당국과 함께 FX마진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부 금융투자회사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FX마진거래에 수반되는 투기적인 요소와 위험성을 강조하고 투자자의 특성에 맞는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FX마진거래 시장의 규모 및 손실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일반투자자의 손실확대 등의 징후가 발생할 경우 정책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장내 파생상품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배경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은 개설초기부터 KOSPI200 선물 및 옵션거래의 급성장을 기반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이 개인투자자 및 특정 종목에 치우친 비균형적 발전이었기 때문에 성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는 주식관련 선물·옵션 이외에 통화, 금리, 기타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을 통해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09년 동안에는 해외협력을 통한 파생상품시장의 국제화와 더불어 통화선물제도 개선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시장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선진화와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통화선물 제도 개선

한국거래소는 주식관련 선물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통화선물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동안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9년 상반기 가장 두드러진 제도 개선은 통화선물 거래단위를 축소하고 상장결제월 수를 추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기초자산 인수도부거래(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 및 맞춤형 상품(FLEX: Flexible Exchange) 제도 등도 도입하여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실질적으로 환위험 헤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입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KIKO사태 이후 환헤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기업이 장외파생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내 통화선물을 환변동성이 증대되었을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의의가 있다.

우선 상반기에 시행한 개선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통화선물의 거래단위(달러선물 : 5만달러, 유로선물 : 5만유로, 엔선물 : 5백만엔)는 그 규모를 1/5로 낮추어 거래단위가 달러선물 1만달러, 유로선물 1만유로, 엔선물 1백만엔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화선물의 미결제약정 수량이 5배, 거래수수료가 1/5로 조정되도록 하는 한편 최소(최대) 협의대량의 신청수량,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유지위탁증거금 및 계약당 최소증거금 등도 변화시켜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만기월(결제월) 수도 확대하여 시점별로 8개 결제월 종목(연속 6개월 및 분기물 2개)이 상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간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상장 결제월물 추가에 따라 통화선물 스프레드 종목도 5개에서 7개로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도 장내 통화선물시장에서 원하는 헤지규모 및 헤지기간에 적합한 보다 정밀한 헤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낮고 수출건당 규모가 작아(건당 5만달러 이하) 은행과 선물환 계약(건당 10~50만 달러 내외)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환헤지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기존에는 일정기간 수출입건을 합쳐서 한정된 선물 만기월에 맞추어 환헤지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소규모·단기적 환헤지도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하반기 중 한국거래소는 기초자산인수도부거래(EFP)제도를 도입하였다. EFP거래제도는 선물포지션과 이에 상응하는 현물포지션을 동시에 맞교환하는 협의매매방식의 거래제도로서 만기이전에도 실물인수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출입 기업 등 외환 실수요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이용할 경우 거래자가 원하는 시기에 실물인수도와 선물헤지포지션 해소가 동시에 일어나서 한 번의 거래로 장내와 장외거래의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FP 거래제도가 시장에 정착된다면 이를 통해 중소수출업체들이 보다 원활한 환위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ELW 시장의 제도개선

한국거래소는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ELW 시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국내 ELW시장은 2005년 12월 개설 이래 빠른 시간에 성장을 거듭하여 2009년 3월 2,518종목이 상장·거래되는 세계 3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ELW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콜워런트) 또는 팔 권리(풋워런트)가 부여된 자본시장 법상 파생결합증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8년 9월 일부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 역할을 수행했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ELW 발행사가 LP 보유 ELW를 이전 받지 못해 해당 ELW의 유통물량 감소와 더불어 유동성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에는 발행사로부터 ELW 유동성공급 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 LP가 파산할 경우 해당 LP가 보유한 ELW의 이전(LP→발행사) 거부 및 유동성공급의무 해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였다.

또한 투자자가 발행사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LP의 호가제출이 금지되는 등 건전성 기준이 매우 엄격하였다. 이에 따라 ELW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3자 LP의 파산 등 재무건전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원활한 유동성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발행사의 재무상황 공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발행사의 유동성공급 의무화 및 제3자 LP의 예외적 허용, ② ELW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제도 개선, ③ ELW 발행사 및 LP의 재무상황 공시 강화, ④ 유동성공급호가 최소 수량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시사점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통화관련 선물제도의 개선은 전반적으로 국내 중소 수출입기업의 환위험 헤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화선물의 활성화는 국내 선물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1~2년 정도의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러한 제도 개선을 다른 선물상품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LW시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경우 과거에 비해 ELW 시장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ELW 시장이 투자자에게 매력 있는 시장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제도 개선은 향후 ELW 시장의 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ELW 시장은 그 특성상 상당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1) 배경

2008년 9월 리먼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극심한 신용경색 및 해외 금융회사들의 자금회수 가속화 현상은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여건을 크게 악화시켰다. 2009년 들어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자금 유입 지속 및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자금사정 호전 등으로 국내 외환건전성 여건은 리먼사태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었으나 정책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외환건전성을 강화하여 금융위기 때 노출되었던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 정부는 FSB(금융안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 논의에 발 맞추어 금융안정위원회가 G20에 제출할 보고서에 ‘외환 건전성 감독 강화와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확보방안’을 의제로 포함시키기 위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외환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강화를 위해 업권별 감독규정 등에 많은 외환관련규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은행업 감독규정 제6장 2절(외환건전성 관리)에 명시된 외환건전성규제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규제(제63조 환율위험관리),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비율규제(제64조 유동성 위험관리), 중장기 외화대출재원관리 규제(제65조), 역외금융관리 규제(제66조) 및 금융기관 내부관리(제67조) 등 대략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현재 은행의 외화 자산·부채간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화유동성 비율(7일, 1개월, 3개월 단위)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율산정 시 자산의 유동화 가능성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자산이 언제든지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어 실제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7일갭 비율의 경우 엄격한 초단기 비율 관리에 따른 규제 준수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금번의 위기 과정에서 상당수의 금융회사가 외화유동성 부족을 정부의 지원 자금을 의존하여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향후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사태에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중장기재원/중장기 대출) 규제를 통해 은행권의 차입구조 장기화를 유도하였으나 비율을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이 낮고 ‘1년 이상’으로 증장기 개념을 규정하는 것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높은 환헤지 비율은 은행권 단기외채 차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는 펀드 투자자의 상품 선택의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2009년 11월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2) 주요 내용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외환부문의 취약 요인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향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정책당국은 2009년 11월 19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개별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정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외환 파생상품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증장기재원조달 비율 강화, 외화자산한도 규제 도입 및 합리적 환헤지 관행 유도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미 시행중인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2009년 9월)에 외화유동성 부문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함께 조기경보지표 설정 운영, 위기상황 시 자본유출 금액 추정 및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부 기업의 과도한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사회문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도 신설되었다. 과도한 환헤지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거래 대비 일정비율(최대 125%) 이상의 선물환 거래도 억제된다. 다만, 헤지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별로 리스크 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파생상품업무처리 모범규준’ 적용대상인 모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는 적용되나 비은행금융회사는 제외된다. 거래 상대방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뿐 아니라 전문투자자(단, 금융회사 제외)도 해당된다.

〈표 III-37〉

외환파생상품거래 적용 범위 및 내용

		기준 적용 여부	거래한도(실물거래 대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	100% 이내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기업투자자	○	100~125% 이내 ¹⁾
	금융회사	×	제한 없음

주 : 1) 기업별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100~125% 범위 내에서 거래 한도를 부여하되, 개별 건별로 은행 리스크 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비율 한도(100~125%)를 초과하여 거래 가능

이와 함께 앞으로는 외화자산의 신속한 회수가능성을 반영해 유동성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7일갭 비율의 경우 엄격한 초단기 비율 관리에 따른 규제 준수 비용이 과다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0%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키로 하였으며,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는 종전 모두 100%에서 자산유형별로 35~100%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자산유형별 가중치는 영국 금융감독청(FSA) 등 국제통용기준 및 규제 준수 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하였다. 또한 위기 시 외화자금 유출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화 안전 자산 보유 최저한도도 의무화된다. 안전자산의 기준은 A등급 이상 국공채와 A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예치금, A등급 이상 회사채(제도 정착 추이를 보아 단계적 제외 검토) 등이다. 다만 보유한도 설정 시 금융회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1년 내 만기도래 차입금 × 2/12 × (1-최저차환율)'과 '총 외화자산 대비 일정 비율(우선 2%로 시행하되 시행경과를 보아가며 상향조정 검토) 이상' 중 선택해서 적용하면 된다. 적용대상은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과 같이 근거법상 정부 손실보전이 명시되어 있고 정부관련 지분이 90% 이상인 은행은 안전자산 보유 의무를 면제하였다. 외은지점의 경우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과 보고의무만 적용하며 유동성 비율 규제 등 직접적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도 강화된다. 현재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은 실효성이 낮고 1년 이상으로 중장기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 대출 재원조달 산정 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강화하여 단기외채 산정시의 구분기준과 일치시켰다. 규제비율은 현행 최소 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년에 시행 성과를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규제비율 90%

이상은 최저준수 비율인 만큼 2010년 상반기 중 100% 이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높은 환헤지 비율이 은행권 단기외채 차입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투자설명서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환헤지 비용 및 효과 등에 대한 대고객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의 '표준 투자권유 준칙' 개정을 통해 환헤지 비율을 달리하는 투자상품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현재 불명확한 외환건전성 관련 보고 대상 및 주기 등을 구체화해서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자산 확대 및 차입 역시 금번 위기과정에서 노출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향후 바젤위원회 등 국제 논의의 동향을 보아가며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 비율) 설정문제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3) 시사점

금번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방안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초점을 둔 것이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우선 은행권에서 현재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도입하되 향후 제도 정착 추이 및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적용 범위 역시 우선 은행권부터 시행하고 기타 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추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은행권의 시행 성과에 따라 기타 금융회사의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용 수준은 영국 등을 참고하되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규제준수 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과거 몇 차례 예고가 된 만큼 동 조치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만큼 시장을 혼란시킬 정도의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시장참가자들의 포지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환헤지 방지를 위해 실물거래 대비 일정비율(최대 125%) 이상의 선물환 거래를 억제하는 것 또한 실제 실물거래보다 125%가 넘는 선물환 거래를 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실제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1) 배경

2009년 1/4분기 중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로 금융시장 내에서만 자금이 맴도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인 MMF의 급증으로 2009년 2월말 전체 MMF 수탁고가 125.4조원을 기록하였다. MMF 수탁고는 주가 및 금리 등 가격변수가 불안하고 실물경제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1/4분기 중 MMF 수탁고가 급증한 것도 동유럽 금융불안에 따른 경제 및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및 채권, 그리고 실물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인 및 금융기관들이 잉여자금을 단기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경우 MMF 투자액은 간접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약화와 직접금융시장의 위축 등으로 2008년 8월말 3.9조원에서 12월말 4.3조원,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14.0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은행 및 보험사 등 주요 금융권의 자산 증가 속도에 비해 원화예치금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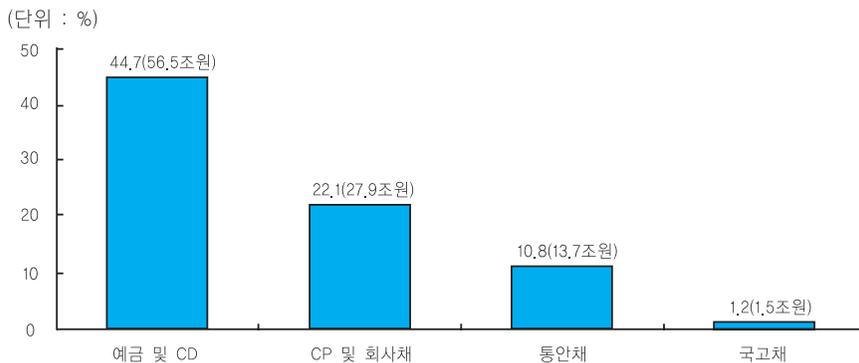
MMF는 투자자가 일시적인 여유 자금을 맡길 때 주로 이용하는 펀드로서 금리 위험과 신용위험이 낮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된다. 자본시장법상 MMF는 주식형 등 다른 일반 펀드와 달리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투자금지, 신용등급 제한, 잔존만기 제한 등 별도의 운용규제를 받고 있다. 우선 MMF는 주식,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며 신용평가 등급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회사채(AA 이상) 및 CP(A2)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동일인이 발행한 회사채 및 CP에 대한 투자는 최상위등급의 경우 펀드 재산총액의 5% 이내, 차상위등급의 경우는 2% 이내로 제한된다.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 위주로만 투자가 가능하여 잔존만기가 6개월 이내인 CD, 1년 이내인 채권(국채 포함) 및 CP, 6개월 이내인 예금 등에만 투자가 가능하고 MMF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는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MMF의 주요 투자대상은 잔존만기 6개월 이내 CD, 6개월 이내 금융기관 예치, 콜론 등의 단기대출과 1년 이내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AA 이상), CP(A2 이상) 등이다. 2009년 3월 10일 기준 MMF의 자산별 보유 비중은 예금 및 CD

44.7%(56.5조원), CP 및 회사채 22.1%(27.9조원), 통안채 10.8%(13.7조원), 국고채 1.2%(1.5조원) 등이다. 특히 채권이나 CP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금융시장 불안으로 절반에 가까운 자산이 예금 및 CD로 운용되고 있어 MMF 투자자금이 주로 금융권 내에서만 순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1/4분기 중 단기 유동성자금이 MMF로 급격히 유입되는 가운데 일부 MMF의 경우 예금을 위주로 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시중 단기자금이 MMF를 기반으로 금융권 내에서만 순환한다는 지적이 있어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2009년 3월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림 III-24〉

MMF의 주요 투자대상



주 : 2009년 3월 10일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2) 주요 내용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은 크게 ‘증권’에 대한 최소 투자 비율 설정과 투자가 가능한 ‘국채증권’ 만기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MMF가 특정자산(은행 예금)에만 집중되어 운용되지 않고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투자될 수 있도록 증권(채권 및 CP)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 한도를 40%로 설정하였다. 2009년 3월 10일 기준 전체 MMF(연기금투자풀 제외)의 ‘증권’에 대한 평균투자 비율은 56.7%²⁹⁾

29) 연기금의 경우 MMF 투자 중 예금 및 CD 비중이 높음에 따라 연기금을 제외한 전체 MMF의 증권(채권 및 CP) 평균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3개 펀드(수탁고 14.2조원)의 ‘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4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적용은 시장이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미국(40%)과 일본(50%) 등 외국의 경우에도 MMF의 증권투자 최소 비율 한도를 두고 있다.

또한 MMF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장기 국채증권의 발행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가능한 ‘국채증권’ 만기를 조정하였다.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MMF는 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제도하에서는 MMF 재산의 5% 범위 이내에서는 1년 이상~5년 이내의 잔존만기를 가진 국채증권도 편입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III-38〉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기 타
증권투자 최소비율 설정	- 증권(채권 및 CP) 등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 한도(40%) 설정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유예 - 미국, 일본 등에도 MMF의 증권에의 최소 투자비율 한도를 두고 있음.
투자가능한 국채증권 만기조정	- 펀드 재산의 5% 이내에서 잔존만기 1년 이상~5년 이내의 국채증권 편입 허용	- (기존) 잔존만기 1년 이내 국채만 투자 가능

3) 시사점

이와 같이 MMF에서 투자 가능한 국채증권의 잔존만기 및 증권투자 최소비율 한도 등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2009년 7월)을 통해 조정됨에 따라 증권(채권 및 CP)에 대한 투자비율이 개정된 법규에서 규정한 최소비율(40%)보다 낮은 일부 MMF의 경우 채권(국공채 포함) 및 CP에 대한 투자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MMF 투자 중 증권(채권 및 CP) 비중은 2009년 2월말 47.0%에서 2010년 2월말 기준 60.1%로 13.1%p 확대되었다. 반면 2009년 2월말 예금의 비중은 37.3%에서 2010년 2월말 기준 19.8%까지 축소되었다.

〈표 III-39〉

MMF 자산별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자 산 총 액	채 권		C P		예 금		콜 론		기 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09. 2월말	125.4	33.9	27.0	25.1	20.0	46.8	37.3	2.7	2.15	16.9	13.5
5월말	118.8	40.0	33.4	22.1	18.6	32.4	27.2	5.3	4.5	19.1	16.0
7월말	103.3	32.6	31.6	20.3	19.7	25.1	24.3	5.5	5.3	19.8	19.1
10월말	74.2	24.4	32.9	16.5	22.2	17.9	24.2	2.0	2.7	13.4	18.0
12월말	72.4	25.9	35.7	16.2	22.4	15.5	21.3	2.2	3.0	12.7	17.6
'10. 2월말	76.2	26.7	35.1	19.1	25.0	15.1	19.8	1.8	2.3	13.5	17.8

자료 : 금융투자협회

제4장 금융산업의 선진화

1.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1) 배경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각 2009년 4월과 7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크게 보아 비금융주력자(이하 산업자본)로 하여금 보다 손쉽게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지주회사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주요 내용

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개정안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 및 산업자본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산업자본, 연기금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로 하여금 은행을 한결 손쉽게 지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는 현행 4%에서 9%로 상향 조정된다. 둘째,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연기금이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경우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이하 LP)의 자격으로 PEF에 단독 출자할 경우 출자비율이 18%(기존에는 10%) 미만이면 이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넷째, 소속이 다른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LP의 자격으로 PEF에 공동 출자할 경우 전체 출자비율이 36%(기존에는 30%) 미만이면 이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섯째, 무한책임사원(이하 GP)이 서로 다른 별개의 PEF를 통해 은행과 비금융회사(자산 2조원 이상)를 지배하더라도 이들 PEF의 LP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듯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 연기금 및 PEF 등은 동일인 주식보유제한 규정만을 적용받기 때문에 의결권 있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10%, 25%, 33%까지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을 강화하였다. 우선 산업자본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불법 내부거래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해 임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PEF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본인 LP가 이면계약을 통해 GP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은행을 우회지배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후감독을 통해 LP가 PEF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PEF에 대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고 해당 GP의 금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나.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비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산결합에 제약이 되는 요소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한하여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자회사 등에 의한 간접 지배도 허용하였다. 이때 이들 비은행지주회사는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11조는 물론 금융회사를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또는 출자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셋째, 금융자회사 등은 개별 금융업법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만 적용받고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를 제한하거나 신용공여시 적정담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제는 적용받지 않게 된다. 넷째, 비은행지주회사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설립 당시 한도를 초과한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시 LBO(Leveraged Buyout) 등 레버리지 수단의 활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대주주나 자회사 등과 거래 시 비은행

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불량자산 포함)을 매매·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반대로 비은행지주회사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시사점

개정안은 국내 금융회사가 겸업화, 대형화 및 글로벌화 등 국제금융의 메가트렌드에 부응하고 이를 따라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회사의 분리를 규정한 글래스-스티걸(Glass-Steagal) 법의 폐지 및 이들의 결합을 허용한 그램-리치-블라일리(Gramm-Leach-Bliley)법의 제정이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 온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은행은 비은행금융회사나 비금융회사로부터 유효적절하게 격리(arm's length)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는 감독당국에 앞서 스스로 이와 같은 격리의 원칙 또는 공평한 시장거래 원칙을 실천하는 장소이자 중심 주체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1) 배경

녹색금융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UN Global Compact 및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등이 있다. 미국의 환경 시민단체인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및 UNEP(UN Environment Programme)가 공동으로 설립한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체계는 기업의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원칙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제안으로 2000년 7월 출범한 UN Global Compact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4개 분야에 대해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적도원칙은 총 1천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수행할 경우 서명한 금융회사가 반드시 환경 및 사회

적 위험의 관리와 조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이니셔티브는 자발적인 것이지만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이에 서명하는 기관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더불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녹색금융에 대한 개념도 점차 구체화되었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 중심의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및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은 감축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탄소배출권거래는 금융상품 거래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녹색금융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개별 국가차원에서 미국의 경우 환경법 중 하나인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는 기업이 환경과 관련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사고처리 비용을 대출 금융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대부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 법은 엄격한 기준하에서 적용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환경보전과 관련한 인식에 있어서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에서 환경금융 또는 지속가능금융이 의미하는 바는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비즈니스가 환경 및 사회적 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녹색금융의 개념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경제발전 아젠다로 설정됨에 따라 파생된 것으로서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금융 또는 지속가능금융 개념과 비교할 때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도 큰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2009년초 정부가 발표한 17개 신성장동력 중 녹색금융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녹색금융의 역할을 녹색산업 관련 투자확대를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금융의 자체적인 발전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까지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9년초 녹색금융이 신성장동력으로 지정된 이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의 특징은 정책금융 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녹색분야에서 찾으려는 데 있다.

2) 주요 내용

대표적인 녹색금융의 사례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성과까지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를 들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데 2007년 미국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조 7,110억 달러, 유럽의 경우 2조 6,650억 유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2월 기준으로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약 1조 8,218억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3월말 조사된 은행권 및 보증기관의 녹색금융 사례를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은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보증료 차감 및 보증금액 한도 우대 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은행과의 특별협약을 통해 녹색성장산업 대출에 대해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율 우대지원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에서도 태양광 및 LED 등 일부 녹색산업에 대한 대출우대 상품이 존재한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를 녹색 관련 단체에 대한 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녹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는 예금상품 및 카드상품도 출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녹색금융은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녹색금융상품의 규모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국내 금융회사가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회사의 녹색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수익성과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9년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가 녹색금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융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들은 국내 금융회사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녹색금융을 추진하기를 꺼려하므로 정부가 단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녹색금융 추진을 유도하여 녹색금융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선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중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은 크게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및 탄소시장 육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모태펀드를 통한 녹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보증지원 및 민관 공동 참여방식의 펀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녹색금융 인프라

라 구축 방안은 녹색여신 우대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녹색금융 관련 법·제도의 정비, 녹색 주가지수 개발·환경정보 DB구축 등 기술적 인프라의 구축, 녹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전문 자격증 도입 등 인적 인프라의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시장 육성 방안은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및 시범사업 실시, 국내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공공기관 주도의 국내 건설분야 통합 CDM³⁰⁾ 사업 추진체 구성, 범아시아 탄소시장 허브 육성을 위한 아시아 개도국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의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 또는 녹색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 ‘녹색 인증제’ 및 ‘녹색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추가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증우대와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민자사업으로 포함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부여, 준공전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혜택이 부여된다. 더불어 에너지 절감시설 등 녹색설비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ESCO³¹⁾ 대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융자 금리와 기간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며 중소 ESCO 기업에 대해 보증료 감면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은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R&D 단계에서는 녹색기술 R&D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요 난제 R&D의 성공시 사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은행 중심으로 3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녹색 R&D 사업에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연계형 R&D와 구매조건부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

30)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청정개발체제라고도 불리며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 국가와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국가 간, 또는 비부속서 국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는 탄소배출권이 생성된다.

31)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기업)는 기술과 자금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다. 둘째, 상용화 단계에 대해서는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업과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며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성장 단계에 있어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녹색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은행의 녹색 장기예금 개발 및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와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조성한 자금을 기반으로 녹색설비 PF를 활성화하며 신보에서 유동화회사보증 채권 풀(pool) 구성시 녹색채권 편입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성숙단계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회계 도입 및 탄소펀드 설립 등을 통한 탄소금융 육성 방안이 강구된다. 이와 더불어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 및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등 인프라 구축, 녹색보험상품 보급 확대, 녹색산업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지원금융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을 촉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3) 시사점

우리나라의 녹색금융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현재 발표된 녹색금융 정책은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광범위한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의 녹색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향후 민간주도형 녹색금융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향이라 판단된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및 민간부문과의 리스크 공유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녹색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금융회사 또한 전세계적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녹색금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3.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 제도 개선

1) 배경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은 경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견제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바람직한 기

업지배구조를 마련하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이사회가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기업의 부실이 초래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도입되었다. 상법과 증권거래법 및 은행법 등의 개정 등을 통해 상장 법인은 이사총수의 1/4, 대규모 상장법인 및 은행은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하는 등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영미식 주주중심주의에 근거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가 우리나라에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주주가치 증진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미흡하여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비판과 지적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은행 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계기가 되었다.

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사외이사제도 개선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각국 정부의 직간접적 규제조치의 대상이 된 금융회사들이 취약한 지배구조로 인해 과도한 위험 감수와 부실 발생을 적시에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다. 특히 금융회사 이사회가 적절한 경영진 감시와 견제 및 적절한 위험 관리 기능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2009.2월 OECD, 2009.6월 BCBS 등)하에 OECD는 2009년 2월과 6월에 걸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였다.³²⁾ 영국 또한 금융감독청(FSA)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해당되는 Walker review(2009.11월)를 발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³³⁾

OECD의 보고서와 영국 Walker review는 이사회역의 역할과 책임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격성 요건 강화 및 리스크 관리 기능 개선 등에 대한 권고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OECD는 권고안을 통해 이사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fit & proper test) 강화, 공시 강화, ‘원칙준수·예외공시(comply or explain)’ 원칙에 입각한 모범규준 추진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32) OECD, "The Corporate Governance Lessons from the Financial Crisis"(2009.2월),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Financial Crisis: Key Findings and Main Messages(2009.6월)

33) Sir David Walker,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Final recommendations"(2009.11월)

영국의 Walker review에서는 비집행이사에 대한 FSA의 선임승인 면접 절차 강화, 사외이사의 활동 시간 증대 및 이사회 평가 강화 등의 권고안 제시 등 사외이사 중심의 금융회사 이사회 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이사회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대내외적인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은행은 2009년말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자율적인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다.

2) 주요 내용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업감독규정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08.12.29)한 은행법개정안 및 한국금융연구원의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09.11.3)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2010년 1월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은 '원칙준수·예외공시(comply or explain)'의 국제적 관례에 따라 기본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기준을 제시하고 동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각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별 상황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한 예외공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새로이 시행된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범규준의 목적(규준 제1조)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은행(은행지주회사) 경영의 적법성·건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하였다. 적용 대상은(규준 제3조) 시중 및 지방은행, 특수은행 중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은행지주회사로 하였으며, 적용시점의 경우 은행 등의 이사회·주총결의를 통해 2010년 정기주총부터 발효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한 예외공시(규준 제27조) 조항을 두어 관련 법령상의 특례적용 등 정당한 사유로 규준을 준수할 수 없어 이를 공시하는 경우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강화를 위해 현행 은행법 상 1/2 이상으로 되어있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내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강화하여(규준 제5조) 은행법 개정안과 일치시켰다. 사외이사 이외의 은행장 또는 은행지주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고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경우에는 해당사실만 공시하도록 하였다(규준 제16조).

또한 은행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기존 은행법 및 은행업 감독규정상

의 결격사유 외에 대주주 및 비계열 금융사 사외이사를 결격사유에 추가하였다(규준 제6조제1항).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기존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결격사유에 추가로 비계열 금융사 사외이사인 경우가 포함되었다(규준 제6조제2항).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규준 제8조제2항)하고 자기추천 시 해당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규준 제8조제3항) 사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추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의 연임 추천 시 종전의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규준 제9조제4항) 추천자 및 추천사유 등의 추천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였다(규준 제10조). 아울러 소수주주(0.5% 이상)에게 후보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추천권을 강화하였다(규준 제9조제5항).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임기상한제를 도입하여 임기 및 총 재임기간의 상한을 각각 2년(연임 시 1년) 및 5년으로 제한하였으며(규준 제11조) 신입 사외이사의 선임비율을 규정하여(규준 제12조) 사외이사의 1/5을 매년 신입 사외이사로 교체 선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상평가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의 임기도 2년으로 제한하였다(규준 제17조).

한편 사외이사(배우자, 직계혈족 포함)는 소속 대학 및 기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은행 등의 기부내역을 이사회에 보고(규준 제15조제6항)하고 공시(규준 제18조)하도록 하였다. 즉, 사외이사(배우자, 직계혈족 포함)가 임직원·수탁자(최근 2년내에 임직원·수탁자이었던 자 포함)인 대학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은행 등(계열회사 포함)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가 기부내역을 이사회에 사전보고하고 은행 등은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현재 추상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언론 등 전문가로 구체화하였다(규준 제6조제3항). 사외이사의 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규준 제21조~제24조)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외부자문 제공 및 교육연수 실시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보수 및 공시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우선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이 구체적으로 공시되도록 하여 전월 중 개최된 이사회(내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여부, 반대 및 기권 사유 등이 포함된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하도록 하였다(규준 제18조). 또한 각 은행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평가 및 이사회·직원에게 의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외이사 평가방법 및 종전 1년간 평가실시 여부를 정기주총 전에 공시하도록 하였다(규준 제19조). 사외이사의 보수 및 공시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의 책임과 활동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되 경영성과에 연동된 보수(예 : 스톡옵션)의 지급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전체 사외이사의 보수총액 및 내역, 위원회별(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 보수총액 및 보수 이외의 기타 편익제공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다(규준 제20조).

3) 시사점

위와 같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모범기준이 제정되고 동 기준이 2010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적용됨에 따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은행권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은행권 외에 증권·보험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사회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번 은행권 모범기준의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사외이사제도 개선 등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과 정책적 요구가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관련 제도 개선

1) 배경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금융자유화 이후 주택구입자의 주요한 구입자금 조달수단인 동시에 은행의 주요 자금 운용수단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급속히 성장해 왔다.

외환위기 이전 은행은 국가경제발전전략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주요 자금공급원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외환위기 발생으로 상당한 부실을 경험한 바 있다.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여신을 축소하는 대신 그동안 자금공급에서 소외되

어 왔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다. 특히 저금리 기조하에서 개인들의 주택대출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은행들은 담보확보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은 2000년말 51.2조원에서 2009년말 260조원으로 5배 이상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출형태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이 대부분인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단기 변동금리부 원금일시상환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9년 9월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87.7%에 달하며 특히 CD금리 기준 대출이 전체의 77.3%에 달하였다.

CD(91일물)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상품 중 CD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하며 단기자금시장 금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 우수하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대표적 기준금리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고객들 또한 CD(91일물)금리연동 대출이 가장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선호하였다.

〈표 III-40〉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금리결정방식별 현황(잔액 기준)

(단위 : 조원, %)

	'06.12말	'07.12말	'08.12말	'09.3말
시 장 금 리 연 동	190.7(92.6)	190.9(94.0)	211.0(95.7)	220.0(96.3)
C	160.6(78.1)	163.7(80.5)	183.2(83.1)	192.1(84.0)
D	0.7(0.3)	1.7(0.8)	3.3(1.5)	4.9(2.2)
K O R I B O	0.7(0.3)	1.7(0.8)	3.3(1.5)	4.9(2.2)
국공채·금융채	29.4(14.1)	25.5(12.6)	24.4(11.1)	23.0(10.0)
내부기준금리 연동	13.5(6.6)	11.1(5.4)	8.6(3.9)	7.9(3.4)
프라임레이트 연동	1.5(0.7)	1.0(0.5)	0.7(0.3)	0.6(0.3)
기 타	0.1(0.1)	0.2(0.1)	0.3(0.1)	0.1(0.0)
변 동 금 리 합 계	205.8(100.0)	203.2(100.0)	220.6(100.0)	228.6(100.0)

그러나 CD금리연동 대출은 한국은행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대폭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CD금리가 최고 6.18%에서 2.49%로 급락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CD금리가 급락하기 이전에는 은행의 여타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인 정기예금 및 은행채 금리와 10~30bp의 차이만을 보였으나 이후 60~100bp로 확대됨에 따라

CD금리는 은행대출의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점점 부적절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향후 감독당국이 은행의 예대율관리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어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CD발행이 더욱 억제되어 자금조달 중 비중은 더욱 낮아지고 금리변동성은 더욱 커져 CD금리의 기준금리로서의 적절성은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CD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3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반면 은행의 자금조달원인 정기예금 및 은행채는 주로 1년 이상 만기로 되어 있어 기준금리 조정시 금리조정 방향에 따라 기존차입자와 은행 및 신규차입자간 부담이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말 CD금리가 급락하면서 기존대출자의 경우 금리조정시 대출금리가 대폭 인하된 반면 은행에서는 이들 대출로부터 역마진이 발생하자 대출이자 감소분을 신규대출자에게 전가하면서 가산금리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이와 같이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가산금리가 100bp에서 350bp로 대폭 확대되면서 가산금리 산정방식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2) 주요 내용

한국금융연구원은 CD금리 연동대출 중심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1월 토론회를 통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지표로 은행의 조달금리평균을 사용하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새로운 지표를 산정·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은행들의 TF 활동 결과 은행권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기준금리 지표로 평균조달비용을 반영하는 COFIX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전국은행연합회는 2010년 2월 15일부터 매달 이를 산정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COFIX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서와 같이 신규취급액 및 잔액 기준 가중평균금리의 두 가지로 산정된다.³⁴⁾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정보 제공은행으로 선정된 9개 은행들이 전월 중 신규 조달한 지수산정 대상 조달자금에 적용한 금리를, 잔액 기준 COFIX는 이들 은행이 전월말 현재 보유한 동 자문에 적용한 금리를 각각 가중평균하여 산정된다.

34) 한국은행은 1996년부터 금융기관의 이전 달의 신규취급액 및 잔액 기준의 총수신금리에 대한 가중평균금리를 산정하여 매월 말일에 발표하고 있다.

기준금리 지표로 사용될 평균조달금리 산정에 사용되는 자금은 은행 수신 중 수시입출식 예금을 제외한 저축성예금과 후순위채·전환사채를 제외한 시장형금융상품 등이다. 요구불예금과 기업자유예금 등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집계하기 곤란하므로 동일한 조건의 가중평균금리 산정을 위해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산정 시에도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시입출식 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여 장기대출인 주택담보대출에 이용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다.

시장형금융상품 중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등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달성을 위해 불규칙하게 발행되며 고금리인 점을 고려하여 가중평균금리 산정시 제외하였다. 정보제공은행은 7개 시중은행과 유사한 방법 및 규모로 영업 중인 2개 특수은행으로 한정하였다.

• 신규(잔액)취급액기준 COFIX =

$$\frac{\sum (\text{은행별 전월 신규(잔액)취급액기준 가중평균금리} \times \text{각은행별 전월 신규(잔액)취급액})}{\sum (\text{은행별 전월 신규(잔액)취급액})}$$

3) 시사점

새로운 기준금리 지표인 COFIX의 도입효과는 다음과 같이 기대된다. 첫째, COFIX는 은행들로 하여금 조달비용과 운용비용의 격차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는 가산금리의 비중을 낮춰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에 대해 이해 가능한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³⁵⁾ CD금리와 같이 투명성은 높으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지수(index)의 경우에는 운용과 조달 듀레이션의 차이로 금리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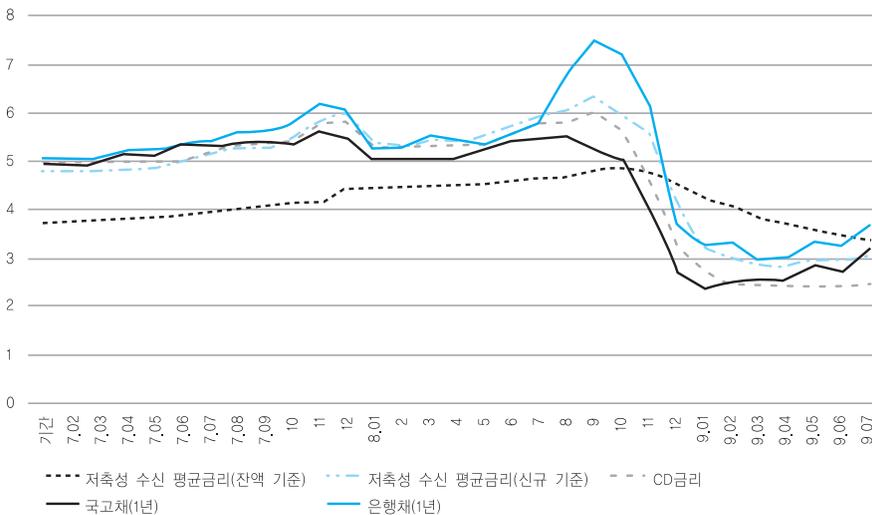
둘째, COFIX는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과 CD 및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의 금리를 함께 고려하며 1개월간 평균금리를 이용함으로써 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비해 변동성이 작은 장점이 있다. COFIX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지표로 사용할 경우 금리 인상시기에 인상폭을 낮춰 기존 차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금리 인하시기에는 인하폭을 낮춰 은행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신규

3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차입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장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대출기간 동안 몇 번의 금리 인상과 인하가 반복됨으로써 차입자와 은행 간 부담이 공평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COFIX는 신규취급액 및 잔액 기준의 두 가지로 산정되어 각각의 장점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기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총 수신금리는 CD 등 시장금리와 달리 대출금리와 안정된 격차를 유지하여 예대금리 차가 안정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최근의 시장금리 수준도 어느 정도 반영함으로써 차입자들의 금리 인식 수준과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잔액기준 평균수신금리는 금리변경시 기존 예금의 금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조달금리 변동이 더욱 완만해지는 효과가 있다(〈그림 Ⅲ-24〉 참조).

〈그림 Ⅲ-25〉 신규 및 잔액기준 가중평균 금리(한국은행 산정) 비교



자료 : 한국은행

5. 은행 예대율 증가 및 관련 규제 도입 추진

1) 배경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예대율(예금에서 CD 제외)은 2001년까지는 70%대 후반에 머물렀으나 가계대출이 폭증한 2002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8년 3/4분기말

139.4%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2009년 4/4분기말 126.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41〉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율(기말 기준)

(단위 : %)

연도 및 분기	예 금 은 행 ¹⁾		일 반 은 행 ²⁾	
	CD 제외	CD 포함	CD 제외	CD 포함
2000	76.8	75.4	71.9	69.4
2001	78.4	76.5	75.1	72.4
2002	92.1	88.6	88.4	84.0
2003	98.2	92.7	94.4	88.2
2004	104.6	97.2	99.9	92.4
2005	109.2	98.8	101.0	91.2
2006	118.0	105.0	109.0	95.6
2007	135.5	115.5	123.9	104.4
2008년 1/4	138.1	116.2	126.0	104.9
2/4	138.6	116.4	126.5	104.2
3/4	139.4	117.9	124.4	103.3
4/4	135.8	116.8	118.8	101.6
2009년 1/4	135.9	117.7	116.7	101.0
2/4	133.7	115.2	114.1	98.7
3/4	130.4	112.3	112.4	97.6
4/4	126.9	111.0	-	-

주 : 1)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특수은행(농협, 수협, 산은, 기은)

2) 시중은행, 지방은행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각호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예금은행에서 특수은행과 외은지점을 제외한 일반은행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예대율(예금에서 CD 제외)은 2009년 3/4분기말 현재 112.4%로 예금은행의 예대율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초에 해외 주요 언론 및 증권사 등에서는 우리나라 은행권의 예대율이 너무 높아 세계적인 신용위기 상황에서 은행 부실이 우려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2월 27일 이코노미스트誌, 3월 2일 크레디트스위스).

2) 주요 내용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주로 은행간 자산확대 경쟁에 따른 대출확대 때문이다. 특히 2005년 2/4분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는 예금증가율이 등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확대 경쟁에 따라 대출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대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율은 대체로 선진국 은행들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유동화 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은행이 대부분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자산유동화 시장이 발달할 경우 은행들이 대출자산을 유동화하면 예대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대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처럼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경우 높은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으로 인해 유동성위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먼저 은행예대율이 100%를 넘어 대출이 예금보다 많아지면 은행은 CD나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으로 예금을 초과하는 대출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시장성 수신은 일반적으로 예금보다는 자금조달의 안정성이 떨어져 이들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은행의 유동성위험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채의 경우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탈이 발생할 경우 수요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일례로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2007년중 펀드의 채권편입 비중이 35.6%에서 19.4%로 대폭 하락함에 따라 은행채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시장성 수신은 금융시장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급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은행채 등의 만기연장이나 신규 발행이 어려워지면 은행은 갑작스러운 부채 상환압력에 직면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성 수신은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하지만뱅크런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자금조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출자산은 만기가 되어도 현금화가 어려워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즉 대부분의 대출자산(특히 기업대출)은 차주들이 만기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만기가 되어도 현금으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상환 요구가 있을 때 대출자산을 현금화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대율은 유동성이 거의 없는 자산인 대출을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인 예금으로 얼마나 조달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예대율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 과도한 대출경쟁에 있었던 만큼 높아지는 예대율은 또한 높아지는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은행들은 2006년부터 중소기업대출을 통해 자산확대 경쟁을 해왔는데,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006년 17.7%, 2007년 22.4%,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도 12.7%에 달하는 등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증가 해왔다. 그런데 이 기간중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순이익률을 보면 2006년에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서 -1.2%를 기록했으며 2007년 -1.4%, 2008년 -4.4%를 기록하는 등 계속 악화되어 왔다. 즉 국내은행들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면서 예대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은행의 높은 예대율은 은행산업 및 금융시스템 전체에 커다란 리스크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가 없어 은행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은행 예대율이 100%를 넘어 은행들이 시장성 수신을 통해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커질 경우 작은 충격으로 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하면 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위협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채권시장의 심도가 깊지 않아 국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작은 충격에도 채권시장 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은행 예대율이 높을 경우 은행산업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는 문제가 항상 잠재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없어 은행들이 예대율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회사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은행의 핵심예금이 증권사의 CMA 등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펀드판매 확대 마케팅을 벌이면서 은행의 저축성예금이 펀드로 이동해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예금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대출증대를 통한 자산확대 경쟁을 벌여 예대율이 급속히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한 것은 예대율에 대한 규제가 없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위험을 최

소화하기 위해 은행예대율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2009년 12월 16일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경제활성화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과도한 외형확장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예대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은행들이 2010년부터 예금에서 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시사점

이와 같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은행의 예대율을 규제하게 되면 은행 예대율이 낮아지면서 은행들의 유동성위험이 줄어들고 또 은행들의 대출자산 확대 경쟁이 완화되면서 금융시스템 전체의 부실위험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금융시스템내에서 은행의 중요한 기능인 자금중개가 위축되면서 전통적으로 자금조달을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해 온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봉착하여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은행들이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주요 수익원인 대출을 줄이고 고금리 특판예금을 확대하게 되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은행이 부실해지는 부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6. 금융지주회사 경영건전성 감독강화 방안

1) 배경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영건전성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연결 자기자본비율은 2008년 9월말 이후 3분기 연속 상승하였으며 지주회사의 재무안정성을 반영하는 부채비율은 2009년 들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영건전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기능 강화 등 금융지주회사의 경영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인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위험요인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하에 대형화·겸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2) 주요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2009년 9월 말부터 은행지주회사의 연결 기본자본(Tier 1) 레버리지 비율(=기본자본/(연결총자산-무형자산-이연법인세자산))을 현행 연결 BIS비율의 보완지표로 도입하여 자본적정성 경영실태평가 및 건전경영지도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은행지주회사의 핵심자본비율(=기본자본-신종자본증권)/위험가중자산이 4% 이하인 경우 추가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불인정하는 등 그룹 자기자본의 질을 적극 관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연결 BIS비율, 연결 기본자본비율, 연결 기본자본레버리지비율) 및 은행지주회사의 재무안정성(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을 평가하기 위한 계량지표를 도입하여 상시감시 및 지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비금융자회사의 편입시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그룹 자기자본순합계액/그룹 필요자본합계액) 산출방식을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비금융자회사의 편입시 자기자본의 적립의무 강화, 자본비율 산출시 비금융자회사 경영성과의 반영도 제고 및 그룹 자기자본 등에서 외부주주지분 차감 등이 변경된 내용이다. 아울러 비금융자회사 편입에 따른 추가적인 리스크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하였고 기타 상시감시 및 시장규율 관련 제도들도 정비하였다.

3) 시사점

은행지주회사의 연결자기자본비율 도입 및 비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방안은 그룹 리스크 대비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룹 내부의 리스크 요인의 조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외형성장을 도모하고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안정적·장기적 성장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겸업화·대형화의 대안으로 국내 금융산업에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세계 우수 금융지주회사와 비교시 규모면에서 아직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경영건전성 감독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7. 보험사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 시행

1) 배경

현행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측정하는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가진 각종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선제적 감독체계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 자산유동화증권 등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함에 따라 현행 지급여력제도로는 보험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를 반영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 도입안을 마련하였다. 동 제도는 2009년 4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와 병행 시행한 뒤 2011년 4월 1일부터 RBC제도에 의한 자기자본 보유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2) 주요 내용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는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 양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과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으로 구성된다. 가용자본은 보험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버퍼(risk buffer)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에 해당하며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내재된 리스크(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으로 보유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리스크를 통합하여 산출된다.

요구자본 산출을 위한 개별리스크는 대상항목별 잔액(exposure balance)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대상항목별 잔액은 주로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본으로 하여 각각 산출하고 위험계수는 자산항목별, 보험종목별 및 금리민감도별로 구분하여 과거 경험치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한편, 통합된 총리스크 산출방식은 개별리스크의 단순합산 또는 분산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계산이 간편한 대신 중요요구자본을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후자는 리스크 간 상관관계를 반영한 방법으로서 단순합산일 때보다는 총리스크가 작게 산출된다. 새로이 적용되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하에서의 산출방식 등의 체계를 기존 EU식 지급여력제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III-42〉 EU식 지급여력비율과 RBC비율 비교

구 분	지급여력비율	RBC비율	차이점
분 자	지급여력금액(①)	가용자본(①)	
분 모	지급여력기준금액(②) - 보험리스크 ·(생보)위험보험금 × 0.3% 내외 ·(손보)보유보험료 × 17.8% 수준 - 자산운용리스크 ·책임준비금 × 4%	요구자본(②) - 보험리스크 - 금리리스크 - 시장리스크 - 신용리스크 - 운영리스크	- 보험, 금리, 시장, 신용 리스크 정교화 - 운영리스크 추가
산 식	(①/②)×100	(①/②)×100	

RBC제도 체제 하에서 적용될 개별 리스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리스크란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 증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로서 손해율, 거대재해 관련계약 규모 및 재보험 거래내역 등에 의해 결정된다. 금리리스크는 금리의 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하락 등으로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리스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부채의 듀레이션 및 예정이자율 수준 등이 주요 결정요인이다. 시장리스크의 경우 시장가격(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로서 주식·채권의 가치민감도, 파생금융상품 보유내역 및 분산투자의 적정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신용리

스크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및 신용등급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용등급 및 만기, 담보 등 신용보강 내역 등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사건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로서 내부통제의 적정성, 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및 전산운영의 안정성 등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III-43〉 개별 리스크의 개념 및 결정요인

분 류	개 념	결정요인
보 험 리스크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증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손해율 ·거대재해 관련계약 규모 ·재보험 거래내역
금 리 리스크	·금리의 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하락등으로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리스크	·자산-부채의 듀레이션 ·예정이자율 수준 ·최저보증 이자율 수준
시 장 리스크	·시장가격(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자산 가치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주식, 채권의 가치민감도 ·파생금융상품 보유내역 ·분산투자의 적정성
신 용 리스크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신용등급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신용등급 및 만기 ·담보 등 신용보강 내역 ·신용파생상품 투자내역
운 영 리스크	·부적절한 내부절차·인력·시스템, 외부사건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내부통제의 적정성 ·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전산운영의 안정성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이처럼 보험업계 공통의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표준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에 더하여 2009년 7월 금융감독원은 리스크 관리를 보다 선진화하고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 보험사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내부모형 승인제도’란 감독기관이 제시한 필요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승인받은 보험사가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 제도 도입 시 보험사는 현행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는 제도도입의 용이성과 보험회사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하여 연차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먼저 보험회사 고유리스크인 보험·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을 우선 추진하고 시장·신용리스크는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3) 시사점

RBC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사의 실질적 재무건전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별 보험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 및 파생금융상품 내용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리스크 실질에 기초한 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독당국의 역량이 ‘취약 보험사’ 및 ‘취약 업무부문’ 등에 선택적으로 집중됨으로써 감독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사가 리스크 분석결과를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하도록 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경영체제를 확립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RBC제도의 시행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구조가 보다 안전자산 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 보험사기 근절 대책

1) 배경

보험사기는 감독당국 및 보험사 차원의 다양한 대책 및 적발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규모 및 유형이 보다 대형화·다양화되어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사기의 증가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 및 보험료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보험사들을 통해

서 적발된 보험사기는 금액기준 2,549억원, 혐의자는 41,019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 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동 수치는 총 보험사기 규모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2009년 6월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금융감독당국,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공조하여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2) 주요 내용

2009년 6월 발표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은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설치·운영,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및 수사역량 제고, 금융당국의 보험범죄 조사 효율성 제고, 민간 보험업계 차원의 보험범죄 근절 노력 지속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합동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직원들로 구성된다. 동 대책반은 각종 첩보, 금융감독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대상으로 분석·수사를 기획하고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대규모·구조적 범죄 및 조직폭력 개입 등의 중대범죄는 합동대책반에서 수사 및 지속관리를 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합동대책반을 가동하여 연말까지 운영하고(既 실시) 성과 분석을 통해 연장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둘째, 경찰에서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수사역량을 제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서별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설치·운영과 연계하여 특별단속을 2009년말까지 지속·중점적으로 실시하고(既 실시) 합동대책반 운영이 연장될 경우 특별단속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특히 보험범죄를 2009년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상시 중점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방청 광역 수사대내에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을 추가로 지정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보험범죄 수사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경찰수사연수원의 4개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보강하고 보험범죄 관련 수사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손해·생명보험협회 및 보험사조사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보험사기 근절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날로 조직화·기능화되어

가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성능 향상 및 데이터 검증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기존 인지시스템의 자료입수 및 혐의 분석능력을 대폭 개선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 2월부터 가동해오고 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란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DB로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 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요기능은 혐의자 선정, 연계분석, 혐의내용 확인, 사건관리 및 통계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보험범죄 대응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보험업법의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민간 보험업계 차원의 보험범죄 근절 노력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보험업계 차원의 보험범죄 적발능력 제고와 관련하여 보험사의 보험범죄 특별조사팀의 업무영역(현재는 자동차보험에 중점) 확대 등 보험사들의 종합적인 보험범죄 대응시스템의 구축·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보험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인 보험범죄 아카데미(주관 : 손해보험협회)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대상 및 교육횟수를 확대(연 3회 180명 → 연 5회 300명) 하고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외에 검찰청,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보험범죄 적발사례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표 III-44〉 보험범죄 예방 추진 및 향후계획

과 제 명	주요 내용	소 관	추진일정
보험범죄 전담 합동 대책반 설치	-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책반」 설치	법무부 (유관기관 합동)	'09.7.1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지속·중점적 으로 실시	경찰청	'09.3.23~12.31 (합동대책반 활동 연장 시 연장)
보험범죄 수사과정 보강	- 경찰수사연수원 보험범죄수사 교육 과정 보강	경찰청	'09.10월 ('10년 교육계획에 반영)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선	- 데이터 항목 추가발굴, 시스템 처리 능력 제고 등	금감원	'09.12말
보험조사협의회 확대	-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금융위	관련 법령 개정 후 즉시
보험사별 시스템 구축	- 보험사별 종합적인 보험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생보·손보험회 (각 보험사)	상시
보험범죄 아카데미 활성화	- 교육대상 확대(180명→300명),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강화	손보험회 (경찰청 등)	'10년부터 즉시

자료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09.6.

3) 시사점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경영손실 등을 통해 보험사, 주주 및 보험계약자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소비자와 사회구성원에게까지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계된 모든 유관기관이 공조하는 이와 같은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가며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의 범죄성과 그 비용 및 폐해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사기는 경성보험사기(hard insurance fraud)와 연성보험사기(soft insurance fraud)로 구분이 가능한데 연성보험사기의 심각성이 경성보험사기 못지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 학술적 논의 및 대

응책 마련 등이 경성보험사기에 치중되어온 경향이 있다. 경성보험사기는 보험사고 및 손실을 계획적·의도적으로 각색 또는 조작하는 범죄성이 강한 행위를 말하며 연성보험사기는 정상적(우발적)인 보험사고 후 기회주의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 등을 지칭한다. 연성보험사기는 경성보험사기에 비해 행위의 입증 및 적발이 쉽지 않고 자칫하면 선의의 사고피해자가 보험금지급을 지연·거절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법·제도적 수단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처럼 법·제도적 수단 적용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잠재된 피해가 경성보험사기 못지않게 심각한 연성보험사기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성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연성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지나친 단속 및 대응은 자칫 보험금 지급의 지연 및 거절사례를 초래하여 선의의 보험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적발 및 제재수단의 적용이 요구된다.

9.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1) 배경

2000년대 들어 중소형 신용카드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다 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기본(표준)가맹점수수료는 1980년대 신용카드업이 국내에 정착하기 시작한 초창기에 재무부가 업종별로 결정하여 왔으며 그 영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당시 재무부는 국민편의 업종 등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유흥 및 호화사치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업종에 따라 3%, 4%, 5% 수준으로 각각 차등화한 기본가맹점수수료율을 책정하였다.

이러한 기본가맹점수수료율체계는 1999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금융위기에 따른 가맹점의 매출감소, 중산층 생활안정 필요성 및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가맹점 반발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이 2.5% 이상인 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씩 인하됨으로써 주요 가맹점 수수료율은 각각 2.7%, 3.6% 및 4.5%가 되었으며 이후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롭게 나타난 대형 할인매장이나 신용카드 활성화 조치 이후 신용카드를 받기 시작한 종합병원 등

과 같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수익기여도 및 반발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2%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었다. 신용카드사는 초창기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 200여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1.50~4.50%까지의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부과하여 왔다.

소규모 상점들의 경우 2003년 신용카드 활성화조치 이전에는 카드결제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을 경우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높은 수수료율 수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확대 및 신용카드 활성화조치에 의해 고객의 카드선호가 높아지고 카드결제도 사실상 의무화³⁶⁾되어 소규모 상점들도 카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높은 가맹점 수수료 및 업종 간 격차가 큰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또한 금리인하와 대손비율감소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여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협상력이 강한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및 회원관련 서비스 수수료 인하가 실시된 반면 소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소형가맹점들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 간 경쟁을 반영하여 평균가맹점 수수료인 2.33%보다 크게 낮은 1.5%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형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인하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2) 주요 내용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 정부가 가맹점 원가산정표준안 및 이를 기초로 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인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2009년에는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인하폭이 크지 않고 인하대상이 너무 제한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비판을 계속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국회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원가분석을 통해 상한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여전법

36) 정부는 2002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 및 70조 3항).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러한 조항은 대부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용카드사의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에서 가맹점의 카드수납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및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법안 등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하여 여러 법안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가.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금융감독당국은 2007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국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원가산정 표준안은 수익자부담원칙 및 투입비용 방식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카드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가맹점의 매출확대에 기여하는 비용을 선별하여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원가산정 표준안에서는 카드영업 관련 비용 중 자금조달 및 프로세싱(승인) 비용 등은 가맹점의 매출증대와 전적으로 관련있는 직접비용으로서 가맹점이 모두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판매관리비용은 가맹점과 관련있는 신용판매 사업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이므로 신용판매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을 분리하여 가맹점이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리스크관리 원가는 가맹점이 부담할 위험을 카드사가 관리하여 주는 것에 대한 보험료 성격이나 카드사도 회원심사 및 한도심사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가맹점과 카드사가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마케팅 비용 중 부가서비스 비용은 특정 제휴가맹점의 매출증대 또는 카드사의 자사카드 사용증대에 주로 기여하므로 일반적 가맹점 수수료 구성 원가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회원모집비용과 가맹점모집비용은 이미 신용카드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가맹점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원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른 원가 분석 결과 제시된 개선방안은 신용카드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한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 축소,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중소형 가맹점의 협상력 강화 및 체크·직불카드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이다.

나.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선 사항

금융감독당국은 2007년말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카드사,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은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하여 가맹점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합리적 수수료 결정 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우선 신용카드사들로 하여금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하여 각사 실정에 맞춰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권고하였다.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협상력 부족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당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조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자금조달비용, 채권회수비용 및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수수료 수준을 신용카드와 차등화하여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

합리적 수수료 결정 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카드사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원가산정 표준안이 반영된 내규에 의해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정착을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원가산정을 위한 기본원칙,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원가산정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카드사와 가맹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공시내용을 업종별 최저·최고 및 중간 수수료율 등으로 확대하여 가맹점의 카드사 선택권을 제고하고 카드사간 경쟁을 유도하였다.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구분을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단순화하도록 유도하며 동일 업종내에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매출규모 등 수익기여도를 반영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유도하였다.

2009년 1월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말 현재 유흥업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업종에 따라 2.6~4.5%에서 2.5~3.5%로 최대 1% 포인트 인하되었으며, 영세가맹점은 2.1%, 재래시장 점포는 2.0~2.2%, 체크카드는 2.1%로 인하되었다.

국회는 중소형 가맹점들이 수수료율 수준에 계속 불만을 보임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신용카드사들이 중소형 가맹점(매출액 9,600만원 미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현행 2.3~3.6%에서 2.0~2.4%로, 재래시장 점포 수수료율은 2.0~2.2%에서 1.6~1.9%로 낮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상한제 도입을 취소하였다.

3) 시사점

중소형(매출액 9,600만원) 및 재래시장 내 가맹점 수수료율이 계획대로 낮아질 경우 이들 가맹점의 불만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나 인하대상에서 제외된 가맹점들의 불만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상점들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신용카드고객에 대해 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객의 편의성 증대 및 세원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거래비용의 확대, 과소비 및 중소형 상점들의 부담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와 동일한 효과를 주면서도 낮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10.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소액신용대출) 확대시행

1) 배경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와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한 은행 등 제도권의 신용할당(자금공급 위축 또는 높은 가산금리 부과 등)이 더욱 심

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경제력 향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위축, 금융권의 담보위주 여신관행 및 평판위험 등에 의해 서민금융의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불법 사금융 등을 이용하게 되고 높은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행위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신용회복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마련·시행해 왔으나 경기침체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서민금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해외에서는 제도권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내에도 10여년 전부터 도입되어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다. 민간기부금과 재정을 재원으로 운영되어 온 ‘마이크로 크레딧’은 2008년 3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계기로 그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이 2008~2009년 2년간 공급한 마이크로 크레딧의 지원규모는 2000~2009년 중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규모(1,480억원)의 1/3 이상(501억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마이크로 크레딧 규모는 GDP의 0.005%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아직 규모가 미미하다. 또한 전달체계의 비효율로 인한 중복 또는 과소 지원 및 적은 수의 수행기관 등에 따른 서민의 접근성 제약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09년 9월17일)에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수행 중인 소액신용대출(microcredit)을 미소(美少)금융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의 원활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미소금융확대방안’을 논의하여 이를 2009년 12월부터 시행하였다. 즉 미소금융의 확대시행은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미소금융 확대방안에 따라 이것이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였다. 동 재단은 지역별 미소금융

수행 법인(미소금융 지점) 및 동 법인의 지부 설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09년 12월 15일부터 기업·은행계 미소금융재단 및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지점의 설립이 이어져 향후 전국적으로 200~300개의 지점이 설립될 계획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의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및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지점당 5억원) 및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및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재계·금융권 등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을 배정받아 직접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정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하여 미소금융사업에 동참하는 재계·금융권 등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미소금융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규모(1,480억원)의 13배 이상 규모로서 재계(전경련 소속회원기업)기부금 약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7천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원 이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미소금융은 7등급 이하 저신용 영세사업자의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및 소규모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공동대출을 실시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에서는 저신용층 서민의 방문이 있으면 상담, 컨설팅 및 현장조사 등의 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하며 부채과다 등으로 미소금융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지원 등 다른 서민지원 금융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금리 이하인 연 5% 이하에서 결정되며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은 지원내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일인당 500만~1억원의 금액을 1~5년의 기간에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3) 시사점

미소금융중앙재단 설립으로 소액신용대출이 확대·시행됨으로써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소액신용(microcredit)은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조성·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조성·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경우 약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들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소금융사업의 확대·시행은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소금융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 및 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미소금융사업이 정착되어 본격 시행되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고금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고금리 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서민금융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데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미소금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에 의한 부분 신용보증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서민금융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대부업 관련 표준약관 개선

1) 배경

외환위기 이후 경기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서민계층의 경제력은 점차 약화되어 왔으며 이들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금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03년 가계신용위기를 거치면서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신용도가 양호한 계층을 중심으로 신중한 여신공급을 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저신용·서민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들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저신용·서민계층이 대부업체를 통해 필요한 금융 수요를 충당하게 되면서 대부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산관리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9월말 현재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16,120개로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거래자는 130만 7천여명이고, 대부잔액은 5조 6,065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전체 거래자 중 95.6%가 500만원 이하 거래자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2조 2,374억원으로 총 대출금의 46.9%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45〉

국내 등록대부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연 도	2003.12.	2004.12.	2005.12.	2006.12.	2007.12.	2008.9.
업 체 수(개)	11,554	11,540	14,556	16,367	17,911	16,120

자료 :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한편 2005년 9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을 계기로 대부업체 양성화와 대부업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금리상한 이상의 고금리 부과 및 불법 추심 행위³⁷⁾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불법 대부행위가 지속될 경우 대부업 이용 서민들의 자생력을 더욱 저하시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200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제정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2) 주요 내용

‘대부거래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채무자가

37) 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 유형은 다음과 같음.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차용 등으로 변제자금의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추가하였다.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표준약관에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가 계약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하고 권리의무관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 채무자는 상사법정이율(연 6%)의 범위 내에서 정한 약정금리를 더하여 갚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에 원채무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던 것을 상사법정이율의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채무자가 만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대부업자의 고지가 있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던 조항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대부업자가 일방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하여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였다.

다음으로 「대부보증 표준약관」의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업법의 개정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맞추어 보증기간, 피보증채무금액 및 보증한도 등을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안 경우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증인이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대부업자에 대한 채권과 피보증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대부업자에게 항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증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 ① 채무자의 관계인(부모, 배우자 등)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② 채무자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관계인(부모, 배우자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일부 채권을 회수
- ③ 변제 및 변제요구가 금지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

「대부보증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하였는데, 첫째,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증인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보증인에게 다른 담보나 보증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계약의 체결 및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보증인이 대부업자에게 해당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일자·색색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향후 표준약관 작성시 고객이 내용을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한 9호 포인트 이상의 글씨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며 중요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였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중 중요한 내용인 기한의 이익의 상실(제12조), 기한전의 임의상환(제13조), 변제충당(제14조), 채권양도(제17조), 보증채무의 내용(제1조), 상계(제3조), 최고·검색의 항변권(제4조), 기한이익상실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제6조)에 관한 사항은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고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시사점

대부거래 관련 표준약관 제·개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과 보증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부거래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 및 표준약관을 개정·보급함으로써 표준약관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증인의 각종 권리행사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등 대부업 규제 및 감독당국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자에게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대부거래의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불법채권추심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12.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1) 배경

정부는 신용정보 인프라를 개선하고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신용정보 제도 개선 Task Force를 운영하는 한편, 2006년에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신용정보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8년 들어서는 금융인프라 선진화 및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민간 규제개혁 심사단의 심의를 통해 규제 개혁 사항을 발굴한 후 이를 반영한 신용정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무위원회는 이를 국회의원이 발의한 다른 2건의 개정안과 함께 2009년 2월 23일 병합심사하여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였고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2일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 2)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및 3) 신용정보회사의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등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주요 내용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 신용조사, 신용평가 및 채권추심업 등 4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법 조문체계가 신용정보업의 업무영역에 따라 분화되어 있지 않아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각 업무영역을 규율하는 조항을 별도의 장과 절로 분리하는 등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제11조). 신용정보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업 업무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겸업 시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용정보회사가 겸업으로 영위할 수 없는 업무만을 법령에 명시하였다(Negative 방식). 그 외의 업무

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금지업무의 예로는 ①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②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무(일부 예외), ③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④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또는 사회에 명백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업무 등이다. 신용평가사의 평가 가능 범위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존에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기업어음(CP)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신용평가사의 평가가능 영역을 펀드, 대출(Loan), 차주(Issuer) 및 기타 금융상품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개정 신용정보법은 기존의 신용정보 이외에 새로운 정보로서 긍정적인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기존에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정보 등 부정적인 공공정보만이 신용평가에 활용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등에 제공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집중관리·활용되는 공공기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교환 대상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외에 어음교환소, 전자어음관리기관, 각급 학교, 보험요율산출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정보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공공정보의 범위는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i)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ii)전기 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iii)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iv)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및 (v)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가 해당된다.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신용정보 조회 시 고객 동의 의무화,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 도입, 금융거래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제공 의무 및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무료 열람권 신설 등을 추가하였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개

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이하 CB) 등에 집중하는 경우에만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고 CB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때는 동의가 불필요했었다. 그러나 사생활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이를 개선하여 집중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CB로부터 신용등급 등을 조회하는 단계에서도 고객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여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였다. 또 기존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 규정만 있을 뿐 이의 철회·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회권을 보장하고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Do-Not-Call 제도’를 도입하였다(제37조). 또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등을 거절·중지당하는 경우 판단의 근거를 제공받을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기관이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요청 시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제36조). 기존에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CB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였다(제39조).

신용정보의 유통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 신용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고객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신용정보회사의 출자자 요건도 개선하였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상거래 설정·유지 판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및 휴대폰 SMS를 통해 본인의 동의를 취득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출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추가적인 동의방식을 도입하였다(제32조).

한편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없이 본인의 사전동의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이를 완화하여 ① 영업양도 및 회사의 분할·합병 시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의 전산처리를 위탁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

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면제하여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공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로 제한하여 금융기관은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소변경정보 등의 이용이 곤란하였는데, 이를 개선하여 ①휴면예금·휴면보험금의 지급, ②금융거래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이익에 필수적인 사안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도 고객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정보업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신용정보회사가 인가받은 사업 전부를 양수도하는 경우에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지만 신용정보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또 허가 요건의 하나인 인적·물적시설 요건을 영업기간 동안 충족하도록 한 조항도 기존에는 없었지만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인적·물적시설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3) 시사점

이번 신용정보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활용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용이력이 없거나 미약한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공공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예컨대 공공요금 납부 실적이 신용평가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연체나 미납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업무성격이나 정보의 활용방법 및 목적이 상이한 신용평가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별도의 법체제로 분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과제로 남아있다.

1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배경

우리나라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9년 통합된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설립된 이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는데, 2009년도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노력은 주로 정보제공의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소비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 불완전판매의 방지, 꺾기 및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 부당한 금리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제 등에 집중되어 왔다. 한편, 다른 일면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교육 제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는 금감원, 금융협회 및 금융기관 등 직접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물론 투자자보호재단 등 소비자보호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2009년의 과제는 그간의 소비자 보호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정치화된 감독을 구현하고 미흡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었으며, 특히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계기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2) 주요 내용

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각 금융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상품공시 기준이 마련되고 상품의 비교공시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데, 2009년도에는 상호금융기관의 통일상품공시 기준이 마련되고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가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상품공시 제도가 일층 강화되었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공시 수준이 미흡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았는데 통일상품공시 기준의 마련으로 상호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보호되고 상호금융산업의 신인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그간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가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 투자원금이 되는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민원이 많아 예정사업비지수('02년) 및 특별계정

(펀드)투입원금('06)에 대한 공시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문제점이 있어 가입설계 시에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하고 가입 시에는 여기에 서명·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가입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불완전판매는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약관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상품개발시 준용하도록 의무화한 약관으로서 7개의 표준약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총 24개의 사항에 대해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약관의 교부시기 및 이해 용이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들 수 있다. 보험약관의 경우 교부시점을 계약체결 시에서 청약 시로 변경하여 청약단계에서 약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약관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에 예시·도해·해설 등을 부연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품설명서 표지 및 1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계약자 권리사항' 및 '가입자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주의 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품질보증해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거절 및 지연한 경우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본시장법의 시행(2009년 2월)으로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되었다. 동 법의 시행으로 바뀌어진 제도를 보면, 과거에는 투자설명서 교부를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동법에서 펀드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펀드명칭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펀드 명칭만으로 중요정보(투자대상자산 및 펀드구조)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 명칭 표기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투자권유관련 업무처리 해설지침'이 제정·공표되었는데, 여기에는 투자권유의 해당 범위, 적합성의 원칙 적용 범위, 고객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거래에 있어서의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 적용,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및 펀드등급제 시행에 따른 위험분류의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투자성향 분류 기준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

자가 위험중립형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 금융회사들이 주식 등의 위험상품 판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투자권유 불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 2008년말부터 미스터리쇼핑제도가 도입되어 투자권유준칙 절차에 따른 판매 여부, 원금손실 위험에 대한 적극적 고지의무 준수 여부, 판매펀드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및 전담창구 구비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펀드투자자의 권익추진을 위해 도입된 또 하나의 제도는 펀드판매 수수료 차등화 및 펀드판매 이동제도이다. 그간 특정펀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경우 모든 판매회사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펀드투자자가 펀드가입 이후 판매회사 변경이 불가능하였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판매회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판매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보수 및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다. 아울러 신규펀드의 판매보수에 ‘이연판매 보수체계’를 도입하여 펀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판매보수가 인하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였다.

소비자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은 주로 두 가지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다.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의 기본 소양(Financial Literacy)을 높임으로써 올바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투자자 및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 및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의 기본 소양교육은 주로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감원은 어린이, 청소년, 군장병, 농어민 및 실업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을 확대(2009년 중 1,064회 134,122명)하고 있다. 청소년(초중고 취학 학생)을 위한 금융교육을 위하여 ‘청소년금융교육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금감원과 17개 금융회사 및 금융교육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서 네트워크에서 전체 교육수요를 개발하고 각 참여기관은 자체교육프로그램과 우수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이 밖에 금감원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및 ‘다문화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 제공됨으로써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금감원은 온라인 금융교육정보센터(www.edu.fss.or.kr)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온-라인상에서 여러 기관의 관련 정보가 집적·분류됨으로써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필요시 해당자료 보유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이다.

2009년도에는 소비자의 연체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졌다. 4월 22일 대부업법의 개정·시행으로 이자율제한이 여신금융회사에 확대 적용됨

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 이자율 제한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및 여신의 중도상환에 따른 기준 상한 위반이 없도록 개정 법률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상품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연체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납입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의 다음날부터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중소서민금융회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체이자 산정 시 차주의 신용수준별 차등화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시 연체자에 대하여도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시장금리수준 및 연체기간을 반영한 ‘대출약정금리+연체가산이자율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 인하를 위한 노력은 재래시장 신용카드가맹점에 부과하던 수수료에서 이루어졌는데, 재래시장의 가맹점수수료를 대형가맹점수준인 2.0~2.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였다.

3) 시사점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와 거래 약관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투자권유에 관한 준칙’ 및 ‘펀드표기 기준’의 제정 등은 동법의 시행에 따른 제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과 소비자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해 구축된 청소년금융네트워크와 온-라인 금융교육센터는 청소년의 금융과 관련된 기본소양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 획득을 위하여 좋은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연체이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나 수수료 인하는 금융거래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Ⅳ부 맺음말



향후 우리 경제는 국내의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들이 통화 및 재정정책 완화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가운데 주가는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가계 및 기업의 심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회복세가 빠른 신흥국으로의 자산 이동과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외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불안요인들이 향후 성장세 확대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계부채의 재조정, 정부부채 증대 및 국채발행에 따른 민간소비와 투자의 위축,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로 인한 일부 국가의 채무불이행위험,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 부실 우려 등이 일시적인 금융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투기자금 재유입에 따른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 가능성과 달러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외화유출입 급변동 가능성 등이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인 호조세 속에서도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우선 국내외의 경기회복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유입, 중국 등 신흥시장의 호조,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및 신용위험 완화 등이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원자재가격 상승 압력, 선진국의 고용 불안 지속, 원·달러 환율 하락, 금리상승 압력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선진국은 높은 실업률과 금융부실 우려로 인해 출구전략의 조기 시행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국내외의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고 국제금융시장 위험의 완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 금융시장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내 금융산업은 금리상승 기조 속에서 금융권역별 수신경쟁이 심화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취해졌던 금융완화 기조의 후유증이 일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리스크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은행권의 경우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수익성과 성장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가계부채 부담 지속, 중기대출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 중에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문제, 은행권 M&A를 통한 시장재편 가능성,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위험관리, 국제적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은행권은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 및 예대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며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부동산 PF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악화 등으로 건전성도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기존의 서민금융기관들과 연계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경기회복으로 자산규모가 증가하면서 성장성이 개선되고 주식시장 호조세로 수익성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채권관련 수익이 감소하고 고수익·고위험 자산비중 확대로 총 위험액이 증가하면서 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펀드판매수수료 차등화, 판매보수 인하 경쟁 및 지급결제 서비스 관련 경쟁 심화 등의 시장재편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경우 경기회복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의 영향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전년에 비해 개선될 것이다. 다만 RBC 제도 시행 등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하지만 향후 실질적인 재무건전성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고령화 관련 상품수요가 확대되고 타 권역과의 영업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리스크중심의 감독 강화 및 경영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부 록



부록 1. 2009년 주요 금융일지

1월

- ▷ 1.1 상호금융기관 통일상품공시기준 마련(금융감독원)
- ▷ 1.5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 시행(금융감독원)
- ▷ 1.7 「펀드신고서」 제도 시행을 위한 Action Plan 마련(금융감독원)
- ▷ 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위원회)
- ▷ 1.22 재래시장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1.29 공매도 및 결제제도 개선을 위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한국거래소)

2월

- ▷ 2.4 미연준과의 중앙은행 통화스왑계약 6개월 연장(한국은행)
- ▷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금융위원회)
- ▷ 2.12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 ▷ 2.24 수출입 기업 환헤지 지원을 위한 장내 통화선물 리모델링 추진(금융위원회)
- ▷ 2.26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면세 조치 발표(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3월

- ▷ 3.5 공매도 확인 방법의 명확화를 위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한국거래소)
- ▷ 3.13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 3.16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계획 발표(금융위원회)
- ▷ 3.16 펀드판매관련 미스터리쇼핑 실시 계획 발표(금융감독원)
- ▷ 3.1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위험관리능력 제고 등과 관련)(금융위원회)
- ▷ 3.23 금융위기 극복 관련 추경 편성(금융위원회)

- ▷ 3.23 한국거래소의 차세대시스템(EXTURE) 가동(한국거래소)
- ▷ 3.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원회)
- ▷ 3.25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금융감독원)
- ▷ 3.3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펀드관련 제도개선, 기업공시제도보완 등과 관련)(금융위원회)
- ▷ 3.31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매입 실시(금융위원회)
- ▷ 3.31 일본은행과의 평상시 통화스왑 규모 확대 기간 연장(한국은행)

4월

- ▷ 4.1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금융감독원)
- ▷ 4.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예금보험료율 체계의 합리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개별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등과 관련)(금융위원회)
- ▷ 4.17 CME 서울 통신허브 개설(한국거래소)
- ▷ 4.20 ELW 시장 LP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업무규정 개정(한국거래소)
- ▷ 4.28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 제정(공정거래위원회)
- ▷ 4.29 대부업법 시행 관련 연체이자율 기준 변경(금융위원회)
- ▷ 4.29 외화채무 지급보증 6개월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기획재정부)
- ▷ 4.30 은행법 일부 (연기금, PEF 및 외국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판정기준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완화 등과 관련)(금융위원회)

5월

- ▷ 5.4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청·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경찰청, 금융감독원)
- ▷ 5.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 ▷ 5.15 금융 공공기관장 경영계약 체결(금융위원회)
- ▷ 5.21 중소서민금융회사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금융감독원)
- ▷ 5.27 신성장동력 녹색금융 분야 세부추진계획 발표(금융위원회)
- ▷ 5.29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금융감독원)

- ▷ 5.30 차입공매도 제한 해제에 대응한 공매도 감시강화 및 점검감리 실시
(한국거래소)

6월

- ▷ 6.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 ▷ 6.9 신용카드 포인트 운영 현황 및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금융감독원)
- ▷ 6.12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현황 및 보완대책 마련(금융감독원)
- ▷ 6.17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등의 의결(은행의 자회사 업종 확대, 구조 조정 관련 충당금 적립 의무 완화,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과 관련)
(금융위원회)
- ▷ 6.19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국무총리실)
- ▷ 6.22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6.23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및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 추진 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 ▷ 6.26 미연준과의 중앙은행 통화스왑계약 3개월 연장(한국은행)

7월

- ▷ 7.1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제도 개선(한국거래소)
- ▷ 7.6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금융감독원)
- ▷ 7.6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발표(녹색성장위원회)
- ▷ 7.6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융입 원활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 7.8 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 전국 확대 시행
(금융위원회, 소액서민금융재단)
- ▷ 7.8 대부업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 ▷ 7.9 CMA시장 감독 강화 방안 마련(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7.10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 마련(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7.1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실손의료보험 등과 관련)(금융위원회)
- ▷ 7.16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7.21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추진안 발표(금융감독원)
- ▷ 7.2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은행지주회사 및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 및 지배 규제 완화 등과 관련)(금융위원회)

8월

- ▷ 8.3 은행 CD/ATM기 계좌이체한도 축소 시행(금융감독원)
- ▷ 8.14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8.31 은행권 「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 도입(금융감독원)

9월

- ▷ 9.2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 마련(금융감독원)
- ▷ 9.15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 체결(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 ▷ 9.16 은행의 구속성행위 규제제도 개선관련 시행세칙 변경예고(금융감독원)
- ▷ 9.17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사업 확대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소액서민금융재단)
- ▷ 9.21 한국 증시의 FTSE선진국 지수 편입(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 ▷ 9.2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원회)
- ▷ 9.2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펀드 판매회사 이동제 도입 근거 마련,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법 개선 등과 관련)(금융위원회)
- ▷ 9.29 금융지주회사 경영건전성 감독 강화 계획 발표(금융감독원)

10월

- ▷ 10.1 연합자산관리(UAMCO) 공식 출범(전국은행연합회)
- ▷ 10.5 채권 유통시장 개선 방안 마련(금융위원회)
- ▷ 10.8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금융감독원)
- ▷ 10.14 한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금융위원회)

- ▷ 10.16 일본은행과의 평상시 통화스왑 규모 확대 기간 재연장(한국은행)
- ▷ 10.27 신용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금융감독원)
- ▷ 10.28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지주회사 설립(금융위원회)

11월

- ▷ 11.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특례,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효과 제고 등과 관련)(금융위원회)
- ▷ 11.9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감독서비스 강화방안 마련(금융감독원)
- ▷ 11.16 CME연계 KOSPI200선물 글로벌 시장 개장(한국거래소)
- ▷ 11.19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11.25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 마련(금융감독원)

12월

- ▷ 12.1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 ▷ 1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제도(RAMS) 개선안 마련(금융감독원)
- ▷ 12.20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안 발표(보험소비자 권익강화, 보험금지급기준 명확화 등과 관련)(금융감독원)
- ▷ 12.21 코스닥시장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시장 개설(한국거래소)
- ▷ 12.2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보험료 산출체계 변경 등과 관련)(금융위원회)
- ▷ 12.2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금융위원회)
- ▷ 12.29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개편,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과 관련)(금융위원회)
- ▷ 12.31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종료(기획재정부)

부록 2. 주요 금융통계

국내금융 주요 통계

	2007년	2008년	2009년	'09.01	'09.02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09.10	'09.11	'09.12
콜금리(1일물)	4.76	4.76	1.97	2.40	1.98	1.76	1.76	1.90	1.93	1.93	1.98	1.97	2.00	2.00	2.00
CD우동금리 (3개월)	5.16	5.49	2.63	3.22	2.70	2.45	2.42	2.41	2.41	2.41	2.48	2.64	2.79	2.79	2.82
금융채우동금리 (1년)	5.34	5.92	3.37	3.33	2.95	3.10	2.78	2.89	3.19	3.15	3.50	3.93	4.00	3.79	3.81
회사채우동금리 (무보증·AA-)	5.70	7.02	5.81	7.34	7.07	6.14	5.68	5.16	5.21	5.46	5.74	5.57	5.60	5.43	5.35
국고채(3년)	5.23	5.27	4.05	3.44	3.78	3.69	3.76	3.83	4.09	4.09	4.42	4.41	4.47	4.32	4.24
국민주택채권1중 (5년)	5.43	5.79	5.10	4.57	5.17	4.96	4.77	4.91	5.13	5.13	5.35	5.33	5.35	5.29	5.24
종합주가지수	1,714.26	1,533.23	1,426.04	1,156.37	1,139.75	1,140.45	1,322.10	1,400.50	1,395.24	1,460.03	1,577.91	1,659.45	1,630.61	1,583.47	1,646.64
거래대금	55,199	51,834	57,766	46,370	45,148	49,673	77,428	77,239	54,462	55,720	68,458	74,801	56,011	41,437	46,441
고객예탁금 (단위 : 억원)	118,833	97,557	130,061	104,255	109,587	113,932	148,723	150,169	136,491	133,138	145,868	142,884	133,580	120,458	121,642
외국인순매수	-1,105	-1,395	1,201	405	-437	22	1,843	2,146	1,113	2,578	1,735	2,194	695	868	1,071
환/미국달러	929.37	1,100.13	1,277.14	1,346.10	1,429.46	1,461.98	1,341.90	1,258.71	1,261.35	1,263.97	1,238.40	1,217.83	1,175.25	1,164.23	1,166.45
환/일본1백엔 (단위 : 원)	790.01	1,073.22	1,364.46	1,487.18	1,546.11	1,495.71	1,356.24	1,304.52	1,305.52	1,338.06	1,304.31	1,332.04	1,300.78	1,304.43	1,298.67
원/유로	1,272.99	1,604.05	1,773.84	1,793.82	1,829.88	1,904.04	1,771.59	1,719.12	1,767.77	1,778.80	1,766.26	1,773.52	1,742.87	1,736.61	1,701.83

주 : 연평균 및 월평균 기준

은행권 주요 경영지표

		2007년	2008년	2009년	'09.1/4	'09.2/4	'09.3/4	'09.4/4	
자산	은행계정	1,409.8	1,716.4	1,643.1	1,769.8	1,747.9	1,748.8	1,643.1	
	신탁계정	153.0	149.0	152.9	142.6	145.3	147.9	152.9	
	총자산	1,562.9	1,865.4	1,795.9	1,912.4	1,893.2	1,896.6	1,795.9	
자금조달 ¹⁾	외화예금	20.3	33.7	30.7	36.5	36.8	35.2	30.7	
	원화예금	저축성예금	297.8	368.9	401.7	364.5	363.9	385.4	401.7
		정기예금	218.5	230.6	264.6	244.2	257.4	262.0	264.6
		기타예금	516.2	599.5	666.3	608.7	621.3	647.5	666.3
		총저축성예금	76.9	75.7	85.0	79.0	87.2	87.9	85.0
		요구불예금	593.2	675.2	751.3	687.6	708.5	735.4	751.3
		총원화예금	102.5	110.2	107.6	106.6	113.7	118.4	107.6
		C D 순발행	4.0	3.1	2.0	2.4	2.0	1.6	2.0
		매출어음	33.5	27.9	19.2	25.3	23.6	23.3	19.2
		R P 매도	168.9	200.2	180.9	197.8	199.7	200.6	180.9
	금융채발행	329.3	375.1	340.5	368.6	375.7	379.1	340.5	
	총시장성수신	922.5	1,050.3	1,091.7	1,056.2	1,084.2	1,114.5	1,091.7	
자금운용	총수신	358.4	382.9	404.5	386.7	395.2	400.0	404.5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369.9	422.3	443.4	435.3	441.8	447.6	443.4
		가계대출	805.2	920.3	962.1	939.5	954.6	967.0	962.1
		중소기업대출	262.3	282.6	273.9	298.0	306.3	308.9	273.9
	신탁계정	2.3	2.5	1.6	2.0	1.7	1.7	1.6	
	신탁대출금	58.3	47.6	46.5	45.2	44.4	47.0	46.5	
	유가증권	1,127.9	1,253.0	1,284.2	1,284.7	1,307.0	1,324.6	1,284.2	
	소계	1.9	-0.5	7.1	0.6	2.1	2.9	1.5	
수익성	당기순이익	1.10	0.47	0.39	-	-	-	0.39	
	ROA	14.60	7.08	5.75	-	-	-	5.75	
건전성	ROE	2.44	2.30	1.98	1.94	1.85	1.87	1.98	
	순이자마진(NIM) ²⁾	0.72	1.14	1.24	1.47	1.51	1.48	1.24	
기본적정성	고정비율	0.74	1.08	0.76	1.45	1.19	1.11	0.76	
	원화대출연체율	12.32	12.31	14.36	12.94	13.74	14.21	14.36	
	BIS비율	8.97	8.84	10.93	9.51	10.30	10.80	10.93	
	기본자본비율								

주 : 1) 예금은행 기준

2) 순이자마진(NIM)의 분기별 자료는 누적 기준

국제금융 주요 통계

		2007년	2008년	2009년	'09.01	'09.02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09.10	'09.11	'09.12
미국	FFR	4.95	1.75	0.17	0.16	0.23	0.22	0.15	0.18	0.21	0.16	0.17	0.16	0.12	0.14	0.13
	LIBOR(3개월 \$)	5.30	2.93	0.69	1.21	1.24	1.27	1.11	0.82	0.62	0.52	0.42	0.30	0.28	0.27	0.25
	10년 국채	4.63	3.64	3.24	2.46	2.86	2.80	2.90	3.30	3.70	3.53	3.58	3.40	3.37	3.39	3.59
일본	콜금리	0.48	0.47	0.10	0.12	0.11	0.10	0.10	0.10	0.10	0.10	0.11	0.11	0.10	0.10	0.10
	FB(3개월)	0.58	0.55	0.18	0.22	0.26	0.25	0.21	0.20	0.17	0.15	0.14	0.15	0.15	0.16	0.12
	10년 국채	1.68	1.49	1.35	1.25	1.29	1.30	1.44	1.44	1.47	1.34	1.37	1.31	1.33	1.35	1.26
유럽 (단위 : %)	콜금리	3.87	3.82	0.59	1.64	1.06	0.83	0.70	0.59	0.61	0.25	0.25	0.27	0.27	0.30	0.30
	EURBOR(3개월)	4.28	4.64	1.22	2.46	1.94	1.64	1.42	1.28	1.23	0.98	0.86	0.77	0.74	0.72	0.71
	10년 국채	4.23	4.00	3.27	3.09	3.16	3.06	3.19	3.42	3.55	3.36	3.33	3.29	3.23	3.28	3.23
영국	콜금리	5.60	4.56	0.59	1.41	0.91	0.58	0.47	0.46	0.47	0.47	0.46	0.46	0.46	0.46	0.45
	LIBOR(3개월 £)	6.01	5.52	1.20	2.32	2.09	1.83	1.53	1.36	1.24	1.00	0.78	0.61	0.57	0.61	0.61
	10년 국채	5.01	4.49	3.60	3.36	3.60	3.20	3.36	3.63	3.82	3.81	3.69	3.66	3.54	3.71	3.84
주요국 주 가	다우존스	13,178.25	11,244.05	8,885.66	8,396.20	7,690.50	7,235.47	7,992.12	8,398.37	8,593.00	8,679.75	9,375.06	9,634.97	9,857.34	10,227.55	10,433.44
	나스닥	2,578.46	2,161.68	1,845.38	1,537.20	1,485.98	1,432.23	1,641.15	1,726.08	1,828.99	1,873.84	1,997.16	2,084.75	2,122.85	2,143.53	2,220.60
	니케이-225	16,996.33	12,150.80	9,346.11	8,331.49	7,694.78	7,764.58	8,767.96	9,304.43	9,810.31	9,691.12	10,430.35	10,302.87	10,086.24	9,640.99	10,169.01
	DAX	7,463.19	6,216.74	5,018.08	4,534.17	4,265.01	3,969.15	4,519.14	4,886.36	4,930.82	4,949.61	5,395.20	5,583.97	5,680.04	5,642.16	5,836.55
주요국 환 율	엔/미국달러	117.75	103.37	93.57	90.33	92.85	97.70	98.80	96.59	96.62	94.40	94.86	91.39	90.32	89.02	89.95
	미국달러/유로	1.37	1.47	1.39	1.33	1.28	1.31	1.32	1.37	1.40	1.41	1.43	1.46	1.48	1.49	1.46
	미국달러/파운드	2.00	1.85	1.57	1.45	1.44	1.42	1.47	1.54	1.64	1.64	1.65	1.63	1.62	1.66	1.62

주 : 연평균 및 월평균 기준

부록 3. 2009년 한국금융연구원 주요 발간물 목록

1. 정기 간행물

■ 주간

- 주간 금융 브리프(제18권 1호~제18권 50호)

■ 계간

- 금융연구(제23권 1호~제23권 4호)
- 금융동향 : 분석과 전망(제19권 제1호~제19권 제4호)

■ 연3회 발간

- 한국경제의 분석(제15권 제1호~제15권 제3호)
- 경제전망시리즈(2009-01~2009-03)

2. 연구 발간물

금융시스템 관련 연구물

이지언, 「기업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예의 시사점」, 금융VIP시리즈 2009-06, 2009.12.

김정한·이윤석·임형준, 「외환보유액 관리비용과 필요외환보유액 추정」, 금융VIP 시리즈 2009-05, 2009.12.

장민·이규복·임형석, 「출구전략의 시기 및 조건」, 금융VIP시리즈 2009-03, 2009.12
_____,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금융VIP 시리즈 2009-02, 2009.11.

한국금융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 금융리포트 2009-01, 2009.4.

신용상·송재은, 「통화정책의 유동성 관리능력 저하와 금융안정 관련 정책적 함의」, 금융조사보고서 2009-04, 2009.3.

- 이규복,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와 경제 성장 : 기업간 협상력(bargaining power) 변화를 중심으로」, 금융조사보고서 2009-02, 2009.3.
- 서병호, 「Employment Considerations in Corporate Reorganization」, Financial Economics Working Paper 2009-01, 2009.3.

금융시장 관련 연구물

- 김종민·정순섭, 「금융규제와 시장원리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 Working Paper 2009-01, 2009.11.
- 여은정, 「CEO Incentive Compensation and Stock Return Sensitivities to Firms' Earnings Announcements」, Financial Economics Working Paper 2009-02, 2009.5.
- 여은정·이윤석, 「국내 기업의 상호주 및 자사주 보유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금융조사보고서 2009-03, 2009.3.
- 구정환,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금융조사보고서 2009-01, 2009.3 .
- 김병덕, 「연금개혁의 성과와 전망」, 정책조사보고서 2009-01, 2009.3.

금융산업 관련 연구물

- 이병윤·이시연,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정책조사보고서 2009-06, 2009.12.
- 구정환, 「녹색금융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책조사보고서 2009-05, 2009.12.
- 유광열, 「한국금융회사의 최근 중국진출동향과 향후 과제」, 금융리포트 2009-03, 2009.12.
- 김병연,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새로운 소비자보호체제의 구축 방안」, 금융 VIP시리즈 2009-04, 2009.12.
- 정형권·조성욱,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은행의 위험추구와 효율성에 미친 영향」, 금융연구 Working Paper 2009-03, 2009.12.
- 이인호, 「금융 산업에서의 경쟁과 건전성」, 금융연구 Working Paper 2009-02, 2009.12.

- 김병연,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정책조사보고서 2009-04, 2009.11.
- 김동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선방안」, 금융VIP시리즈 2009-01, 2009.10.
- 이병윤, 「우리나라 은행 대형화와 기업대출자금의 배분」, 금융조사보고서 2009-08, 2009.7.
- 서병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조사보고서 2009-03, 2009.6.
- 강종만, 「금융업의 위험변화에 관한 연구」, 금융조사보고서 2009-07, 2009.6.
- 이상제·김영도, 「키코 파생상품의 이해」, 금융조사보고서 2009-06, 2009.6.
- 이석호, 「보험사의 은행업 겸업에 따른 문제점과 해외사례 연구」, 정책조사보고서 2009-02, 2009.5.

기타 연구물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의 G-20 리더십 : 2010년 정상회의 주요 이슈」, 금융리포트 2009-02, 2009.12.
- _____, 「2008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논단 모음집」, 금융리포트 2009-01, 2009.4.
- 박종규,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금융조사보고서 2009-05, 2009.3.

2009년 KIF 금융백서

2010년 4월 23일 인쇄

2010년 4월 29일 발행

발행인 김태준
발행처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5·6·7·8층

전화:3705-6300

FAX:3705-6309

<http://www.kif.re.kr> ; wmaster@kif.re.kr

등록 제1-1838(1995. 1. 28)

ISBN 89-503-0428-7 93320

값 13,700원

